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 합】

2009.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 합】

2009.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세입 전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7권으로 구성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그간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지난 10월 발간하였고,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 하에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의견을 담았습니다.

제Ⅰ권 총량분석에서는 국회예산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제Ⅱ권 중점분석에서는 내년부터 국회의결 대상이 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심의에 필요한 분석과 사회안전망,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지방재정 등 16개 재정현안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제Ⅲ권부터 제Ⅴ권까지는 위원회별로 소관 분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Ⅵ권 종합편에서는 Ⅰ권부터 Ⅴ권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아울러 세출조정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제Ⅶ권은 올해 처음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을 분석한 것으로 추후 별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토론회 및 쟁점분석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11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I. 총량분석 / 1

1.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2. 거시경제 전망 ····· 2
3. 총수입 ····· 4
4. 국세수입 ····· 5
5.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5
6.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 분석 ····· 6
7. 재정기조 ····· 7
8. 재정건전성 ····· 9
9. 분야별 재원배분 ····· 10

II. 중점분석 / 15

1. 신규사업 분석 ····· 15
2. 2010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점검 ····· 20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분석 ····· 22
4.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예산안 분석 ····· 25
5.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 31
6.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분석 ····· 38
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 46
8.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 ····· 49
9.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 53
10.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57
11.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 분석: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규모를 중심으로 … 63
12. 2010년도 부담금 부과계획과 실질적인 국민부담 ····· 67

13.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적정성 분석 ····· 70
14.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외화예산의 원화경비액 감액 필요 ····· 71
15. 재정수반법률(안)의 2010년도 예산안 연계성 분석 요약 ····· 71
1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분석 ····· 73

III. 사업별 분석 / 77

【경 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용 성과미흡과 시스템기능 보완 필요 ····· 77
2.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조정 필요 ····· 79
3.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집행실적 부진과 예산 과다편성 ····· 80
4.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 82
5.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사업 검토 ····· 83
6. 법률제정을 전제로 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 예산안 편성 ····· 83
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공정 지연과 주택 과잉공급 ····· 84
8.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 85
9.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차차년도 연구비의 예산안 편성 ····· 87
10.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미비 ····· 88
11. 전력부하관리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필요성 ····· 89
12.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기기 지원단가 조정 필요 ····· 90
13. 철도공사의 흑자전환에 따라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91
14.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미확정에 따른 연례적인 사업지연 92
15. 국가하천정비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 예산안 편성상 문제점 ·· 93
16.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의 문제점 ····· 94
17.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확대에 따른 주거관련 예산 배분 문제 ····· 95

【사 회】

1.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사업의 확대규모 억제 필요 ····· 97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내역 조정 필요 ····· 98
3.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의 확대규모 및 사업방향 검토 ····· 99
4.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의 기술료 수입 저조 등 ····· 100

5. 문화재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과다 ····· 100
6.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 ····· 101
7.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과소계상 가능성 ····· 102
8. 부부공동수급률 실적치 미반영으로 기초노령연금예산 과다계상 ····· 102
9.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 ····· 103
10.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한적 심의 문제 ····· 104
11.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과다 추계 ····· 105
12.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의 이관 부적절 ····· 105
13.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비체계성 ····· 105
14.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 저조 ····· 107
15. 하수도사업 예산지원의 지역간 격차 ····· 108
16. 4대강 수계기금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 112
17.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저조 및 사업계획 미비 ····· 116
1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취약성 ····· 116

【행 정】

1. 갱생보호사업 : 복지예산의 또다른 사각지대 ····· 119
2.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국가책임 미흡 ····· 119
3.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 120
4.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부처 간 조정미흡으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 ····· 121
5. 금융위원회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간의 유사·중복 ····· 121
6. 금융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사업 ····· 122
7.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 규모 축소 검토 ····· 122
8. 구조조정기금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정리 사업 감액 검토 ····· 123
9. 외교통상부 외화예산안의 환차익 310억원 발생 전망 ····· 123
10.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출연금 400억원 과다 이월 우려 ····· 123
11. 외교통상부 신규사업(10개, 187억원 편성) 중 시급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재검토 필요 ····· 124

12. 북한 정세분석 관련 신규사업, 신중한 추진 필요 ····· 124
13. 2010 국방비 예산안 분석 : 불필요한 국방조직·업무 퇴출 필요 ····· 125
14. 10대 대규모 해외획득 방위력개선사업 외화지출 축소 필요 ····· 126
15. 국방비 외화예산안 환차익 1,268억원 발생 전망 ····· 126
16. 사이버사령부창설사업은 계획 및 법적 근거 미비 ····· 126
17. 기무사령부 방위력개선사업 분석업무의 부적절성 ····· 127
18. 음향무기(소리총) 개발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 필요 ····· 127
19.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28
20.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53억원 과다 편성 ····· 128
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 규모 조정 필요 ····· 129
22. 중앙 119구조대 청사 신축사업의 예산안 조정 필요 ····· 130

IV. **유형별 분석** / 133

1.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편성 ····· 133
2.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편성 ····· 135
3. 사업계획 미비 ····· 136
4. 사업성과 미흡 ····· 138
5.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 140
6. 의무적 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의 문제 ····· 141
7.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 142

V. **예산안 조정의견** / 145

【감 액】

1. 국무총리실 ····· 145
2. 국가보훈처 ····· 146
3. 금융위원회 ····· 147
4. 기획재정부 ····· 149
5. 국세청 ····· 150
6. 통계청 ····· 151

7. 국방부 ····· 151
8. 방위사업청 ····· 152
9. 외교통상부 ····· 153
10. 통일부 ····· 154
11. 행정안전부 ····· 15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8
13. 경찰청 ····· 159
14. 소방방재청 ····· 160
15. 교육과학기술부 ····· 161
16. 문화체육관광부 ····· 163
17. 문화재청 ····· 166
18. 방송통신위원회 ····· 166
19. 농림수산식품부 ····· 167
20. 지식경제부 ····· 169
21. 중소기업청 ····· 172
22. 국토해양부 ····· 173
23. 보건복지가족부 ····· 177
24. 식품의약품안전청 ····· 181
25. 환경부 ····· 181
26. 노동부 ····· 184
27. 여성부 ····· 189

【증 액】

1. 국토해양부 ····· 190
2. 보건복지가족부 ····· 191

VI. 부대의견 제안 / 195

총 량 분 석

Ⅰ. 총량분석

1.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정부는 총수입 287.8조원, 총지출 291.8조원 규모로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2010년도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

○ 총지출 규모는 291.8조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추경기준으로는 3.3% 감소

2010년도 재정운용 개요

(단위: 조원, %)

	2009		2010(안) (B)	증감률 (B/A)
	본예산(A)	추경		
총수입	291.0	279.8	287.8	△1.1
○ 예 산	196.9	185.7	191.9	△2.6
- 국 세	175.4	164.0	168.6[3)]	△3.9
- 세외수입	21.5	21.7	23.3	8.2
○ 기 금	94.1	94.1	95.9	1.9
총지출	284.5	301.8	291.8	2.5
○ 예 산	204.1	210.3	202.8	△0.6
○ 기 금	80.4	91.5	89.0	10.6
관리대상수지	△24.8	△51.0	△32.0	
(GDP 대비, %)	(△2.4)	(△5.0)	(△2.9)	
국가채무	349.7	366.0	407.1	
(GDP 대비, %)	(34.1)	(35.6)	(36.9)	

❑ 정부는 2010년도 관리대상수지는 -32조원, GDP 대비 -2.9%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9%(407.1조원)로 2009년 추경 대비 1.3%p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10년도 재원배분 방향을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③ 법질서 확립 및 국가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

2. 거시경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실질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의 전망치 4.0%보다 0.2%p 낮음

- ○ 정부는 2010년 세계경제 및 내수회복으로 인하여 4%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정부 평균 전망치 4.75%보다 0.65%p 낮은 4.1%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2010−13)
국회예산처(A, %)	-1.0	3.8	3.9	4.2	4.5	4.10
정부(B, %)	-1.5	4.0	5.0	5.0	5.0	4.75
격차(B-A, %p)	-0.5	0.2	1.1	0.8	0.5	

❑ 정부가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010년 이후의 성장률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보임

○ 해외 주요국가의 민간부분 회복속도가 부진하게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으며,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실물 부문은 일정 정도 위축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4% 미만으로, 정부 추정치보다 약 1%p 낮음

❑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8%로 2009년(-1.0%)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수입수요 약화로 수출환경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설비투자 회복탄력이 크지 못할 가능성

○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소득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며,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도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도 금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10년 민간소비는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9.8% 증가할 전망이며,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빠른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건설이 둔화되어, 2009년보다 다소 낮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량기준 수출입은 각각 14.3% 및 19.8% 증가, 경상수지는 1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중에는 대체로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 정도일 것으로 전망

○ 취업자는 14.5만명(0.7%) 증가하고, 실업률은 3.5%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3. 총수입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총수입을 286.9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전망치 287.8조원보다 약 0.9조원 낮게 전망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국세수입을 167.5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전망치보다 1.1조원 낮게 예측

○ 반면 국세외 수입은 119.5조원으로 정부 전망치보다 0.3조원 높게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2013년 중기 총수입이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향후 국내 경상성장률을 정부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높게 전망하는 데에 주로 기인

NABO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 누계
NABO (A)	총수입	278.4	286.9	304.2	327.7	350.3	5.9
	국세	164.1	167.5	176.3	193.0	209.6	6.3
	국세외	114.3	119.5	127.8	134.6	140.7	5.3
행정부 (B)	총수입	280.4	287.8	309.5	337.6	361.7	6.6
	국세	164.6	168.6	182.1	199.8	219.5	7.5
	국세외	115.8	119.2	127.4	137.8	142.2	5.3
차이 (A-B)	총수입	-2.0	-0.9	-5.3	-9.9	-11.4	-29.5
	국세	-0.5	-1.1	-5.8	-6.8	-9.9	-24.1
	국세외	-1.5	0.3	0.4	-3.2	-1.5	-5.5
차이율	총수입	-0.7	-0.3	-1.7	-2.9	-3.1	-
	국세	-0.3	-0.7	-3.2	-3.4	-4.5	-
	국세외	-1.3	0.2	0.3	-2.3	-1.0	-

주: 음영 부분은 누계 (단위 : 조원)

4. 국세수입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국세수입이 164조 1,489억원으로 2008년 실적 대비 1.9% 감소하고 2009년 예산보다 약 1,472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

- ○ 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과세기반 위축으로 2008년 실적 대비 6.6%, 2009년 예산 대비 6.3% 감소한 33조 9,641억원이 징수될 전망
- ○ 법인세는 2008년 영업실적 감소 및 세제개편에 따라 2008년 대비 10.1% 감소한 35조 2,010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나, 예산에 비해서는 9.2% 높은 수치임
- ○ 부가가치세수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 효과로 인하여 45조 52억원이 징수되어 2008년 실적 대비 2.7% 증가하고, 예산 대비 1.4% 감소할 전망

❑ 2010년 국세수입은 167조 4,813억원으로 2009년 예산 대비 2.1% 증가하고, 2009년 NABO 전망치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소득세는 2010년 경상성장률 상승에 따라 2009년 전망 대비 6.4% 증가한 36조 1,273억원이 징수될 전망
- ○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인하 등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 발생으로 2009년 전망 대비 1.6% 감소한 34조 6,202억원 징수될 전망
- ○ 부가가치세수는 경상성장률의 증가 등으로 2009년 전망 대비 2.9% 증가한 46조 3,034억원 전망

5.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2009년 세제개편안 통과될 경우 2010~2012년 기간 중 세수 증가규모는 전년도 대비 방식 기준으로 10조 4,9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 ○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10조 4,900억원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79.6% (OECD 기준 90.6%)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단위: 억원)

세 목	2010	2011	2012	2010~2012
소득세	12,600	8,600	3,400	24,700
법인세	52,300	10,700	1,100	64,200
부가가치세	1,500	1,900	800	4,300
개별소비세	2,100	300	-	2,400
증권거래세	2,500	200	-	2,700
인지세	100	-	-	100
교통에너지환경세	700	100	-	800
관세	2,400	400	-	2,800
교육세	600	100	-	700
농특세	2,100	200	-	2,300
총 계	77,000	22,600	5,300	104,900

6.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 분석

❑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감안할 때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보방안을 재검토할 필요

○ 친성장적 조세정책의 필요성, 국가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재검토 필요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 관행적으로 상시 운영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 등 제도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선될 필요

○ 일몰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경우, 일몰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일몰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면제점의 재조정을 통하여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 자체 세원 확보노력이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어져 과세자주권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

○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 없이 단순 징세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을 억제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 등 R&D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 국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

○ 그러나 R&D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경향과 관련하여 조세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7. 재정기조

❑ 2010년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2009년 당초 예산안 대비 확장, 본예산(수정예산안포함) 대비 긴축, 추경예산대비 매우 긴축적

○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확대재정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긴축적으로 변화

○ 총지출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감세 및 경제위기 여파로 총수입이 줄어들어 2009년 당초 예산안 대비로는 확장적이 됨

2010년 예산안의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조원)		관리대상수지(조원)		구조적재정수지(조원)	
		GDP대비		GDP대비		GDP대비
2010	-4.0	-0.4%	-32.0	-2.9%	-20.3	-1.8%

2010년 예산안의 재정기조

	당초 예산안대비	본예산대비	추경대비
FI	0.37%	-0.55%	-1.91%

주: FI(재정팽창지수)가 양수면 확장적, 음수면 긴축적 기조

❑ 2010년 재정운용은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2009년 예산안 대비 중립기조에 최대한 근접시킬 필요

○ 총지출을 4.1조원 줄여 중립기조를 취해도 구조적 수지는 여전히 2009년 대비 2.1조원 악화될 것으로 예상

2010년 중립적 재정기조를 취하는 경우의 재정수지(FI=0)

		관리대상수지(조원)		구조적재정수지(조원)		FI
			GDP대비		GDP대비	
2009 예산안		-25.4	-2.4%	-14.1	-1.4%	-0.15
2010년	예산안	-32.0	-2.9%	-20.3	-1.8%	0.37
	2009년 예산안대비 중립적 재정기조	-27.9	-2.5%	-16.2	-1.5%	0.00

주: 2010년 예산안의 관리대상수지는 -32조원인 반면, 총지출을 4.1조원 줄여 중립기조(FI=0)를 취할 경우 관리대상수지는 -27.9조원으로 축소

8. 재정건전성

❑ 2010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2.9%)는 2009년 추경(-5.0%)보다 개선되지만, 200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0.5%p 악화

○ 국제비교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크게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한 재정운용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9년 추경(35.6%)보다 다소 증가한 36.9%이며, 금액기준으로 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짐

– 적자성채무 비중 : '97년 (20.1%) → '03년 (36.2%) → '10년 (48.6%)

○ 향후 국가채무의 범위를 OECD 방식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일관된 재정통계 작성이 필요

2010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결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3.7	33.8	11.9	6.5	-22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6.4	30.2	27.5	31.3	29	28
관리대상수지	-10.7	3.6	-15.6	-24.8	-51	-32
(GDP 대비)	(-1.2)	(0.4)	(-1.5)	(-2.4)	(-5.0)	(-2.9)
국가채무	282.8	298.9	309.0	349.7	366.0	407.1
(GDP 대비)	(31.1)	(30.7)	(30.2)	(34.1)	(35.6)	(36.9)

9. 분야별 재원배분

❑ 2010년도 총지출대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27.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7.0%, 교육 분야 13.0%, 국방(일반회계) 분야 10.1%, SOC 분야 8.5% 순임

○ 반면, 외교·통일 분야 1.2%, 문화·체육·관광 분야 1.3% 등 비중이 작음

❑ 최근의 재원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SOC 분야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미한 증감을 나타냈으나 2009년(추경기준)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2010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을 살펴보면, 외교통일 분야가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1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R&D,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 분야에서 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0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단위: 조원, %)

구 분	2009[1)]	2010(안)	증가율	총지출대비 비중
1. R&D	12.3	13.6	10.5	4.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14.4	△10.9[2)]	4.9
3. SOC	24.7	24.8	0.3	8.5
4. 농림수산식품	16.9	17.2	2.1	5.9
5. 보건·복지	74.6	81.0	8.6	27.8
6. 교 육	38.2	37.8	△1.2[3)]	13.0
7. 문화·체육·관광	3.5	3.7	7.8	1.3
8. 환 경	5.1	5.4	5.1	1.9
9. 국 방(일반회계)	28.5	29.6	3.8	10.1
10. 외교 통일	3.0	3.4	14.7	1.2
11. 공공질서·안전	12.3	12.9	4.3	4.4
12. 일반공공행정	48.6	49.5	1.8	17.0
총지출	284.5	291.8	2.5	100.0

주: 1) 본예산
2)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시 6.5% 증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6.4%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 재정지표 및 경제전망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증감률 (B/A)
				본예산 (A)	추경	NABO	정부(B)	
수입	총수입		274.2	291.0	279.8	286.9	287.8	△1.1
	예산		195.1	196.9	185.7	-	191.9	△2.6
	국세수입		167.3	175.4	164.0	167.5	168.6	△3.9
	기금		87.3	94.1	94.1	-	95.9	1.9
조세부담률			21.6		20.5	19.9	20.1	-
국민부담률			28.4		26.5	26.2	26.4	-
지출	총지출		262.8	284.5	301.8	-	291.8	2.5
	예산		199.7	204.1	210.3	-	202.8	△0.6
	기금		74.8	80.4	91.5	-	89.0	10.6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11.9 (1.2)	6.5 (0.6)	△22.0 (△2.1)	△4.9 (△0.4)	△4.0 (△0.4)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15.6 (△1.5)	△24.8 (△2.4)	△51.0 (△5.0)	△32.6 (△2.9)	△32.0 (△2.9)	-
	국가채무 (GDP 대비, %)		309.0 (30.2)	349.7 (34.1)	366.0 (35.6)	-	407.1 (36.9)	-
GDP	경상	NABO	5.0		1.9		6.4	-
		정부			1.1		6.6	-
	실질	NABO	2.2		-1.0		3.8	-
		정부			-1.5		4.0	-
경상수지(억달러)			△64.1		340		147	-
소비자물가(%)			4.7		2.8		2.5	-
실업률(%)			3.2		3.7		3.5	-
원달러환율(기준환율, 평균)[1]			1,102.6		1,286		1,186	-

주: 1) 2010년 예산안 편성기준 환율은 1,230원/달러임

중 점 분 석

Ⅱ. 중점분석

1. 신규사업 분석

❑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의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 사업(40,000백만원)

– 방과후학교 사업은 2008년도부터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 사업임

○ 지식경제부(에특회계)의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 사업(10,000백만원)

– 가스냉방 보급 확대는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임

○ 중소기업청(일반회계)의 시니어 창업육성 사업(5,000백만원)

– 기존 창업지원사업에서 고령자들이 주로 진출해온 분야는 단순 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정부가 창업지원 정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창업 실패시 위험부담이 큼

❑ 사업계획이 미흡한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의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3,000백만원)

– 사업의 중심목표가 불명확하여 전문대 특성화 사업인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인지, 인력양성 사업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

○ 외교통상부(일반회계)의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 사업(1,143백만원)

– 2009년 10월 말 현재 정기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MOU가 체결되어 있는 연구소는 1개에 불과

○ 외교통상부(일반회계)의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 사업(10,000백만원)

– 타 사업에서 추진하는 '영사협력원' 확충과의 연관성 고려 필요

○ 통일부(일반회계)의 북한정세지수(NSI) 개발 사업(1,850백만원)

– 북한정세지수 개발 및 공개의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지식경제부(광특회계)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25,000백만원)

–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만 수립된 상태임

○ 노동부(고용보험기금)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육성 사업(1,421백만원)

– 사업설계 측면에서 기존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큰 변화가 없어 집행실적 저조가 재현될 우려

○ 국토해양부(일반회계)의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80,000백만원)

– 사업 기간과 총 출자금액에 관한 계획이 미비한 상태임

○ 방위사업청(일반회계)의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 사업(3,059백만원, 기무사령부 예산 80백만원 미포함)

–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예산안은 계획이 미비한 상태임

❑ 시급성이 낮은 경우

○ 외교통상부(일반회계)의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 사업(600백만원) 및 우리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사업(212백만원)

– 예산절감 필요 및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기금)의 자전거유스호스텔 사업(2,412백만원)

– 자전거 여행객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으므로 별도의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 낮음

○ 방위사업청(일반회계)의 대대급C4I사업(434백만원)

– 2010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추가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여 예산낭비의 가능성 있음

❑ 예산액이 과다·과소 편성된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의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 사업(40,000백만원)

– 전국 초등학교마다 원칙적으로 1개의 돌봄교실을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목표가 설정되었으므로, 과다한 시설투자 우려

○ 통일부(일반회계)의 독일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사업(846백만원)

– 연구용역 계획(독일 15편, 한국 15편)의 한국 주제 일부는 독일연구를 바탕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우려

○ 통일부(일반회계)의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등 심층정보 수집 사업(1,047백만원)

– 조사대상자인 방북자, 탈북자들에게 20~50만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계획인데, 다소 과다한 측면

○ 문화체육관광부(일반회계)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사업(9,700백만원)

– 총 사업비 484억원의 큰 규모 사업인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합한 설계기간을 8개월로 추산하고 있어 지연가능성이 높음

○ 문화체육관광부(일반회계)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사업(1,992백만원)

– 부지매입, 설계, 입찰공고, 행정절차 등의 사전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공사비)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노동부(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중소기업선진복지제도도입지원 사업(1,000백만원)

– 노동부의 기존 컨설팅 사업의 성과저조 사례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을 고려할 때, 사업성과가 미지수임

○ 국토해양부(광특회계)의 괴산건축 산단진입도로 사업(2,400백만원) 및 논산2 산단진입도로 사업(2,350백만원)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사업간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예산편성 필요

○ 국가보훈처(일반회계)의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23,500백만원)

– 국외여비, 해외홍보비 등 외화지출이 필요한 예산액 중 일부를 달러 당 1,300원의 환율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일부 과다편성된 측면(예산안 편성 기준환율은 1,230원)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지식경제부(일반회계)의 온라인전기자동차기반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R&D) 사업(20,000백만원) 및 모바일하버기반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R&D) 사업(20,000백만원)

–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청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의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3,000백만원) 및 농림수산식품부(농특회계)의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500백만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사업(60,000백만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인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 지식경제부(에특회계)의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 사업(10,000백만원)

– 관련 법률안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임

○ 지식경제부(에특회계)의 산업부문 목표관리제확산 사업(8,000백만원)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은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0월 현재 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일반회계)의 중증장애인 연금 사업(151,919백만원)

– 동 사업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예정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공사설립 사업(12,941백만원)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하여 정부가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임

○ 노동부(고용보험기금)의 건설근로자고용개선선도기업육성 사업(1,421백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프로그램)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임

○ 방위사업청(일반회계)의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 사업(3,059백만원, 기무사령부 예산 80백만원 미포함)

–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 법령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음

❑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외교통상부(일반회계)의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 사업(600백만원)

– 외교통상부 각 지역국 및 조약국 등의 기존사업과 유사

○ 외교통상부(일반회계)의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 사업(1,143백만원)

– 해외 주요 연구기관을 방문·교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외교안보연구원 기존사업인 '외교안보 연구활동'과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금)의 의료관광육성 사업(4,246백만원)

– 의료관광 홍보비 및 인력양성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일반회계)의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R&D) 사업(10,000백만원)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에서 섬유분야에 대한 신뢰성 평가장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성을 재검토할 필요

○ 노동부(고용보험기금)의 기업전직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1,000백만원)

- 전직지원센터와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효율성 저조 등의 경우

○ 통일부(일반회계)의 독일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사업(846백만원)

- 독일 통일 등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결과물이 있는 상태이므로 연구주제의 중복 발생 우려

○ 통일부(일반회계)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4,200백만원)

- 100% 국고보조 사업이지만, 통일부는 센터 당 운영비 2억원 중 6,000만원(30%)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임
- 국고보조율이 100%로서 지방비 부담의 의무화가 불가능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일부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가 우려됨

○ 지식경제부(에특회계)의 저소득층에너지저소비고효율제품교체지원 사업(30,000백만원)

- 전자제품 교체 비용 대비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2010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점검

❑ 2010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총 65개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40.0%인 26건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6.2%인 4건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53.8%인 35건임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음

○ 2010년도 신규사업 중 지식경제부의 “온라인전기자동차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모바일하버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1], 농림수산식품부의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대책” 등 4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 2010년도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2]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17~0.46이고, 종합평가 결과 AHP가 0.353으로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에 신규로 21억원이 편성되었음

○ 예타 결과 AHP가 0.5 미만이어서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타당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1)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 반영된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 개념설계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비이며, 본사업은 예타결과가 나온 이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 반영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은 기본연구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비이며, 본사업은 계획의 보완 및 예타 재실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분석

❑ 2010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9.7)에서,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부처별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8년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받은 사업(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150개이며,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91억원이 감소한 5조 8,546억원임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평균집행률이 7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 2010년 예산안에 편성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124개이며,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61억원이 증가한 총 3조 4,101억원임

○ 2010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6개이며,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8,151억원이 감소한 총 2조 4,445억원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

(단위: 개, %, 억원)

구 분	연례적 집행실적부진 사업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합 계
사업 수	124	26	150
2009 예산액(A)	27,040	32,596	59,637
2009.7 집행액(B)	16,983	9,485	26,468
2009.7 집행률(B/A)	62.8	29.1	44.4
2010 예산안(C)	34,101	24,445	58,546
증감액(C-A)	7,061	-8,151	-1,091

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2009.7)의 각 부처의 개별사업별 분석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적된 예산액대비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2010년 예산안이 편성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들 중 2010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32개로,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감액조정이 필요함

○ 2009년 7월말 현재 집행률이 30% 미만이고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2009년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받은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32개로 감액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심사 시 감액 조정 ·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부진 사업

(단위: 억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A)	2010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운영	6	6	-	-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4	-	-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59	1,930	1,671	645.2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10	426	416	4,160.0
국방부	연합방위력증강	261	440	179	68.6
	연합토지관리계획사업	227	256	29	12.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이차보전	43	54	11	25.6
경찰청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297	297	-	-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1,210	1,250	40	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개발(보조)	19	75	56	294.7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보조)	50	50	-	-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보조)	43	51	8	18.6
	공립박물관 건립사업(보조)	155	243	88	56.8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보조)	15	24	9	60.0
	육상진흥센터 지원-대구시(보조)	90	90	-	-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경북	273	281	8	2.9
	생활체육 인프라조성	83	164	81	97.6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50	104	54	108.0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50	80	30	60.0
	경정훈련원 건립	54	115	61	113.0
농림수산식품부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40	164	124	310.0
	생산이력제도입	18	18	-	-
	광역클러스터활성화(보조)	256	322	66	25.8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보조)	676	5,651	4,975	735.9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보조)	27	28	1	3.7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	625	625	-	-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신축	115	382	267	232.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35	36	1	2.9
	민간취업기관지원	121	304	183	151.2
	대구재활병원신축(보조)	67	293	226	337.3
	교대제전환 지원*	61	61	-	-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기금)	100	100	-	-
합 계		5,340	13,924	8,584	62.2

주: *사업은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9. 7)의 개별 사업별 분석시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4.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예산안 분석

❑ 2010년도 사회안전망 예산안은 80조 5,983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6%, 2009년 추경예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편성함

○ 정부가 분류한 12개 재원분야 중 복지재정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8.6%, 2009년 추경예산 대비 0.8% 증가한 81조 398억원으로, 사회안전망 예산과 거의 비슷함

○ 사회보험으로 구성된 1차 안전망 예산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지출의 자동적인 증가로 인해 45조 6,236억원으로 편성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가 급증한 2009년 추경과 비교하더라도 2.2% 증가함

○ 기초생활급여 등 공공부조사업으로 구성된 2차 안전망 예산안과 사회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3차 안전망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각각 1.7%, 8.6% 증가한 7조 498억원과 27조 9,249억원으로 편성

– 다만 최근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및 공공부조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2009년 추경에 비해서는 각각 -2.4%, -0.8% 하락한 7조 498억원과 27조 9,249억원으로 편성

2010년도 사회안전망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9		2010(안)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2009년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			
[1차 안전망(사회보험)]	**424,124**	**446,570**	**456,236**	**7.6**	**2.2**
• 건강보험지원	52,040	52,040	53,827	3.4	3.4
• 공적연금	238,197	238,197	260,884	9.5	9.5
• 산재보험기금	43,728	43,728	46,470	6.3	6.3
• 고용보험기금	56,562	79,008	59,282	4.8	-25.0
• 보훈급여	33,597	33,597	35,773	6.5	6.5
[2차 안전망(공공부조)]	**69,326**	**72,268**	**70,498**	**1.7**	**-2.4**
• 기초생활급여	66,427	68,270	66,473	0.1	-2.6
• 자활급여	2,899	3,359	3,984	37.4	18.6
•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	-	639	41	순증	-93.6
[3차 안전망(사회서비스 등)]	**248,778**	**281,412**	**279,249**	**12.2**	**-0.8**
• 긴급복지지원	515	1,533	529	2.7	-65.5
• 한시생계보호	-	4,181	-	-	-100.0
• 취약계층 지원 등	46,929	63,303	55,461	18.2	-12.4
- 기초노령연금 지급	24,697	24,697	27,326	10.6	10.6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3,097	3,097	2,018	-34.8	-34.8
- 중증장애인기초연금	-	-	1,519	순증	순증
-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741	839	926	25.0	10.4
• 보육·가족 및 여성	19,295	19,567	22,976	19.1	17.4
- 보육료 지원	13,146	13,146	16,980	29.2	29.2
- 아이돌보미지원	155	224	197	27.1	-12.1
• 노동	17,257	24,110	17,438	1.0	-27.7
- 희망근로프로젝트	-	13,280	4,456	순증	-66.4
• 주택	150,171	152,883	166,542	10.9	8.9
• 보건의료	14,611	15,835	16,303	11.6	3.0
합 계	**742,228**	**800,250**	**805,983**	**8.6**	**0.7**

주: 세부내용은 주요사업이므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2009년 11월까지 구축

○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하여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복잡다기한 복지사업 136개를 52개로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기존 세부사업을 단순하게 통합하는데 그치거나, 통합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들도 일부 파악됨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사업들을 통합하였으나,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인 예산 절감은 없음

–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경우 방과후 보육시설과 청소년공부방을 기능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생아 관리사업의 경우 향후 소득기준 등을 재조정하여 실질적인 통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정부의 부정수급 발굴방안이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사회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 발굴노력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나머지 자격급여 예산안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은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사회안전망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이 58조에 이르러, 사회안전망 예산의 71.9% 및 복지재정의 71.5%를 차지함

2010년도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및 의무지출 규모

(단위: 억원, %)

	2009		2010(안)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2009년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			
정부 총지출(조원, A)	284.5	301.8	291.8	2.6	-3.3
사회안전망재정(B)	742,228	800,250	805,983	8.6	0.7
(총지출 대비 비중, B/A)	(26.1)	(26.5)	(27.6)	-	-
복지재정(C)	745,893	804,151	810,398	8.6	0.8
(총지출 대비 비중, C/A)	(26.2)	(26.6)	(27.8)	-	-
[의무지출](D)	538,191	563,956	579,344	7.6	2.7
(사회안전망재정 대비 의무지출 비중, D/B)	**(72.5)**	**(70.5)**	**(71.9)**	-	-
(복지재정 대비 의무지출 비중, D/C)	**(72.2)**	**(70.1)**	**(71.5)**	-	-
○기초생활보장급여	69,843	73,162	71,486	2.4	-2.3
○기초노령연금(구 경로연금)	24,697	24,697	27,236	10.3	10.3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3,097	3,097	2,018	-34.8	-34.8
○중증장애인기초연금	-	-	1,519	순증	순증
○보육료 지원	13,146	13,146	16,980	29.2	29.2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3,284	3,284	3,869	17.8	17.8
○건강보험 지원	52,040	52,040	53,827	3.4	3.4
○공적연금	238,197	238,197	260,884	9.5	9.5
○고용보험	56,562	79,008	59,282	4.8	-25.0
○산재보험	43,728	43,728	46,470	6.3	6.3
○보 훈	33,597	33,597	35,773	6.5	6.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0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 정부 전체 재정규모가 2009년 추경보다 3.3%가 줄어 절대액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타 분야와 비교하여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에 상당한 배려를 한 모습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에서 재량지출 규모는 예년보다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총지출에서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8.6%에서 2010년의 1.1%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

○ 보건복지가족부 세출사업예산 중 다른 부처에서 몇 가지 사업을 이관시킴으로써 복지예산을 새로이 편입시킨 경우가 있음

- 2010년 예산안에는 농림부의 양곡특별회계에 있던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을 이관받음으로써 정부양곡할인사업의 예산안(1,112억원)이 큰 폭으로 증가
- 2010년 예산안에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던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255억원)이 신규로 도입
- 자활사업의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지원대상자 일부를 자활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동 사업의 2010년 예산안(3,984억원)이 2009년 추경보다 증가

○ 2010년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의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모든 신규사업이 취약계층이나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 이전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사업으로만 구성

○ 복지사업의 기본취지 상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목적에 맞는 회계·기금간 이관작업이 2010년 예산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0년 예산안에서 건강증진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인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사업을 보건분야 일반회계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편성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구조로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이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2006~2010년 동안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는 연평균 23.9% 증가하였으나, 매칭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8.0%p 높은 35.9%로 나타남

❑ 국고보조사업뿐만 아니라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율이 내국세의 0.94%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일정부분(10%)을 지방세로 독립세화 하는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5%를 공동세 형태의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결정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원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으나,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지방재정 감소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겠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차등보조율 제도를 다른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가 최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까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내국세의 0.94%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율의 경우 내국세원이 작아지므로 일정기간 존치연장을 전제로 할 경우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 필요

○ 또한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national minimum)인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 2010년도 일자리 대책 예산안은 2009년도 추경보다는 적은 규모로 편성(21.1% 감액 계상)하되,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0% 증액된 8.8조원을 계상

○ 2010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291.8조원) 대비 3.0% 비중

○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안은 3.5조원으로, 총 일자리사업 예산안 대비 39.8% 비중이며, 계획인원은 55만명에 달함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예산안은 1.3조원으로 전년도 추경(1.6조원) 대비 18.8% 감소하였으며, 계획인원은 2.6만명 감소한 14만명

○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대비 각각 69.9%, 4.6% 증가한 반면, 「교육·훈련」 예산안은 4.2% 감소

201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만명)

	2009		2010 (안)	대상별·사업별 지원인원 및 예산안 (2009 본예산 → 2009 추경 → 2010 안)
	본예산	추 경		
직접일자리창출 (지원인원)	27,354 (40만명)	47,073 (80만명)	35,166 (55만명)	청 년: 6.7만명 → 13.3 → 29.2 중장년: 16.9만명 → 46.5 → 29.2 노인 등: 16.7만명 → 20.3 → 18.0 사회서비스: 12.9만명 → 16.6 → 14.0
고용유지	672	5,938	1,142	고용유지지원금: 583억원 → 3,653 → 998 임금피크제: 37억원 → 37 →95
고용촉진	37,450	53,129	39,181	구직급여: 29,272억원 → 37,927 → 33,660 고령자뉴스타트: 11억원 → 11 → 57
교육·훈련	13,490	15,059	12,918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3,911억원 →3,911 →4,106 저소득층취업패키지: 104억원 → 124 → 197
합 계	78,966	121,199	88,407	

❑ 한시적 단기 일자리사업은 2009년에만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 2010년에도 연장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계상

○ 주요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디딤돌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등 3개 사업으로 5,138억원 계상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4,456억원, 10만명)은 노령자 및 주부의 참여비중 과다, 높은 중도탈락율, 단순 취로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있음

○ 2009년도 추경(1조 3,280억원)대비 66.4% 감액된 4,45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계획인원은 60% 감소한 10만명

○ 2009년도 지원대상자 중 노령자 및 주부의 참여비중 과다

- 2009. 10월 현재 전체 수혜자 대비 48.4%(11.9만명)가 60대 이상(65세 이상 31.2%)이며, 주부가 22.8%

○ 2009. 9월말 기준으로 선발인원(32.6만명) 대비 중도 포기율은 23.4%(7.6만명)에 달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 중도포기의 주요 원인은 업무형태 불만 및 근무환경 불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일부 사업이 기존의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

- 총 사업비 중 재료비의 비중을 25%로 책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단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

❑ 「디딤돌 일자리창출」(503억원, 일반회계)의 증액계상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사업의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 시정조치결과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액 계상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타 단기 일자리사업이 감액하여 계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만 특별히 증액하여 계상한 것은 단기 일자리사업의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외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179억원, 4,680명)도 전년대비 52.1%를 각각 감액 계상

○ 사회적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 미흡

– 법적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 사업내용이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 시정조치결과와 부합하지 않음

– 2009년도 사회적일자리 지원형태가 '공익형'과 'NGO형'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통하여 '공익형'과 'NGO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노동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시정조치 하였다고 보고함

❑ 지원대상 중복으로 사업추진 상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원조건의 차이로 인한 사업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노동부 「디딤돌 일자리」,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의 지원대상이 상당부분 중복

–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노숙자, 새터민 등의 지원대상이 타 사업 지원대상과 중복되어 「디딤돌 일자리」의 경우 계획인원(1만명)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69%에 불과(2009. 10. 12일 현재)하고, 예산 집행률도 14.6%에 불과

○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사업」(3,984억원)의 경우, 자활근로자의 임금수준(월 43만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월 86만원)보다 적어 임금격차로 인한 사업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 있음

❑ 2010년도 일자리사업 중 인력양성 주요사업은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금융전문인력양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등 3개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4% 증액된 96.8억원 계상

❑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30억원, 신규)은 정부지원에 있어 대학 간 형평성 문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 저조, 사업목표 불분명 등으로 정부지원 타당성 미흡

○ 해외 진출 대기업과 활발히 연계를 맺고 있는 특정대학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며, 정부지원에 있어 대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 있음

○ 국내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가 불분명

– 인력 양성 사업인지, 전문대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인지, 해외 유학생 유치 기반 사업인지에 대한 중심 목표가 불분명

❑ 금융위원회의 「금융인력양성사업」(25억원)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권이 수혜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

○ 대학 및 금융권에서 금융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사업」(42억원)의 추진은 역할분담에 관한 부처간 협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간 유사중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조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인력양성과 관련된 협의 도출

– 협의의 주요내용은 현업 방송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예비 방송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연기자 재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현업 방송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2개 부처간 협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업 방송인력양성 사업과 중복될 우려 있음

❑ 2010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추경)대비 0.3조원 감액된 1.3조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대상자 수는 2.1만명 감소한 14만명

○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안 대비 37.1%(계획인원 대비 25.5%) 비중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실업해소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일자리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업 중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5년 기준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3]가 전산업은 물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평균을 상회

- 2005년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는 전산업 14.7(9.9), 서비스업 10.1(7.2)이며, 교육서비스 22.8(22.0), 사회복지서비스 29.9(26.7)임
-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2000~2005년간 2개 계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2007년 기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도 7.5%p 낮은 수준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고용규모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으나,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흡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확대는 일자리창출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문제로 연계될 위험도 있음

---

3)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의 소비나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산업과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정의됨. 「취업유발계수」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반면, 「고용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는 점이 2개 계수의 차이점임

- 일부 사회서비스일자리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와 거리가 멀고, 근로자 복지 혜택 측면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 필요

- 2009. 6월 현재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총 8개소에 불과하고, 기초지자체는 5개소에 불과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기울일 필요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특히 기초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등 자립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대책 강구 필요

❑ 노동부의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474억원)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감액 조정 필요

○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중손실,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

○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된 시행령이 2009. 1.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09. 9월말 지출액은 176억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37.2%,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33.9%에 불과

- 집행률 저조는 법령 개정 시 수요예측이 면밀하게 수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2008년도 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노동부의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56.5억원, 고용보험기금) 중 신규로 편성된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9억원, 250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신청자 모집 및 구인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 있음

○ 유사사업인 노동부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에서도 원활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해외취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령자가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 선진국도 아닌 동남아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격차를 감내하고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 수요가 충분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

○ 하위 직급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걸 맞는 직위를 제공하는 구인처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

○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0년도 훈련인원(250명)을 축소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노동부의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10억원)의 경우, 사업설계 상의 유사중복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전직지원서비스는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 특히 전직지원센터의 경우, 전년(당초계획)대비 1.3배인 118억 2,400만원에 달하는 2010년도 사업비 확대를 통하여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계획

○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와 기업전직센터는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장 규모에 따라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거나, 동일한 대상(중소기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업전직지원센터 설치를 신규로 지원하기보다, 사업비가 확대 계상된 기존의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를 중심으로 실직(예정)자에게 내실있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의 국회제출시, 소관 부처별 성과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였으나, 다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계획서는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부재한 상황

❑ 일자리 관련 사업은 부처간 개별 사업의 발굴을 통해 추진됨으로써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사업의 발굴, 기존사업의 예산배분 조정, 사업의 퇴출 등이 노동시장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되지 못하여 사업의 탄력적 운용이 미흡함

  ○ 부처간 개별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포함하여 일자리 관련 사업의 평가는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단편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평가는 미흡한 실정임

  ○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기적 성과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결과를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6.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분석

❑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2010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 예정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은 후, 미래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대출(Income Contigent Loan; ICL)' 방식

  ○ 대출규모의 증가와 함께 원리금 상환 시점이 기준소득 발생 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 재정투자 확대 필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추진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285억 6,800만원 순증

– 「국가장학기금 출연」(현행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등)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현재 대학 재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자연히 감액 편성

2010년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A)	09추경	2010안(B)	증가(B-A)	증가율
국가장학기금 출연	410,678	451,213	277,532	-133,146	-32.4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22,300	293,250	181,700	-40,600	-18.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9,500	120,000	75,000	-34,500	-9.1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3,100	103,100	99,900	-3,200	-3.1
한국장학재단 출연	0	130,000	428,568	428,568	순증
합 계	845,578	1,097,563	1,062,700	217,122	29.8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0배 이내의 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하며,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수준임

○ 재단 출범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받은 후,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금리 수준(2009년 1학기 7.30%)이나 금리 변동 정도가 다소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 현행 학자금 대출은 성적 100점 만점 환산으로 70점 이상, 신용등급 8등급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신입생 및 졸업예정자 제외) 등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며, 소득 분위별로 거치기간에 정부가 이자지원(이차보전)을 함

○ '무이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이며, '저리'는 정부가 대출금리 중 1.5%p~4%p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차보전 범위를 확대해 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재학생만이 현행 이차보전 혜택 수혜 가능함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분위	2007-2 6.90%	2008-1 7.65%	2008-2 7.80%	2009-1 7.30%	2009-2 5.8%
1분위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2분위	2%p 감경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3분위	2%p 감경	3%p 감경	4%p 감경	4%p 감경	무이자
4분위	2%p 감경	3%p 감경	4%p 감경	4%p 감경	4%p 감경
5분위		3%p 감경	4%p 감경	4%p 감경	4%p 감경
6분위		1%p 감경	1.5%p 감경	1.5%p 감경	1.5%p 감경
7분위		1%p 감경	1.5%p 감경	1.5%p 감경	1.5%p 감경
8~10분위					

❑ 현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프로그램은, 일정한 성적요건(대체로 평점 B 수준)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연 450만원,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연 230만원을 지급함

○ 이차보전과 마찬가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재학생만이 현행 이차보전 혜택 수혜 가능하며, 내년도 신입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생활비 무상보조 연 200만원만이 가능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08결산	2009예산	2010(안)	증감액	증감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59,116	222,300	101,200	-121,100	-54.5
인원수	13,750	52,000	22,000		
단가(연간 지원액)	430만원	450만원	450만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70,950	80,500	9,550	13.5
인원수		70,950	35,000		
단가(연간 지원액)		100만원	230만원		
합 계	59,116	293,250	181,700	-111,550	-38.0

❑ 동 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하였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이공계에 진학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 이공계 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수리 및 과탐 1~2등급 조건이며, 재학생은 평점 3.5 수준을 요구

○ 기재부의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2009. 6)에 따라 이공계국가장학생, 지방이공계장학생, 지방인문계장학생 사업을 '국가장학생 사업'으로 통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인한 재정 부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우선 순위를 학부생으로 두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 장학생은 신규선발 중단

201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개편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9		구분	사업명	계열구분	2010안
대통령과학장학생 (680명)	7,280	▶	학부	대통령장학생 (600명)	이공계	10,000
이공계국가장학생 (18,800명)	70,300			국가장학생 (23,200명)	이공계 (20,800명)	74,500
지방이공계장학생 (3,000명)	6,000	▶				
지방인문계장학생 (2,400명)	13,400				인문사회계 (2,400명)	14,300
이공계대학원연구 (500명)	6,120	▶	대학원	국가연구장학생 (110명)	이공계	1,100
합 계	103,100		합 계			99,90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학생이 대학 재학 중은 물론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대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7분위 이하 학부생이며, 종전 대출한도 4,000만원(학부생 기준)와 신용심사는 폐지되고, 학생별로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 줌

○ 단, 소득 8~10분위 가정 학부생 및 모든 대학원생은 현행 일반대출 방식(소득 발생과 무관,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등)을 유지

○ 대졸 초임과 최저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기준소득과 상환율을 결정할 예정이며,[4] 국세청의 협조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됨

○ 현행 제도에 비해 등록금 이차보전과 무상장학금 등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재학생은 현재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 대신 저소득층 이차보전 및 저소득층 장학금의 골격을 생활비 대출 제도로 변형 적용하게 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인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변화

	기존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수혜 대상	소득 전 분위	소득 7분위 이하 (8분위 이상은 기존)
자격 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신입생, 졸업예정자 제외) 100점 환산 70점 이상 신용등급 8등급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신입생, 졸업예정자 제외) C학점 이상 신용요건 없음
대출 한도	1인당 4년간 4,000만원(학부 기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이차 보전	3분위 이하는 무이자 4~5분위는 대출금리 중 4%p 감경 6~7분위는 대출금리 중 1%p 감경	없음
상환 방법	거치기간 중 이자 납부 졸업과 동시에 상환의무 발생 ('09년 미취업자 상환유예 한시지원)	기준소득 발생 후 원리금 상환 (조기상환 시 인센티브 검토 중)
상환 기간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장 10년	기준소득 발생 후 합계 최장 25년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연 450만원 무상 차상위계층 연 230만원 무상	없음
생활비 대출	1학기당 100만원 한도 저소득층 이차보전 적용	기본: 연 200만원 한도는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환의무 없음 (성적 요건 요구: 6등급 이상) 소득 1~3분위: 거치기간 무이자 소득 4~5분위: 취업 후 상환 소득 6~7분위: 일반대출 상환

4) 10월 말~11월 초에 교과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임. 교과부 내부적으로는 기준소득 연 1,500만원과 1,800만원, 상환율 15%와 20% 등을 조합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임. 예컨대, 기준소득 1,500만원, 상환율 20%, 연봉 3,000만원의 경우, 연봉에서 기준소득을 차감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원리금의 1년 상환액임

○ 내년도 신규제도 선택학생을 107만명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총 9.4조원의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7.3조원) 예정임

○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은 사라지면서 기준소득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상환하면 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교육 투자의 위험을 국가가 공유하는 장점이 있음

○ 현재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여유 재원이 발생하여, 중산층 이하의 소비 진작이나 노후 자금 준비 등의 효과도 예상됨

❑ 교과부는 대출 회수율 90%, 거치기간 8년 등의 가정 하에, 대출금 상환 이전까지 지원할 채권 이자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재정투자 확보가 시급함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 추가 소요액 예상[5)]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0~2014	2015~2019	2020~2024
현행 대출제도 유지	5,017	6,876	9,310	12,9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6,986	15,344	29,257	25,113
재정 추가 소요액	1,969	8,468	19,947	12,117

주: 자본금 10배 이내의 채권발행 규정이 미폐지시 연 9,400억원 이상 추가 소요

○ 내년에 재단이 발행해야 할 채권 규모는 약 9.4조원으로, 이 중 7.3조원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대출을 위한 채권이고, 2.1조원이 기존 대출제도 선택 학생 대출을 위한 채권임

– 교과부는 정부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면 2009년 2학기 대출금리(5.8%)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0.2%p~0.3%p)가 가능하다고 예상

5) 기준소득, 상환율 등 다양한 제도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교과부에서 재정부담 예상을 수정 중이다.

❑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재 교과부의 구상은 외국에 비해 국민의 부담이 다소 높은 편임[6)]

ICL 도입 주요 국가 상환 제도 현황(2004~2005년)

(단위: 달러, 미국달러의 PPP 환산액)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 (주의: 모기지 방식)
기준 소득	25,750	24,240	10,990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적용 금리	거치: 무이자 상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2.6% 수준)	거치: 무이자 상환: 국채수준 (최대 7%)	5% (단, 저소득층 이차보전 병행)
선납 할인	15~25% 이자할인	없음	없음	없음
상환 방식	소득수준 따라 누진율 적용 (최대 10%)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재량소득의 15% 이하

자료: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2009 OECD 교육지표(www.oecd/edu/eag2009).

❑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 정도와 대출자 부담 정도가 결정되므로, 양자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자영업자 비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특수성이 향후 정부 재정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곤란함

○ 가정주부, 대출 후 이민자, 각종 중소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며, 교과부는 해외사례와 법률문제 검토 진행 중

❑ 기존 이차보전 및 무상보조의 축소·폐지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최종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애소득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6) 2006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60.6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3,083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각 국의 기준소득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기준소득/1인당 GDP), 영국이나 미국 수준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이후 소득분위별 상환부담 변화 예시

소득 분위	구 분	기존 제도 적용	취업 후 상환제
기초생활 수급자	무상 보조	장학금 연 450만원	생활비 연 200만원
	추가 대출액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 없음
	상환 원금	학기당 275만원	학기당 400만원
	이자 발생액	거치기간 중 없음	학기당 12만원 누적
	졸업 원리금	2,200만원	3,632만원
차상위 계층	무상 보조	장학금 연 230만원	지원 없음
	등록금 원금	학기당 285만원	학기당 400만원
	등록금 이자	거치기간 무이자	학기당 12만원 누적
	생활비 원금	학기당 100만원	학기당 100만원
	생활비 이자	거치기간 무이자	거치기간 무이자
	졸업 원리금	3,080만원	4,432만원
소득 3분위 이하	총 상환원금	학기당 500만원	학기당 500만원
	등록금 이자	거치기간 무이자	학기당 12만원 누적
	생활비 이자	거치기간 무이자	거치기간 무이자
	졸업 원리금	4,000만원	4,432만원
소득 4~5분위	상환 원금	학기당 500만원	학기당 500만원
	등록금 이자	거치기간 연 4%p 감경	지원 없음
		학기당 4만원 누적	학기당 12만원 누적
	생활비 이자	거치기간 연 4%p 감경	지원 없음
		학기당 1만원 누적	학기당 3만원 누적
	졸업 원리금	4,180만원	4,540만원
소득 6~7분위	상환 원금	학기당 500만원	학기당 500만원
	등록금 이자	거치기간 연 1%p 감경	지원 없음
		학기당 10만원 누적	학기당 12만원 누적
	생활비 이자	거치기간 연 1%p 감경	지원 없음
		학기당 2.5만원 누적	학기당 3만원 상환
	졸업 원리금	4,450만원	4,540만원(4,462만원)

주: 학기당 등록금 400만원과 생활비 100만원, 대출금리는 연 6%(학기 3%)를 가정함

❑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나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 제도 도입으로 등록금 인상이 유발되고 대학 재정만 충실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학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필요함

❑ 현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 자체를 증가시켜야 하며,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예: 국채 발행)이나 이자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우수학생 국가장학생 사업을 본래 사업목적에 충실하도록 축소·통합하는 등 교과부 내 학자금 지원제도 전반의 재원 재배분 필요

○ 대학의 회계 투명성 확립과 조세 공평성 확립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신뢰 확보 필요

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개편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의 주요 개편사항

○ 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배수개선, 하천재해예방 등)은 종전 균특회계에서 타회계(농특회계 및 일반회계 등)로 이관

○ 광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광역도로, 광역철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은 광특회계로 이관

○ 종전 균특회계 200여개 세7부사업을 24개 사업으로 포괄보조금화

○ 2010년 예산안 : 9조 6,238억원 (전년대비 0.4% 증)

– 지역개발계정 3조 6,924억원, 광역발전계정 5조 5,594억원

❑ 광특회계 재원의 타 회계 의존성 여전

○ 정부는 광특회계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2009년 65.5%에서 2010년 예산안에서는 45.2%로 낮추었음

○ 대신 기타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한 만큼 늘려서 예산안을 편성,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의 비중이 64.5%를 차지

○ 교특회계와 환특회계 역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특회계의 일반회계 의존성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광특회계 재원의 타 회계 의존성 심화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계리한다는 특별회계의 설치 원칙(「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균특회계의 일반회계 재원 의존성 과다에 따라 향후 특별회계로서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 광특회계는 종전 균특회계의 200여개 단위사업을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200여개 계속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종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과 큰 차이가 없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는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 현재의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예산안 편성은 사업집행실적과 성과의 부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로 하여금 기존 계속사업의 잔여기간 예산은 계속 신청하는 행태를 반복하게 하였음

❑ 소규모 분산·중복 투자의 문제점

○ 개편된 2010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안은 종전 균특회계 지역개발세출 사업의 문제점이었던 소규모 분산·중복 투자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20개 시군 대상)에서 시·군 사업별 분산투자가 늘어난 시군이 72개 시군으로 나타났음

○ 이는 종전 균특회계의 소규모(10억원~30억원) 계속사업의 잔여 예산을 계속해서 신청하거나 신규로 기존 사업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배정받은 시·군이 전체의 60%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함

❑ 중앙유보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 2010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상황지

역개발 사업에 37억 5,7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439억 6,300만원이 중앙유보액으로 편성됨

○ 중앙유보액은 2010년 포괄보조사업 예산안과는 별도로 주관 부처가 신규사업선정과 인센티브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

○ 중앙유보액은 포괄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구분된 중앙유보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의 취지에 어긋남

○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동 중앙유보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광역경제권 경제 활성화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의 예산상 연계 미흡

○ 2010년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세출사업 중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한 예산안이 전체 광역발전계정 세출사업의 50%에 가깝게 편중

○ 5+2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연계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교통·물류망 확충(광역도로, 광역철도, 산단진입도로 등) 2조 4,268억원(43.6%), 지역전략산업 육성투자 1조 3,198억원(23.7%), 지역인적자원개발 6,988억원(12.5%), 연구개발진흥 및 특성화 831억원(1.5%) 등

○ 광역도로, 광역철도, 산단진입도로 등은 기존 교특회계의 일부사업들을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이관시킨 것으로서, 기존에 수행해 왔던 계속사업이 대부분

– 예산지원을 받는 광역경제권 지자체는 기존 교특회계가 광특회계로 바뀐 것 이외에는 예산상 실익은 없음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사업이 기존 균특회계와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작 5+2 광역경제권의 특화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2010년 예산안 총 3조 5,665억원 중 광특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예산은 4,166억원에 그치고 있음(비율상 11.7%)

❑ 광특회계 지역별 배분내역 미공개 문제

○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이 된 이후에도 동 회계의 관리·운영의 주체인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재원배분내역의 공개에 있어서 여전히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

○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처의 지역별 재원배분내역 자료요청에도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음

○ 광특회계의 지역별 재원배분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광특회계의 각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재원배분의 실효성, 합리성 제고 등과 같은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된 이후 포괄보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함

○ 광특회계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지역별 배분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8.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가 감소한 31조 1,145억원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1% 감소한 16조 1,977억원

○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9.1% 감소한 13조 2,735억원

○ 기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조 6,433억원

○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연도별 추이 :

- 2007년 22.4조원→2008년 26.5조원→2009년 33.5조원→2010년 31.1조원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26개 부처의 2010년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총 30조 9,803억원[7)]

○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①보건복지가족부로서 13조 9,128억원이고, 전체 국고보조금예산안 중 44.9%에 달하고 있음

○ 다음으로 ②국토해양부 4조 1,468억원(13.4%), ③농림수산식품부 4조 1,097억원(13.3%), ④환경부 3조 1,854억원(10.3%), ⑤행정안전부 1조 2,777억원(4.1%)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9,928억원, 지식경제부 9,898억원, 산림청 8,617억원, 소방방재청 5,265억원 등의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편성

○ 전체적으로 상위 5개 부처인 ①보건복지가족부, ②국토해양부, ③농림수산식품부, ④환경부, ⑤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총 26조 6,323억원으로서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86.0%를 차지

❑ 2010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의 지역별 배분내역 최초 공개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의 지역별 배분내역 현황을 최초로 공개

○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란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는 각 부처와 보조금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준 각 부처별, 각 시도별 국고보조금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내시액을 의미

7) 일부 부처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자치단체 이전목) 예산안에는 자치단체 교부금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교부금과 대행사업비는 조건부 교부금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시·도별 2010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배분 현황(10월 23일 현재)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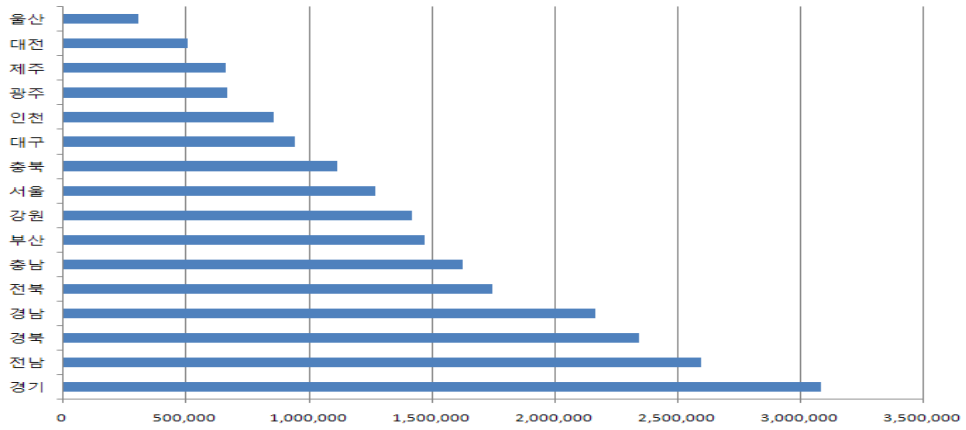

❑ 201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가내시액 규모가 가장 큰 시·도는 ①경기도로서 총 3조 320억원(전체 비중은 13.5%)의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배분될 예정

○ 다음으로 ②전라남도 2조 5,963억원(11.4%), ③경상북도 2조 3,408억원(10.3%), ④경상남도 2조 1,665억원(9.5%), ⑤전라북도 1조 7,475억원(7.7%), ⑥충청남도 1조 6,243억원(7.1%), ⑦부산광역시 1조 4,717억원(6.5%), ⑧강원도 1조 4,200억원(6.2%), ⑨서울특별시 1조 2,679억원(5.6%) 등의 순

○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에 국고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배분될 예정이고,

○ 반면에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적게 배분될 예정

❑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분된 지역은 경기도로서 총 12조 9,905억원이 배분되었음

○ 다음으로 ②전라남도 11조 9,625억원, ③경상남도 10조 1,966억원, ④경상북도 9조 8,242억원, ⑤전라북도 8조 1,946억원 등의 순으로 국고보조금이 동기간동안 배분되었음

○ 경상남도가 최근 5년간 실적에서 3위였으나, 2010년 예산안에서는 4위로(경상북도는 4위에서 3위로 변동), 부산광역시가 6위에서 7위로, 인천광역시가 11위에서 12위로(대구시는 12위에서 11위), 제주도가 13위에서 14위로(광주광역시는 14위에서 13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음

❑ 지방비 부담액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안 심사의 개선사항

○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과 이에 대한 국회 심사시 지방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정부 지방비 부담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 향후에는 지방비를 필요로 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액 및 부담비율 등에 대한 자료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중앙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간의 정확한 연계 및 국회 공유필요

❑ 국회 예산심사 전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역의 확정 필요

○ 2009년 10월 23일 현재, 2010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사업별, 시도별로 취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26개 부처 국고보조사업 중 19개 부처가 800여개 국고보조사업중 688개 국고보조사업만이 부분적으로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

○ 이는 각 부처가 법적 기일인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금 내시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임

○ 나머지 내시 되지 않는 사업들과 국고보조금 재원은 법적으로 국회 심사전 사업대상, 사업명, 예산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의 사업주체와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음

○ 따라서 각 부처가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지자체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예산안 지자체 미통보 부처(10월 23일 현재) : 교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훈처, 진실·화해위, 권익위, 경찰청

○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사업별, 지역별 배분내역이 법적 기일 내에 제대로 통지가 되지 않고 취합되지 않으면,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어렵게 되고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지역별 효과를 판단하고 공론하기가 어려워짐

9.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원되는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 2010년 예산안 : 지방교부세 26.6조원(추경대비 116억 증), 국고보조금 31.1조원(추경대비 2.3조원 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조원(추경대비 1.4조원 증)

○ 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7.7% 증가,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4.5%감,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 증

○ 국고보조금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8.3% 증, 2009년 예산도 전년대비 26.1%로 큰 폭으로 증가, 201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 감소

❑ 2010년 정부의 지방재정안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연장,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위하여 기존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

○ 큰 흐름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2008년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5년간 지방재정 30.2조원 감소

○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준연도 방식으로 계산된 국세세입의 감소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90조 1,533억원

○ 지방재정 감소규모는 2008~2012년 동안 총 30조 1,741억원

- 소득세,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가 6조 2,784억원
-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13조 6,032억원
-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 10조 2,925억원

○ 실제로 지방교부세의 2010년 예산안은 26.6조원인 바, 지방교부세 예산의 누적 감액분은 2008~2010년 동안 5.6조원임(2008년 예산 기준)

- 2008년 감세와 세제개편, 2009년 감액 추경 등에 기인

❑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연간 6.5조원의 결손

○ 정부는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

-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010년 예산기준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증규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4조 4,355억원

- 2010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으로 연간 2조 4,334억원의 지방소비세 수입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으로 산입,
- 부가가치세 5%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연간 지방교부세 감소분(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이 9,549억원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연간 세입 순증규모는 1조 4,7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재정 순증규모가 작아서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08년 감세와 세제개편으로 2010년 지방재정 세입은 7.9조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1.5조원 순증에 그쳐서 지방재정은 여전히 6.5조원의 결손이 예상됨

❑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 등 대책마련 필요

○ 중앙정부는 감세정책하에서도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을 통해서 적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자체재원(지방세)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중앙정부의 감세는 별다른 재정정책 수단이 없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로 증대되는 2012년까지는 지방재정 결손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보전할 것을 제안

○ 현실적으로 지방재정결손이 예상되는 6.5조원을 모두 보전할 수는 없음

- 중앙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감안

○ 최소한 작년 기준 목적예비비 수준인 1.9조원 정도의 지방재정 보전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제안함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간 재정형평성 악화 우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지역으로서 동 기간동안 총 1조 1,612억원의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경기 9,242억원, 경남 5,894억원, 부산 5,538억원, 대구 3,587억원, 경북 3,277억원, 충남 3,088억원의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이 큰 이유는 이들 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원래 50.6% 로 매우 커서 가중치를 적용한 조정비율도 29.0%에 달하기 때문임

○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전북,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지역 등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

❑ 지방소비세 배분 관련 권역별 가중치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

○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법」등 7개의 관련 법률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지방소비세액의 시도별 배분액을 결정할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통계 연도, 권역별 가중치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향후 행정입법에 의해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될 예정인 바, 이 때문에 정확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부의 자의적인 배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등에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있어서 재정력에 기초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에 대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지방소비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자율성 신장되었음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약 2.2%p 상승(2009년 53.6%→2010년 55.8%)
- 200여개 균특회계 사업의 24개 포괄보조금화

○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간 총재정사용액 기준 재원배분에서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9년 당초예산기준 : 중앙정부-일반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은 42.9 : 43.3 :13.8

○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비중이 증가한 만큼 책임성 강화를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조정방안, 낭비성 예산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

10.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2010년도 공적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액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82조 2,766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0.6% 증가한 총 106조 3,745억원으로 편성

○ 2010년도 연금보험료(기여금) 수입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8조 3,619억원 규모이나, 이자 및 재산수입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17조 6,257억원 규모임

○ 보전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내부수입은 8조 9,125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함

– 이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적자보전금이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3.2% 증가하였기 때문임

○ 여유자금회수는 국민연금의 경우 국공채권만기 장기화에 따라 만기도래되는 회수액이 15조 7,600억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4% 증가한 50조 1,796억원 규모로 편성

❑ 기금 운용에서는 연금급여, 수당 등 급여지출 사업비 21조 6,750억원 등으로 구성된 주요 사업비가 전년대비 10.5% 증가한 26조 129억원으로 편성

○ 기금관리운영비는 보수동결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 감소한 5,291억원으로 책정

○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투자 상품의 운용기대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2.2% 감소한 79조 8,325억원으로 편성

2010년 공적연금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억원,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합계		증가액	증가율
	2009	2010(안)	2009	2010(안)	2009	2010(안)	2009	2010(안)	2009	2010(안)		
[조달]	**823,648**	**822,766**	**129,465**	**133,836**	**82,147**	**84,015**	**21,881**	**23,128**	**1,057,142**	**1,063,745**	**6,603**	**0.6**
○ 자체수입	398,223	384,247	45,239	48,976	29,579	34,517	3,555	3,463	476,596	471,203	-5,393	-1.1
- 기여금(보험료)수입	232,806	241,990	24,018	24,232	11,521	14,087	3,317	3,311	271,663	283,619	11,957	4.4
- 이자 및 재산수입[1]	164,782	141,683	11,272	13,993	11,521	20,429	238	152	187,813	176,257	-11,556	-6.2
- 기타[2]	634	575	9,948	10,752	-	-	-	-	10,583	11,327	744	7.0
○ 경상이전수입[3]	-	-	1,665	1,586	-	-	34	35	1,699	1,621	-78	-4.6
○ 정부내부수입	198	102	59,674	64,272	7,433	7,012	16,539	17,739	83,843	89,125	5,282	6.3
- 국가부담금[4]	-	-	38,433	37,587	-	-	7,124	7,155	45,557	44,741	-815	-1.8
- 보전금[5]	-	-	20,074	25,770	-	-	9,409	10,566	29,483	36,336	6,853	23.2
- 전입금[6]	192	100	1,063	915	5,801	6,149	-	-	7,056	7,164	107	1.5
- 이차보전금	6	2	-	-	-	-	-	-	6	2	-4	-68.5
- 출산크레딧	0.02	0.02	-	-	-	-	-	-	0.02	0.02	0	0.0
- 공공자금예탁금 (예탁금원리금)	-	-	100	-	1,500	800	-	-	1,600	800	-800	-50.0
- 공공자금이자	-	-	4	-	132	63	6	19	142	82	-60	-42.1
○ 여유자금회수	425,228	438,417	22,887	19,001	45,135	42,487	1,754	1,891	495,004	501,796	6,792	1.4
[운용]	**823,648**	**822,766**	**129,465**	**133,836**	**82,147**	**84,015**	**21,881**	**23,128**	**1,057,142**	**1,063,745**	**6,603**	**0.6**
○ 사업비	77,395	92,231	106,162	111,990	31,791	34,544	20,080	21,363	235,429	260,129	24,701	10.5
- 급여지출[7]	76,745	90,780	82,195	86,719	15,726	18,187	19,880	21,063	194,546	216,750	22,204	11.4
- 경상지출[8]	312	489	2,514	4,345	-	-	200	300	3,027	5,134	2,107	69.6
- 융자지출[9]	-	-	12,543	12,747	15,914	16,229	-	-	28,458	28,977	519	1.8
- 자본지출[10]	338	962	8,909	8,179	151	128	-	-	9,398	9,268	-129	-1.4
○ 기금운영비	4,334	4,312	629	604	400	372	3	3	5,367	5,291	-76	-1.4
○ 여유자금 운용	741,919	726,223	22,674	21,241	49,956	49,099	1,798	1,762	816,346	798,325	-18,021	-2.2

주: 1)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시설운영수입, 고정자산매각대를 포함하고,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자금 회수, 학자금 회수 등, 대여이자, 자금운용이자, 기타수입이 포함.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재산수입이 포함.

2)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회수 및 민간차입금을 포함.

3)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만 포함.

4)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 포함.

5)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보전금이 전년년 정산액을(2009년 143억원, 2010년(안)은 1,733억원) 반영한 금액임.

6)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부담금, 국고학자금대여사업비 포함.

7) 공무원·사학·군인연금기금의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를 포함.

8)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복지타운운영비, 기금운용본부운영비, 기금운용공사설립비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차입금이자상환,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예탁금을 포함하고,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공자기금 예탁이 포함.

9)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운영이 포함되고,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자금대여, 학자금대여가 포함.

10)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본부지방이전, 정보화사업, 기타사업비가 포함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통합전략시스템이 포함

자료: 각 연금공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9.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 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를 설립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129억원을 계상

– 2억원은 기금운용공사설립추진위원회 및 기금운용공사의 임직원 인건비(3개월)이고, 40억원이 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추진반 건물임차비 등이며, 나머지 9억원은 공사 설립 및 추진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

❑ 동 사업은 이미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 예산안 260억원이 전액삭감됨

○ 동 사업과 관련된 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로부터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임

○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되기가 어렵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법률안 통과 이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필요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사업은 노령연금급여지급, 장애연금급여지급, 유족연금급여지급, 반환일시금지급으로 크게 구분됨

○ 2010년도 국민연금 연금급여사업의 예산안은 완전노령연금수급자 급증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전년대비 18.3% 증가한 9조 780억원으로 계상

❑ 최근 3년간 연금급여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였고,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획변경을 통해 과소계상된 예산을 충당

○ 2008년의 경우 계획변경을 하지는 않았으나,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2,11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

○ 국민연금의 주요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지출의 경우 다른 복지예산을 확대할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매년 큰 규모로 증가하므로 정확한 예산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월부터 시행될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병급여부, 조기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준 변경 등 연금급여지출과 관련된 규정 변경내용을 제외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 정부의 보전을 받고 있고, 기금규모 또한 연간 지급액의 76%(2010년 기준)에 불과하여 기금의 본래 기능인 책임준비금 기능보다는 지불준비금의 역할을 수행

○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자산 운용은 안정성의 바탕 위에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금융자산 배분은 보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국내주식은 전체 금융자산 투자금액의 13.0%로, 2009년에 비해 오히려 4.5%p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

○ 공무원연금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내년 경기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의 상승 전망으로 2009년에 비해 2010년 국내주식의 비중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의 내년도 국내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2010년도 공무원연금의 신규시설 건립사업은 김해·남원상록골프장 건립과 원주추모공원, 공단 본사 제주사옥 건립 등으로 구성

○ 2010년도 공무원연금 신규시설 건립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351억원으로 계상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50% 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대부분이 시설 공사인 관계로 부지선정 등 공기가 계획보다 많이 연기될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사업이나 민원문제 등이 해결되어 공사가 이미 시작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2009년 12월 목표로 하여 2010년도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결정고시 일정변화 등을 감안한 일부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 사학연금의 연금급여사업은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많은 급여로 구성

○ 2010년도 사학연금 연금급여사업의 예산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5.4% 증가한 1조 4,239억원으로 계상

❑ 2010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예산안 산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2009년 8월부터 시행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해 주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반영여부임

○ 사학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2010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예산안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 예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연계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일시금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함

- 따라서 2010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예산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계신청율 실적치(65명, 35억원)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학연금기금은 1995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공자기금에 여유자금 일부를 예탁하고 있음

○ 사학연금기금은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총 1조 6,400억원을 예탁하여 1조 4,950억원을 회수하여 예탁잔액이 1,450억원이 남았음

○ 남은 예탁잔액 1,450억원은 계획상 2010년에 800억원, 2011년에 650억원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제도 미성숙으로 인해 적립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2009년 예산 편성 당시 1,500억원 회수금 중에서 700억원을 재예탁하라는 의견이 있는 등 매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예탁 요구가 계속 발생

○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국가 재정운용상 공공부문 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

-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공단에서 운용하는 여유자금 운용수익률보다 공공자금 운용수익률이 낮아 누적 기회손실액이 557억원에 달함

○ 따라서 사학연금기금도 공공자금 예탁 시 만기(7년)까지 보유함으로써 장기보유와 낮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재예탁은 연기금의 목적에 어긋나고, 남아 있는 예탁금 1,450억원의 조기환수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

❑ 군인연금의 퇴직급여사업은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성

○ 2010년도 군인연금 퇴직급여사업의 예산안은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7.1% 증가한 1조 7,987억원으로 계상

❑ 2010년 군인연금의 퇴직급여 예산안에서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사업과 같이 20년 미만 퇴직자의 경우 2009년 8월부터 시행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로 인해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인원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계제도를 아직까지 알고 있는 퇴역군인들이 많지 않고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으로 20년 미만 퇴역자들이 많아 이들이 민간부분으로 재취업할 경우 연계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0년 군인연금의 퇴직급여 예산안에서도 지금까지의 연계신청율 실적치(15명, 4억원)를 반영하던지, 아니면 20년 이상 퇴역자의 일시금선택율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해 20년 미만 퇴역자의 일시금 감액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동 공적연금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연계를 위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09.1.13.제정)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정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기간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금별(국민연금 50%, 공무원연금 21%, 사학연금 18%, 군인연금 11%)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군인연금기금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반영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인연금의 분담금 7억원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1.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 분석: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규모를 중심으로

❑ 자체수입 재원으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 기금 6곳 중 추가로 재정 지원이 되는 기금은 3개임

○ 2007년~2009년 9월까지의 실적과 2010년도 계획에 따르면, 자체수입 재원으로 목적사업 및 기금운영비 등 지출소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은 방송발전기금, 보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영화발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6곳임

○ 이 중 2010년에 정부 재정 지원이 되는 곳은 보훈기금(일반회계 9억원, 복권기금전입금 176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전입금 26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특회계전입금 350억원) 등 3곳임

자체수입으로 지출소요 충당이 가능한 사업성기금 현황

(단위: 억원)

기금명	회계연도	자체 수입	지출소요				자체수입－지출소요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 부지출	소계	
방송발전기금	2007년-실적	2,000	1,396	297	-	1,693	307
	2008년-실적	1,822	1,307	168	-	1,475	347
	2009년-실적	1,465	1,369	2	-	1,371	94
	2010년-계획	1,700	1,977	7	-	1,984	-284
보훈기금	2007년-실적	1,898	2,280	19	19	2,318	-420
	2008년-실적	1,918	1,212	12	6	1,230	688
	2009년-실적	1,138	919	8	7	934	204
	2010년-계획	2,692	1,240	13	8	1,261	1,431
국민체육 진흥기금	2007년-실적	3,936	2,643	630	-	3,273	663
	2008년-실적	4,967	2,873	610	-	3,483	1,484
	2009년-실적	4,376	3,404	143	-	3,547	829
	2010년-계획	4,409	4,979	192	-	5,171	-762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2007년-실적	62	-	4	-	4	58
	2008년-실적	78	6	4	-	10	68
	2009년-실적	38	-	4	-	4	34
	2010년-계획	92	288	6	-	294	-202
영화발전기금	2007년-실적	1,144	341	1	-	342	802
	2008년-실적	455	431	92	-	523	-68
	2009년-실적	296	171	61	-	232	64
	2010년-계획	497	438	94	300	832	-335
방사성폐기 물관리기금	2009년-실적	1,358	100	276	-	376	982
	2010년-계획	2,869	390	393	-	783	2,086

주: 1. 2009년 실적은 9월말 현재 수입 대비 지출 실적

2. 정부내부지출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은 여유자금 운용 목적이므로 제외

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2009년에 신설되어 2009년 실적과 2010년 계획만 기재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보훈기금은 2008년 이후 자체수입이 지출소요를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어 여유자금 연말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 2010년도 자체수입으로 지출소요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할 필요

○ 여유자금 규모가 2007년말 1,205억원, 2008년말 2,10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2009년말에는 2,867억원으로 계획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2010년도 자체수입 2,682억원으로 지출소요 1,431억원을 충당할 수 있음

○ 2010년도에도 여유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할 필요

- 공자기금 예탁은 공자기금의 재원을 늘려 국채 발행 축소 가능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금지급사업비 불용으로 인해 매년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도 출연금은 기금에서 확보가능한 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유자금 규모를 과소 추계하였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출연금 규모를 감액 조정할 필요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거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재해재보험금지급이 불용되고 있어 여유자금이 2007년 643억원, 2008년 911억원, 2009년 9월 기준 1,27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0년도 농특회계 출연금 350억원은 2013년까지 1회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재원 2,854억원과 2013년까지 확보될 기금 재원 1,328억원과의 차액을 4년간 균등하게 지원받는 것으로 하여 산정됨

○ 그러나, 2009년 말의 여유자금 규모를 904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2009년 9월 말에 이미 1,271억원이 된 점을 감안하면 특별회계출연금 규모를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

❑ 국가재정 지원을 주 수입재원으로 하는 기금 중 여유자금이 과도한 기금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기금은 6곳임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5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3,5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형식으로 9,629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6개 기금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계획

여유자금이 과도한 기금에 대한 정부지원현황

(단위: 억원)

기금명	일반회계	기금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합 계
대외경제협력기금	1,500		-	1,500
남북협력기금	3,500	9,629	-	13,129
문화예술진흥기금	-	-	237	23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3	-	-	53
임금채권보장기금	82	-	-	82
언론진흥기금	85	-	-	85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통해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주요 지출 사업인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집행률이 2006년 이후 매년 저조하여 52~68%이고, 2009년 9월 기준으로도 49%밖에 되지 않는 등 집행부진이 연례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여유자금 보유 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 9월 기준으로 여유자금은 5,672억원에 달함

○ 대개도국차관 집행률 제고를 통하여 ODA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남북협력기금의 출연금 예산은 2010년 예산에 계상하되, 사업진행 추이를 보면서 집행하는 한편,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실적이 2007년 이후 매년 계획에 못 미치고 있고, 2009년 9월 기준으로도 561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에 그침

○ 이러한 목적사업비 집행부진으로 여유자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09년 9월 기준 여유자금은 1조원을 초과

○ 동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예산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9년과 동일하게 2010년에도 사업 진행 추이를 보고 실제로 출연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또한, 2009년 9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중 당장 사업에 사용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인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

– 공자기금 예탁은 공자기금의 재원을 늘려 국채 발행 축소 가능

12. 2010년도 부담금 부과계획과 실질적인 국민부담

❑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101개)의 2010년도 부과총액은 중앙 12조 6,441억원, 지방·공단 등 3조 4,308억원(추정)으로, 총 16조 749억원 규모

○ 이는 2010년 총국세수입 대비 9.4%,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2006~2010년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안 (비중)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중앙정부	**94,647**	**109,558**	**120,174**	**119,007**	**126,441 (78.7)**	**7,434**	**6.2**
- 특별회계	29,994	33,526	32,598	33,441	35,217 (21.9)	1,776	5.3
- 기 금	64,653	76,032	87,576	85,566	91,224 (56.7)	5,658	6.6
지방자치단체	**11,700**	**17,771**	**13,694**	**13,561**^{e}	**14,409**^{e} **(9.0)**	**848**^{e}	**6.2**^{e}
- 광 역	5,805	8,565	6,580	-	- -	-	-
- 기 초	5,895	9,206	7,114	-	- -	-	-
공단 등	**13,187**	**16,321**	**18,911**	**18,728**^{e}	**19,899**^{e} **(12.4)**	**1,171**^{e}	**6.2**^{e}
합 계	**119,534**	**143,650**	**152,780**	**151,296**^{e}	**160,749**^{e} **(100.0)**	**9,453**^{e}	**6.2**^{e}
총국세 수입대비 비중	**8.7**	**8.9**	**9.1**	**9.2**^{e}	**9.4**^{e}	-	-
GDP 대비 비중	**1.3**	**1.5**	**1.5**	**1.5**^{e}	**1.4**^{e}	-	-

주: 1. *e* 표시는 추정치

2. 2006~'08년은 결산에 따른 귀속액, 2009~'10년은 부과계획

3.「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제출 전까지 자료파악이 어려운 2009~'10년 지방/공단귀속 부담금(*e* 표시)은 2008~'09년 및 2009~'10년간 중앙정부 귀속분 증가율(각각 -0.97%, 6.25%)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부과액 추정

자료: 1. 기획재정부,「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년도

2. 대한민국정부,「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참고자료」, 2009. 10

3. 소관부처별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부과액 및 부과계획안(내부자료)

❑ 중앙정부 귀속 57개 부담금[8]은 2010년 5개 특별회계(22개 부담금)에 3조 5,217억원, 34개 기금(35개 부담금)에 9조 1,224억원 운용계획

○ 부담금 1조원 이상 운용 부처: 지식경제부(4조 421억원), 금융위원회(2조 8,601억원), 보건복지가족부(1조 6,580억원), 환경부(1조 6,466억원)로, 이상 4개 부처 운용총액(10.2조원)이 중앙정부 귀속총액의 81% 차지

○ 부과액 1조원 이상 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담금(1조 8,650억원),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1조 6,355억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1조 3,485억원)

❑ 부담금과 국세수입의 증가속도를 비교하면, 2001~2010년간 부담금 연평균 증가율이 9.5%임에 비해 총국세수입은 6.7%로, 지난 10년간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부담금이 국세수입보다 1.4배 빠르게 늘어남

❑ 201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의 토대가 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1%, 26.4%로 추정되는데, 이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부담금 부담까지 합하면 2010년에 예상되는 실질적인 국민부담은 27.8% 수준

○ 국민부담은 조세 및 재정정책 입안에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이므로, 최근 GDP 대비 1.4~1.5%에 이르는 부담금 부담이 포함되는 실질적인 국민부담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 필요

○ OECD 국민부담률은 2001년 이래 거의 변동이 없지만(35%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민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통해 적시성 있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노력 필요

8) 동 부담금 수는 2008년 실적기준

GDP 대비 국민부담 지표: 2001~2010년(안)

(단위: 억원, %)

	부담금 징수액	GDP 대비							
		부담금 부담률 (a)	조세 부담률 (b)	부담금+ 조세 부담률 (a+b)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c)	국민 부담률 (조세+사회보장) (b+c)	부담금+ 국민 부담률 (a+b+c)	OECD 평균 조세 부담률	OECD 평균 국민 부담률
2001	70,892	1.1	18.8	19.9	4.2	23.0	**24.1**	27.4	35.7
2002	78,215	1.1	18.8	19.9	4.4	23.2	**24.3**	27.0	35.4
2003	91,831	1.2	19.3	20.5	4.6	23.9	**25.1**	26.8	35.3
2004	100,415	1.2	18.4	19.6	5.1	23.5	**24.7**	26.5	35.2
2005	114,296	1.3	18.9	20.2	5.0	23.9	**25.2**	26.7	35.8
2006	119,534	1.3	19.7	21.0	5.4	25.1	**26.4**	26.8	35.9
2007	143,650	1.5	21.0	22.5	5.5	26.5	**28.0**	-	-
2008	152,728	1.5	20.8	22.3	5.8	26.6	**28.1**	-	-
2009^e	151,296	1.5	20.5	22.0	5.9	26.4	**27.9**	-	-
2010^e	160,749	1.4	20.1	21.5	6.3	26.4	**27.8**	-	-

주: 2009, 2010년 데이터는 추정치(*e*).

자료: 1.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년도.
2. 기획재정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9. 9.
3.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4.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008.
5. OECD, *OECD Factbook 2009*, 2009.

GDP 대비 국민부담(률) 변동추이: 200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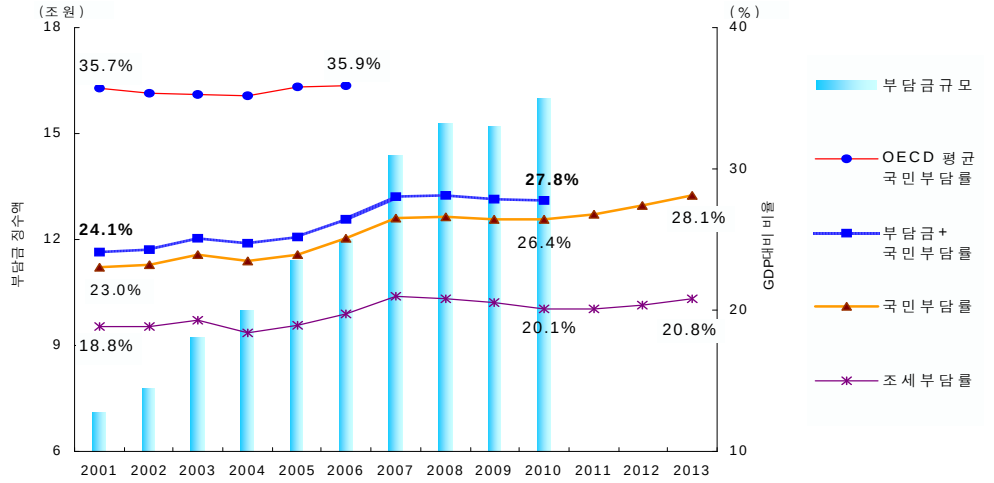

❑ 부담금은 결산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 국회에 제출되므로,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국회 심의를 위해서는 100여개 부담금운용에 관한 사전계획인 「부담금운용계획서」(가칭) 국회제출 필요

○ 중앙정부 귀속 부담금(57개)의 경우, 특별회계(5개)와 기금(34개)에 분산되어, 부과총액, 적정부과율, 부과목적에 적합한 사용내역 등 부담금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매우 제약

○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의 개정 필요

13.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적정성 분석

❑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2조 3,000억원

○ 목적예비비(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에 사용)는 1조원 규모(2009년과 동일)

- 2009년도에 이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285억원)' 예산을 제외하면 1조원 규모임

○ 일반예비비는 1조 3,000억원 규모(2009년보다 2,000억원 증액)

❑ 2009년보다 2,000억원 증액된 1조 3,000억원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일부 조정 필요

○ 2005년 이후의 일반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2006년에 8,683억원을 지출한 것이 최고 규모이었으며, 다른 해에는 8,000억원 이내에서 지출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도 예산안의 1조 3,000억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예비비는 사전예측불가능성·불가피성·시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할 필요

14.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외화예산의 원화경비액 감액 필요

❑ 2010년 예산안의 기준환율 1,230원/$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0년 환율 전망치(1,100~1,200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준환율 1,230원/$을 각 기관의 전망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준환율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1,186원/$으로 낮출 경우 원화경비액은 당초 5조 1,421억원에서 4조 9,582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1,8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음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2010년 외화예산의 원화경비 감소액 전망

(단위: 천 달러, 억원)

구분	외화예산안	원화경비액		원화경비 감소액 (B−A)
		정부(A)[1] (1,230원/$)	예산정책처(B)[2] (1,186원/$)	
합 계	4,180,565	51,421	49,582	△1,839
일반회계	3,916,827	48,177	46,454	△1,723
특별회계	263,738	3,244	3,128	△116

주: 1) 2010년 외화예산안에 정부의 예산안편성 기준환율 1,230원/$ 적용시 산출된 원화경비
2) 2010년 외화예산안에 국회예산정책처 환율전망치 1,186원/$ 적용시 산출된 원화경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15. 재정수반법률(안)의 2010년도 예산안 연계성 분석 요약

❑ 제18대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과 그에 따라 편성된 2010년 예산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통과된 재정수반법률은 181건이고 이에 따른 2010년 예산안 반영액은 1조 4,395억원임

○ 전체 재정총지출 291.8조원의 0.5%에 해당

○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4,258억원으로 가장 크고, 보건복지가족부 2,873억원, 지식경제부 2,072억원, 기획재정부 1,551억원 순으로 집계

○ 분야별로는 경제분야 62.4%, 사회분야 21.8%, 교육·문화 6.4% 순으로 배분

❑ 181건의 통과 재정수반법률 중 15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 4건,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각각 2건 등으로 집계

○ 추계액이 제시된 5개 사례의 추계액 합계는 2,441억원이며, 추계액이 제시되지 않은 10개 사례가 존재

○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 통행요금의 감면액을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추계서에 의하면 2010년 2,089억원을 도로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위법이 우려됨

❑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25건의 법률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4,790억원

○ 예상 비용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사유로 미첨부사유서 해당 법안 6건에 따른 예산안 편성액은 878억원

–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50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대외무역법」에 27억원이 편성

○ 비용 추계가 곤란하여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법안 19건에 따른 예산안 편성액은 3,912억원

– 정부가 제출한 환경부 소관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150억원, 국토해양부 소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에 42억원 등이 편성

❑ 법률과 예산의 괴리를 막기 위해 제도적 접근이 필요

○ 수정안 및 위원회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음

– 181건의 통과된 재정수반법률 중 비용추계서 첨부 112건, 비용추계서 없는 법률은 69건(모두 위원장 대안)

○ 국회법 제83조의2에 규정된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일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제도 관련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 심사 단계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의 예산과정을 Top-down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액, 분야별 지출한도 등을 먼저 합의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기준선전망(Budget Baseline)과 재정지출소요점검(Budget scorekeeping)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

1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분석

❑ 2010년도 BTL사업 총한도액은 2009년 대비 45.3% 감소한 3조 5,788억원 수준임(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 2010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는 학교·군주거시설·하수관거 등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 상 시 설	사업규모	한도액
【국가사업】		**20,147**
① 군 주거시설	병영생활관 55개 대대 등	15,595
② 학교시설	2개소	4,55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394**
③ 하수관거	200km	2,217
④ 문화복합시설	1개소	380
⑤ 도서관	1개소	147
⑥ 과학관	2개소	531
⑦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119
【예비한도액】		**1,177**
소 계		**24,718**
【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		**11,070**
합 계		**35,788**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09. 10

❑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민자사업 적격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준비정도, 재정 부담 관리기준 고려’ 등 4가지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

❑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BTL 추진이 향후 재정사업을 통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관련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조사나 운영비에 대한 생애주기비용(LCC) 체계적 관리 필요

  ○ 도서관, 과학관, 문화관, 보건시설 등 서비스 중심의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비용 산정기준이나 관련 DB를 마련하여 시설별 적격성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준비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를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 검토

❑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 rule) 관련해서는 정부지급금 도래기에 재정경직성 방지 위해 재정부담에 대한 엄밀한 고려 필요

  ○ 학교시설의 경우 행복청 소관 BTL사업과 교육청 소관 BTL사업을 통합하여 재정 관리

  ○ 하수관거 시설의 경우 중기재정계획과의 연동을 통해 한도액 심의

사업별 분석

Ⅲ. 사업별 분석

【경 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용 성과미흡과 시스템기능 보완 필요

❑ 2010년도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예산은 총 203억 5,100만원이며, 2009년도 대비 3.1% 감소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운영 : 3억 8,400만원(2009년도 대비 5.7% 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99억 6,700만원(2009년도 대비 3.1% 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직접투입된 비용 1,210억 4,500만원과 기존 재정정보시스템개발 비용 490억 6,400만원을 합한 1,701억 900만원임

직접투입 비용

(단위: 백만원)

	2006까지	2007결산	2008결산	2009예산	2010예산안	합계
기획단 운영	3,186	487	220	387	384	4,66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21,645	31,390	21,787	21,592	19,967	116,381
합 계	24,831	31,877	22,007	21,979	20,351	121,045

주: 2009년 예산은 예산현액기준으로 2008년에서 이월된 9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기존 재정정보시스템개발 비용

(단위: 백만원)

시스템명	사업명	기 간	금 액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NAFIS)	정보전략계획 수립	2001.07 ~ 2002.04	1,128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002.02 ~ 2002.11	5,190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2002.07 ~ 2002.12	18,246
	장비확대사업	2003.09 ~ 2004.02	10,250
	백업시스템 구축	2003.11 ~ 2004.02	9,980
	소 계		44,794
예산정보 관리시스템 (FIMSys)	기획예산정보시스템 1차 개발	1999.09 ~ 2000.08	2,980
	기획예산정보시스템 2차 개발	2000.12 ~ 2001.06	1,290
	소 계		4,270
기존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총계			49,064

자료: 기획재정부

❑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

○ 여비의 집행률이 2008년 31.9%, 2009년 8월말 20.5%로 저조, 불용처리된 여비는 2007, 2008 2년간 1억 3,300만원임

○ 운영비의 집행률은 2008년 59.9%, 2009년 8월말 47.1%로 저조, 불용처리된 운영비는 2007, 2008 2년간 1억 9,700만원임

○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은 2008년 58.0%, 2009년 8월말 61.1%로 저조, 불용처리된 운영비는 2007, 2008 2년간 1억 5,300만원임

❑ 운용성과 미흡

○ 실집행률 계산을 위한 실적집계에 어려움 존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되어 실집행률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행정안전부의 e-호조시스템에는 246개의 지자체의 회계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며, 지자체 보조사업 중 일부 지자체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e-호조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적집계에 어려움이 많음

○ 단순 합계 자료를 제공하여 재정정보로서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 높음

- 기금 여유자금운용 지출액이 매월잔액의 합계치를 적시하여,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 존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체감만족도는 100점 만점의 54.7점으로 매우 낮음

○ 예산사업 원가정보 산출이 불가능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간접원가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행정지원 프로그램(7000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사업별 원가정보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과거 시계열자료의 누락과 집행실적 등의 실시간 정보, 성과관리 등 예산심사의 필요정보의 누락 등으로 인해 재정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구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2.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조정 필요

❑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수입 계획액 조정을 통해 공자기금 국채 발행 규모 축소 필요

○ 외평기금에서는 2010년도에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분 19.4조원을 포함 총 33.4조원(신규 14조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것으로 계획함

○ 2008년말 외평기금의 여유자금은 34.8조원으로 전년(0.6조원) 대비 약 33조원 증가하였고, 2009년말 여유자금도 예년의 1~2조원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결과, 일정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예수할 계획인데, 신규 공자기금 예수금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율간의 금리차로 인해 938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유재원을 외환매입에 우선 사용하여 2010년에 계획된 공자기금예수금 규모를 감액할 필요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음

3.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집행실적 부진과 예산 과다편성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대비 28.4% 감소한 2,847억원임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2009년 10월 15일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이 존재

○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과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이 그 사례이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의 집행률 추이와 계획액

(단위: 백만원, %)

	2006 집행률	2007 집행률	2008 집행률	3년평균 집행률	2009.10 집행률	2009 계획액	2010(안) 계획액	증감률
지방상수도시설개량	97.0	97.5	82.9	92.4	-	-	-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100.0	100.0	100.0	100.0	-	-	-	-
환경개선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0	-	-100.0
저소득층생업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7,200	7,200	0.0
장애인자립자금	100.0	100.0	75.0	91.7	75.0	16,000	16,800	5.0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융자	-	-	-	-	-	-	30,000	순증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4,000	33.3
농축산경영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20,968	-	-100.0
영어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1,000	51,000	0.0
산업기술자금	100.0	100.0	100.0	100.0	-	-	-	-
농공단지진흥	100.0	100.0	100.0	100.0	-	-	-	-
선대구조개선융자	100.0	100.0	100.0	100.0	0.0	5,200	5,200	0.0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0.0	100.0	0.0	33.3	0.0	1,000	34,020	3302.0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100.0	100.0	100.0	100.0	0.0	28,898	-	-100.0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100.0	100.0	100.0	100.0	100.0	32,300	-	-100.0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	0.0	100.0	50.0	0.0	53,555	38,889	-27.3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	-	0.0	0.0	0.0	0.0	1,000	42,552	4155.2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65.7	0.0	0.0	21.9	100.0	1,000	-	-100.0
여수세계박람회지원	-	-	-	-	-	-	50,000	순증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100.0	99.8	100.0	99.9	100.0	30,000	-	-100.0
IT설비투자확대지원	100.0	100.0	100.0	100.0	-	-	-	-
제주대병원지원	-	100.0	100.0	100.0	-	-	-	-
양산부산대병원건립	-	-	100.0	100.0	100.0	16,500	5,000	-69.7
칠곡경북대병원건립	-	-	100.0	100.0	-	-	-	-
전남대병원건립	-	-	100.0	100.0	-	-	-	-
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지원	-	100.0	100.0	100.0	0.0	70,000	-	-100.0

주: 1. 2009년 10월 15일까지의 집행률임

2.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3년 평균 집행률 및 2009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액이 전년과 같거나 증액된 연구용역비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4.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 국세청은 2010년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 예산을 2009년 대비 9.8% 감액하여 13억 8,000만원을 편성

❑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07년 53.2%, 2008년 75.6%로 부진하며, 매년 예산현액의 일정비율이 불용

○ 전용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D)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률 (D/B)
2006	2,125	-200	1,925	1,883	0	42	88.6	97.8	2.2
2007	2,125	-756	1,369	1,130	0	239	53.2	82.5	17.5
2008	1,800	-260	1,540	1,360	0	180	75.6	88.3	11.7
2009.9	1,530	-	1,530	-	-	-	0.0	0.0	-

주: 전용 등에는 전용, 이용, 조정, 이체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세청, 「2010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 국세청의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시범사업'과 유사하며, 국토해양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국세청은 국회의 2007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는 조치결과를 보고

– 국세청이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조치결과 보고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5.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사업 검토

❑ 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

○ 소규모 이전 인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한 가능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신속한 적발 차질 가능성, 고객 수요 대응 지연 가능성, 신청사 기능의 상실 가능성 등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진주세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천안으로의 이전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

6. 법률제정을 전제로 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 예산안 편성

❑ 2010년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 예산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600억원이 신규편성됨

○ 본 사업은 농식품 부문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전문적인 투자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농특회계에서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세출용도에 부합하여야 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농어촌특별세사업·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출자의 법적 근거가 없음

○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출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인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 예산안 심의 전에 동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만일 예산안 심의전에 동 법률안의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동 사업 예산안의 감액이 불가피함

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공정 지연과 주택 과잉공급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2010년에는 전년도 예산(20억 8,500만원)대비 874.4%가 증가된 203억 1,600만원이 농특회계에서 편성됨

❑ 현재 추진중인 5개 지구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예상일정보다 3~4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임

○ 2009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10월말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1개 지구임

○ 사업공정 지연으로 2010년도 예산의 원활한 집행 및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공정 지연분에 대한 예산감액 검토가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30~40대 연령층 등 제한된 자격요건을 가진 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5개 지구 합계 7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 6년간 30~40대 연령층의 귀농추이를 보면 주택공급이 과다 산출되어 있음

○ 전국적으로 한해 1,170명이 귀농하고 있는 것에 비해, 5개 시범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수는 700세대로서 과다함

○ 현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이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택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을 조정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반영된 2010예산안은 조정규모에 따른 일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편성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사업은 전년대비 90.9% 증액된 1,155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예산안에는 250억원이 반영되었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예산 (A)	2010 예산안 (B)	증 감	
			(B−A)	(B−A)/A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	60,501	115,500	55,000	90.9
광역선도산업육성	58,831	90,000	31,169	53.0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25,000**	**25,000**	**순증**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기획	1,669	500	-1,169	-70.0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지원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3,600억원으로, 이 중 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임

○ 이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될 계획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계획기간을 넘어서게 되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관련 총사업비는 2,0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관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도의 자율적 기획으로 추진한다는 방향만 수립한 상태임

❑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공간적으로는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과 광역권간 및 글로벌 연계·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차이가 없음

○ 이는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광역 연계·협력사업의 공간적 유형

구 분	특 징
권역내	**광역권 內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예 : 대전-충북-충남)**
권역간·글로벌	광역권간 및 글로벌 연계·협력사업 (예 : 강원-대경, 제주-프랑스)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차차년도 연구비의 예산안 편성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추경 대비 187억원이 감소한 6,420억 8,700만원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2010 예산안 (B)	증 감	
	당초예산	추경반영 (A)		(B−A)	(B−A)/A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63,100	93,100	88,530	-4,570	-4.9
산업소재산업원천기술개발	72,815	92,815	87,014	-5,801	-6.3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52,778	62,778	58,728	-4,050	-6.5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	80,129	110,129	89,128	-21,001	-19.1
청정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	100,742	110,742	128,362	17,620	15.9
지식서비스-USN산업원천기술개발	60,969	60,969	68,469	7,500	12.3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100,256	130,256	121,856	-8,400	-6.4
합 계	530,789	660,789	642,087	-18,702	-2.8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지식경제부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연구가 개시되는 시점에 사업자에게 해당연도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 지식경제부는 연구 개시 시점에 연구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동 규정은 연구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연구비를 분할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연구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 보다는 연구의 추진 상황에 따라 연구비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기를 월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제가 6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음

○ 연구 협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2010년도 협약에 의한 연구비의 대부분은 2011년에 실집행이 이루어지게 됨

❑ 2011년에 실집행될 금액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협약기간이 연도말에 걸쳐있는 계속과제는 연도말까지의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차차년도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차차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미비

❑ 온라인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임

○ 2009년도 추경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각각 250억원이 지원된 사업의 후속 사업임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9 예산(A)	2010 예산안(B)	증 감	
			(B-A)	(B-A)/A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	-	200	200	순증
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	-	200	200	순증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2009년도 추경에 교과부의 KAIST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2009년 말까지 원천기술 개발 중

❑ KAIST는 제품화·상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후속사업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1. 전력부하관리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필요성

❑ 전력부하관리사업은 2010년에 685억 6,5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

❑ 전력부하관리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용의 5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발전시설 투자는 첨두부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력부하관리를 통하여 발전자회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투자비용을 낮추고 기존 설비의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 6개 발전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고,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이므로 전력부하관리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 귀속

❑ 공익적 부담금으로 전력부하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과 우리나라는 전력산업 경쟁체제가 다름

  ○ 미국, 영국, 일본의 전력시장은 경쟁이 도입되어 다수의 전력사업자가 경쟁하는 체계로, 송전과 판매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가 2008년 전체 발전량의 93.5%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름

12.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기기 지원단가 조정 필요

❑ 전력효율향상사업의 2010년 예산안은 616억 2,000만원임. 특히 LED 조명기기 보급 예산이 347억 1,000만원으로 285.7% 증가

❑ LED 조명기기의 절감전력 대비 지원단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LED 조명기기 지원단가를 낮추고 관련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

○ 2010년 보급대상으로 포함된 기기 가운데 에너지 복지를 제외한 기기들의 절감전력당 지원단가를 비교해 보면, LED 유도등의 경우 절감전력당 지원단가가 인버터의 26.7배(2010년 지원단가 조정 시 53.3배), 변압기의 8배이고, LED 조명등의 경우에도 인버터의 4.6배(2010년 지원단가 조정 시 9.2배), 변압기의 1.4배임

고효율 기기 절감전력 kW당 지원단가

품 목	절감전력/개	지원단가/개	지원금/kW	비 고
LED유도등	0.003kW	12,000원	400만원	12,000원/0.003kW
LED조명등	0.050kW	34,500원	69만원	34,500원/0.050kW
안정기	0.027kW	2,175원	8만원	2,175원/0.027kW
인버터 (37kW 기준)	12.6kW	1,887,000원	15만원	1,887,000/12.6kW
변압기 (750kVA 기준)	3.8kW	1,900,000원	50만원	1,900,000/3.8kW

주: 인버터의 경우 지원금을 2010년부터 15만원/kW에서 7.5만원/kW로 축소할 계획임
자료: 지식경제부

○ 정부 예산안 산정 시 12만원이었던 LED 조명기기 가격이 2009년 10월말 현재 64,50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LED 조명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지원단가 조정 필요

13. 철도공사의 흑자전환에 따라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은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자동화·현대화 비용을 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억원임(지원비율 국고 100%)

❑ 철도공사의 경영실적 추이를 보면 공사출범 초기인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각각 6,062억원, 5,2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2007년에 1,333억원 흑자로 전환되었고 '08년에 5,1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1조 620억원의 흑자가 추정되고 향후에도 흑자경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용산역세권 개발로 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9조 2,208억원이 2015년까지 9년에 걸쳐 분납이 될 예정인 바,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한국철도공사의 당기순이익 추이(2005~2009년)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획	추정
당기순이익	-6,062	-5,260	1,333	5,140	9,040	10,620

자료: 한국철도공사, 2009. 10

❑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개발, 자산매각 등 지속적인 자구개선 노력에 따라 흑자경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재정으로 철도공사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철도공사의 흑자 확대를 감안하여 향후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적정규모로 축소조정 되어야 할 것임. 동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미확정에 따른 연례적인 사업지연

❑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은 원주~강릉간(120.0km)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260억원임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7년 5.2%, 2008년 0.0%, 2009년 9월말 현재 0.7%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

최근 3년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전년이월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07	10,000	-	(-9,482)	518	518	5.2
2008	1,000	-	(-1,000)	-	-	-
2009.9월말	20,000	-	-	20,000	145	0.7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동 사업은 2009년 10월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방식(민자 또는 재정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 향후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추진방식이 재정사업으로 결정시 노반실시설계 착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대규모 이월이 불가피하고, 민자사업으로 결정시 사업추진절차상 금년 내 집행소요가 없으므로 타 사업비로 조정하여 집행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추진방식(민자 또는 재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실시설계비 260억원이 계상되었음

○ 향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동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260억원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감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09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추진 절차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민자협상에 1년 이상 소요되므로 2010년도에 집행소요가 없고,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2009년도 실시설계비 이월예상액을 감안하여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국가하천정비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 예산안 편성상 문제점

❑ 국토해양부 소관 2010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227.4% 증가한 3조 7,350억원이며,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320.7% 증가한 3조 5,000억원임

○ 정부의 재정투자와 별도로 2010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도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2010년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총 6조 7,000억원임

❑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202.9% 증가한 5조 3,333억원임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3조 5,8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66억원, 환경부 1조 2,8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4억원 등을 합한 총 5조 3,333억원임

2010년 부처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국토해양부	8,320	35,800	27,480	330.3
농림수산식품부	460	4,566	4,106	892.6
환경부	8,830	12,873	4,043	45.8
문화체육관광부	-	94	순증	-
합 계	17,610	53,333	35,723	202.9

자료: 각 부처 제공자료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SOC로 분류하여 2010년 예산안을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 예산안 3조 5,000억원만으로 선정하고 있음

❑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의 포괄적 예산편성 문제

○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만으로는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별도로 4대강 살리기 사업만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생태하천정비 사업과 자전거도로 사업은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사업의 근거법률 조항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의 문제점

❑ 2010년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일반회계에서 800억원이 신규 편성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8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예정임

○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공사의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줄 계획임

○ 2010년 동 사업의 이자비용은 동 공사의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3조 2,000억원에 대한 연평균 공사채 이자비용(5.2%)으로 산출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현재 부채비율이 28.3%로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에는 부채비율 138.5%로 증가될 것 예상됨

○ 2008년 공기업 전체 부채비율 평균이 133.3%임을 감안하면, 2010년 이자비용 지원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자지원 기간 및 출자액 규모에 대한 계획미비 문제

○ 정부는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금융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출자 기간에 관한 계획이 미비함

○ 또한, 공사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연도별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총 출자 금액에 대한 계획도 미비함

❑ 동 사업을 통해 공사가 조달할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이 정부에 전가되어, 공사의 적극적인 수변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노력의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이자비용 지원보다는 공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유인구조 마련이 필요함

17.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확대에 따른 주거관련 예산 배분 문제

❑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국민주택기금지원 사업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42.6% 증가한 8조 8,119억원임

○ 국민임대주택 사업 3조 9,984억원, 영구임대주택 사업 3,119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2조 2,277억원, 분양주택 사업 2조 2,739억원임

❑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2009~2018년까지 150만호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임

○ 국민임대주택 40만호, 영구임대주택 10만호, 10년 공공임대주택(지분형 임대주택 포함) 20만호, 전세임대주택 10만호, 공공분양주택 70만호 등

❑ 분양주택지원 사업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년대비 57.9% 증가한 2조 2,739억원이 편성됨

❑ 분양주택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문제

○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전체에서 차지하는 2010년 분양주택 사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8.2%가 되었고, 반면 수요자융자사업은 전년대비 9.5%p 감소한 20.5%임

○ 사업효과의 즉시성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분양주택지원 사업 확대보다는 임대주택이나 수요자융자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함

국민주택기금 사업 중 분양주택 사업과 수요자융자 사업의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계획액	비중	기금안	비중
분양주택 사업	14,400	6.0	22,739	8.2
수요자융자 사업	71,780	30.0	56,977	20.5
국민주택기금 전체	239,720	100.0	277,474	100.0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개요」(2009.10)를 기초로 재구성

❑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청약과열문제

○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사업대상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청약과열과 사업수혜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분양주택 사업의 확대시행은 기존의 주거관련 재원 배분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은 주택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 적정 공급량만을 고려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회】

1.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사업의 확대규모 억제 필요

❑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350억원 편성

❑ 입학사정관제는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세 번째 적용되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신분보장 및 근무여건 등 기반조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2009학년도 모집인원 4,476명에 비해 4배가 넘는 19,825명을 선발
- ○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충실화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실태 전반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착할 수 없어, 관련 사교육 시장만 팽창하는 상황임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대입전형 현황 비교

연 도	예 산	지원대학	사정관수(정규/비정규)	비정규직 비율	학생선발수
2008학년도	20억원	10개교	42명 (3/39)	92.9%	254명
2009학년도	157억원	40개교	218명 (17/201)	92.2%	4,476명
2010학년도	236억원	47개교	346명 (68/278)	80.3%	19,825명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

❑ 2010년도 예산 증액은 주로 선도대학 수(15개교→20개교) 증가와 선도학교별 평균 지원금(9억원→12억원) 증액에 따른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함

- ○ 특히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2009학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 입학사정관제의 근무여건과 사회적 신뢰를 개선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화를 먼저 지원해야 함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내역 조정 필요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이하 ‘WCU사업’)은 연구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년도 예산안은 WCU사업(일반회계) 40억원 증액, 지방WCU사업(광특회계) 39억원 감액으로, 2009년 대비 1억원 증가한, 1601억원으로 편성

❑ 2008년 6월 최초 공고 후 동년 12월에야 1차 사업연도(2008.12~2009.10.1)가 시작되어, 2010년도 예산은 3차 사업연도(2010.10~2011.8)분으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10개월 가량 계속 불일치함

○ 현재 교과부 계획상으로는 연도별 성과분석에 불과 1개월 내외만이 소요되는데, 현재 1차 사업연도 성과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임

○ 3~5년별 연구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해외학자와의 계약기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2013년도 사업종료 시점까지의 사업비는 보장하는 형식으로 예산안 조정 필요함

○ WCU사업 외에도,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이 사업 준비 기간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동 사업은 장기적 연구역량 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5~10년 내에 두드러진 업적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소장학자를 집중 유치할 필요성 존재함[9)]

❑ WCU사업 유형 3(세계적 석학 비전일제 초빙)의 경우 교과부 및 타부처의 각종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과 통합 필요성 검토 요구됨

○ 3가지 과제 유형을 WCU사업 취지 달성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 필요

9) 해외학자 총 345명 중 60세 이상이 118명인데, 명성이 높은 학자들을 유치하는 것은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해외학자 유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3.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의 확대규모 및 사업방향 검토

❑ 동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예산(304억 1,300만원) 대비 73.1% 증가한 52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함

○ '정부초청장학생교류'를 '외국인 장기학위 프로그램'으로, 기존 '국비유학생선발파견'을 '내국인 장기학위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신규 선발 인원을 확대

○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 등 3개 신규사업을 편성한 뒤 내외국인 대학생 유학 및 교류사업을 "Global Korea Scholarship"(이하 'GKS사업')으로 확대·개편

❑ 선발 및 관리 목표인원이 2009년 대비 1,957명(67.6%)이 증가한 4,853명이며, 특히 GKS사업은 1,757명이 증가한 3,885명을 선발 혹은 관리해야 함

○ 2009년도에 비해 목표인원을 증가시킨 정도가 과다하여, 과거 외국인 유치 관련사업의 관리미흡이 지적된 것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신규선발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유학생 관리와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관리 노력을 강화하며, 자비 유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생각됨

❑ 신규내역은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 '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 지원사업', '외국인 현직리더 지원사업' 3가지인데, 지원 필요성과 사업 설계를 검토할 필요성 존재

○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은 내년 3월 학생선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취지에 맞는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준비할 필요 있음

○ 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 지원사업은 현재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학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생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외국인 현직리더 지원사업은 사업방향을 명확히 하고, 타 부처 개도국 리더 연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의 기술료 수입 저조 등

❑ 동 사업은 기술개발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실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매년 이월이 발생

○ 사업의 내용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와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실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기술지원사업에서는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기한도래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평균 72.3%로 저조

○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시 업체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술개발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이 징수된 기술료를 국고로 귀속하는 사업수행체계임을 감안할 때, 기술료 수납실적의 저조는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술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콘텐츠 및 SW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 R&D의 별도 수행 필요성에 의문

○ 서비스 R&D는 개별 콘텐츠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닌 업무 추진 프로세스 등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개선을 의미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자적인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진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

5. 문화재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과다

❑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내역을 보면, 총 1,034억 2,800만원의 수입액 중 민간출연금 20억원, 기타잡수입 40억원 등 80억원을 제외한 974억 2,800만원이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의 전입금으로 구성

○ 동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간출연금이나 입장료수입과 같은 소규모 지원 외에도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 복권기금을 제외한 2010년도 총지출액의 91.1%가 일반회계로 충당

6.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

❑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2010년 예산안은 각각 2009년 본예산 대비 0.1% 증가한 2조 4,492억원 및 2009년 본예산 대비 14.1% 감소한 5,628억원으로 편성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정책변수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2009년 1분기 대비 2009년 2분기 평균소득 증가율인 2.9%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하여 0.5%p를 삭감한 2.4%를 적용

○ 그러나 2009년 2분기 소득인정액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가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가구별 소득인정액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생계급여예산과 주거급여예산을 추정할 경우 생계급여예산과 주거급여예산은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 내포

❑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르는 재정절감액과 예비비 예산안 산출근거가 매우 불확실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출 효율화)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1,505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추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증가율 2%에 상당하는 예산액(35,500백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반영

7.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과소계상 가능성

❑ 2010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7% 증가한 5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빈곤층 대량발생으로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실직자가구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한 2009년 추경예산과 비교할 경우 65.5% 감소

❑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2009. 5. 28)에 의해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이 신설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

○ 또한 2009년 상반기의 동 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지원건수와 지원인원수에서 2008년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으나,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음

❑ 따라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이런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로 인한 지원건수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내년도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홍보강화로 인해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을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

8. 부부공동수급률 실적치 미반영으로 기초노령연금예산 과다계상

❑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39억원(10.3%)이 증가한 2조 7,236억원으로 편성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하여, 2010년 전체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법정급여사업임

❑ 정부는 부부공동수급율(35%)의 경우 2008년 12월 기준 실적치를 반영하였으나, 2009년 들어서 평균 38% 정도의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예산의 과소계상 원인이 부부공동수급율이 부정확하게 예측되어 이 변수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 따라서 2010년 동 급여사업의 예산안에서 2009년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인 38%를 적용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176억원 정도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부부공동 연금수급자의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 감액지급 받는 대상자그룹에서의 수급율(64%)이 전액지급 대상자그룹(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액대상자의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38%)와 감액대상자의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64%)를 각각 적용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186억원 정도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9.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

❑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2010년도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인 326,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2010년 7월 시행예정으로 6개월분 연금액인 1,519억원으로 편성

❑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은 2009년 국회에 제출될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나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될 동 법률안은 합의해야 할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장애를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간주한다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대략적인 지급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 필요

○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지급대상을 명시하다보니, 지급대상 집단에서 차상위 이상의 65세 이상 중증노인과 같이 전혀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

○ 법률안이 내년 7월 이전에 통과하더라도 2010년 예산안에서 가정한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

○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가급여 지급 검토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부가급여 경과규정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노인과 법 통과 이후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하락한 65세 이상 중증노인과의 형평성에서 문제 발생

○ 동 법률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필요

10.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한적 심의 문제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조원을 초과하지만, 지원액 편성의 근거가 되는 보험료 예상수익액 등에 대한 국회심사가 제한되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괄되어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정제도적 정비 필요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또는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원금의 편성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보험료율은 예상치로, 실제 차년도 보험료수입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이후에 결정되어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11.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과다 추계

❑ 출산율감소로 인한 대상아동인구의 감소, 보육시설 미이용율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지원대상자수는 감소해야 함에도 2009년에 추계한 지원대상자수를 그대로 적용시켜 예산이 과다 편성됨

○ 지원대상자 11만 4천명에 대해 657억원 편성하였으나, 통계청의 2010년도 추계인구에 따른 인구수 감소, 정부의 보육시설미이용율 추계에 따른 미이용율 감소 등을 반영하면 지원대상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의 일부 삭감 필요

12.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의 이관 부적절

❑ 일반회계에서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된 난임부부지원 운영과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의 사용목적에 부적합

○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목적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진으로 건강관리사업,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등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함

13.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비체계성

❑ 물산업 전문인력의 육성과 상수도기자재 품질제고를 통해 물산업의 선진화와 수출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2010년 25억원을 지원할 예정

○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2007년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

서 제시한 상수도서비스 평가체계구축, 기술고도화 및 연관산업 육성,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

- 2007년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서 제시한 행정구역 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상수도사업방식의 전환과 지자체 및 공기업 중심에서 지자체 연계, 민간위탁 등 사업 및 관리 주체 전환방안 등은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경영개선사업이 추진되었음

2010년도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수도용자재 및 제품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	500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	1,000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700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	317
합 계	2,517

자료: 환경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 10

❑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수도용 자재 및 제품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사업과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만을 연관사업으로 인정하고 조속히 물산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강화에 따라 화학물질 생태독성 시험 및 위해성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국제환경협상이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기업, 연구소 등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물산업과 관련성이 적음

14.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 저조

❑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의 2010년 예산안은 전년 1,732억원 대비 13.1% 증가한 1,959억원으로 편성

2010년도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173,233	195,945	22,712	13.1

자료: 환경부,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9. 10.

❑ 지방상수도경영개선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을 포함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수돗물 공급사업의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282억원에 대비하여 8.3% 증액된 3,55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증액편성은 기존 시설의 가동률 부진문제를 고려할 때, 예산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공단 및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체 수와 발생 오·폐수량을 정확히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더불어 예산안 규모의 재조정이 요구됨

  ○ 2008년 현재 운영 중인 60개 공단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오·폐수 유입률은 평균 59.3%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공단폐수처리시설의 36.7%에 해당하는 22개 시설의 가동률은 시설용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공단지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전체 76개 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실제 오·폐수 유입률은 40.5%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1개 시설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15. 하수도사업 예산지원의 지역간 격차

❑ 전년대비 15.4% 증액된 1조 8,893억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2010년 하수도사업의 지자체별 재원배분계획을 2009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경우 아직 보급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감액지원이 예정되고,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이미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는 실정에 대폭 증액지원이 예정되어 설득력이 떨어짐

○ 하수도보급률이 90%가 넘는 대구, 광주, 대전은 각각 전년대비 174.8%, 357.7%, 582.1% 증액 편성된 반면, 보급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는 전라북도와 제주도의 경우 2009년에 비하여 각각 29.8%와 35.5% 감액된 국고지원이 예정

○ 2010년 지자체별 재원배분은 2006년부터 기존 도시지역과 공업단지 중심의 하수도사업지원에서 하수도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면단위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투자를 늘려왔던 정부 정책방향과도 부합하기 어려움

2009~2010년간 하수도사업 예산의 지자체별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하수도보급률	2009(A)	2010안(B)	증감률(B-A)	증감률
부 산	99.0	22,661	20,102	-2,559	-11.3
대 구	97.5	25,581	70,295	44,714	174.8
인 천	90.6	21,034	15,492	-5,542	-26.3
광 주	98.0	8,069	36,928	28,859	357.7
대 전	96.1	3,957	26,992	23,035	582.1
울 산	92.2	17,349	16,205	-1,144	-6.6
경 기	85.8	409,513	363,913	-45,600	-11.1
강 원	75.3	231,888	198,978	-32,910	-14.2
충 북	76.8	106,483	139,751	33,268	31.2
충 남	59.0	172,420	193,108	20,688	12.0
전 북	74.7	142,049	99,671	-42,378	-29.8
전 남	63.3	205,867	194,310	-11,557	-5.6
경 북	68.8	241,945	242,825	880	0.4
경 남	80.9	241,759	242,068	309	0.1
제 주	79.1	44,421	28,671	-15,750	-35.5
전 국	87.1	1,894,996	1,889,309	-5,687	-0.3

주: 서울지역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보조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9. 10

❑ 이러한 2010년 하수도사업 국고지원의 지역간 배분계획은 '4대강 살리기사업' 중 수질개선사업의 투자방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과 같은 '4대강 살리기사업' 직접연계사업의 지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4대강 중점권역에 전체사업비의 55.6%,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78.6%가 지원될 예정임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각각의 신규사업비 중 86.1%, 79.9%, 69.5%가 4대강 중점권역에 지원되고, 댐상류하수도시설설치사업 계속사업비 91.7%가 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

4대강 직접연계 하수도사업 예산안의 지역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

		중점지역(A)	기타지역(B)	합 계(C)	비율(A/C)
하수처리장확충	계속	161,396	256,868	418,264	38.6
	신규	44,338	7,153	51,491	86.1
	계	205,734	264,021	469,755	43.8
하수관거정비	계속	271,174	273,924	545,098	49.7
	신규	68,124	17,164	85,288	79.9
	계	339,298	291,088	630,386	53.8
댐상류하수도시설	계속	173,516	15,700	189,216	91.7
	신규	-	-	-	-
	계	173,516	15,700	189,216	91.7
농어촌마을하수도	계속	32,608	44,981	77,589	42.0
	신규	13,727	6,033	19,760	69.5
	계	46,335	51,014	97,349	47.6
면단위하수처리장	계속	55,718	30,134	85,852	64.9
	신규	2,668	4,747	7,415	36.0
	계	58,386	34,881	93,267	62.6
합 계	계속	694,412	621,607	1,316,019	52.8
	신규	128,857	35,097	163,954	78.6
	계	823,269	656,704	1,479,973	55.6

주: 하수처리장확충사업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인 중점권역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40억원은 미포함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9. 10

○ 직접연계사업 국고지원 계획이 4대강 중점권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점지역을 다시 지자체별로 확인하면 대구, 광주, 대전에 있어서 이들 5개 직접연계사업에 전년대비 각각 189.7%, 394%, 647.2% 증액지원이 예정되고, 반대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강원,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은 감액 지원이 계획되어 있음

4대강 직접연계 하수도사업 예산안의 지자체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부 산	중점	5,084	3,852	-1,232	
	기타	13,385	11,553	-1,832	
	계	18,469	15,405	-3,064	-16.6
대 구	중점	23,443	67,917	44,474	
	기타	-	-	-	
	계	23,443	67,917	44,474	189.7
인 천	중점	-	-	-	
	기타	18,390	13,000	-5,390	
	계	18,390	13,000	-5,390	-29.3
광 주	중점	7,420	36,658	29,238	
	기타	-	-	-	
	계	7,420	36,658	29,238	394.0
대 전	중점	3,440	25,705	22,265	
	기타	-	-	-	
	계	3,440	25,705	22,265	647.2
울 산	중점	-	-	-	
	기타	17,349	16,205	-1,144	
	계	17,349	16,205	-1,144	-6.6
경 기	중점	114,205	222,446	108,241	
	기타	276,844	119,826	-157,018	
	계	391,049	342,272	-48,777	-12.5
강 원	중점	140,715	131,440	-9,275	
	기타	70,831	49,751	-21,080	
	계	211,546	181,191	-30,355	-14.3

	구분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충 북	중점	91,606	120,997	29,391	
	기타	9,196	9,437	241	
	계	100,802	130,434	29,632	29.4
충 남	중점	65,324	109,670	44,346	
	기타	100,375	67,449	-32,926	
	계	165,699	177,119	11,420	6.9
전 북	중점	8,034	3,281	-4,753	
	기타	112,326	71,584	-40,742	
	계	120,360	74,865	-45,495	-37.8
전 남	중점	32,900	47,730	14,830	
	기타	144,931	107,891	-37,040	
	계	177,831	155,621	-22,210	-12.5
경 북	중점	58,023	110,261	52,238	
	기타	153,819	91,922	-61,897	
	계	211,842	202,183	-9,659	-4.6
경 남	중점	102,582	137,316	34,734	
	기타	113,493	71,763	-41,730	
	계	216,075	209,079	-6,996	-3.2
제 주	중점	-	-	-	
	기타	41,812	26,323	-15,489	
	계	41,812	26,323	-15,489	-37.0
전 국	중점	652,776	1,017,273	364,497	
	기타	1,072,751	656,704	-416,047	
	계	1,725,527	1,673,977	-51,550	-3.0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9. 10

❑ 2010년 하수도사업 예산안의 지자체별 국고지원계획은 중점권역 집중투자라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수질개선사업 투자방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반영은 보급률 향상으로 하수도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하수도사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재조정이 요구됨

○ 4대강 중점권역 중심의 지자체별 지원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하수도사업 예산안 편성에서 배려가 적었던 지자체의 실정을 재고하여 하수도사업 예산안의 지역간 배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4대강 수계기금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출규모는 전년도 8,451억원에 비하여 6.6%가 감소된 7,89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년대비 5.4% 그리고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사업비를 30.6%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임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9(A)	2010안(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845,066	789,452	-55,614	-6.6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132,518	125,337	-7,181	-5.4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300,995	327,978	26,983	9.0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281,718	195,567	-86,151	-30.6
오염총량관리	10,086	16,965	6,879	68.2
기타수질개선사업	58,986	62,593	3,607	6.1
기금운영비	12,373	12,428	55	0.4
여유자금운용	48,390	48,584	194	0.4
[수계별]				
한 강	487,381	419,352	-68,029	14.0
낙동강	196,943	196,049	-894	0.5
금 강	89,450	101,281	11,831	13.2
영산강	71,292	72,770	1,478	2.1

자료: 환경부,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09. 10.

❑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5.4% 감소한 1,253억원으로 편성됨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편성규모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주민지원사업]				
한 강	73,459	66,087	-7,372	-10.0
낙동강	26,962	27,264	302	1.1
금 강	18,097	18,125	28	0.2
영산강	14,000	13,861	-139	-1.0
합 계	132,518	125,337	-7,181	-5.4

자료: 환경부, 「2010년도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09. 10

❑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규제지역의 종류(규제의 정도), 면적,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3-2009년간 인구 및 규제지역 면적변화 추이를 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는 그 간의 인구 및 규제면적 변화를 고려하여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음

○ 2003-2009년간 규제지역 면적은 23.9%가 증가하고 대상인구수는 71.1% 감소하였음에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단지 2.3%의 변동이 있었을 뿐임

○ 주민지원사업비 규모산정의 근원적 문제는, 각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연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이 규모 안에서 각 수계의 주민지원 해당지역 지원비를 규제면적과 해당인구수를 바탕으로 배분하는데 있음

– 각 수계에서 발생한 규제면적 변화와 지원대상 인구수 변동이 매년 수계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비 총 규모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0년도 상수원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지원 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의 경우 수계기금 전체 지출규모의 21.7%인 1,713억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 편성되었고, 운영비 지원의 경우 기금 전체지출액의 19.8%인 1,567억원으로 전년대비 12.2%가 증액되었음

2010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한 강	환경기초시설설치	81,137	98,834	17,697	21.8
	환경기초시설운영	78,225	82,136	3,911	5.0
낙동강	환경기초시설설치	45,669	39,856	-5,813	-12.7
	환경기초시설운영	44,873	55,969	11,096	24.7
금 강	환경기초시설설치	30,809	32,101	1,292	4.2
	환경기초시설운영	13,824	15,617	1,793	13.0
영산강	환경기초시설설치	3,739	507	-3,232	-86.4
	환경기초시설운영	2,719	2,958	239	8.8
합 계	환경기초시설설치	161,354	171,298	9,944	6.2
	환경기초시설운영	139,641	156,680	17,039	12.2

자료: 환경부, 「2010년도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09. 10

❑ 현행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방식은 환경기초시설별 기준 운영비에 지역의 규제정도를 감안한 방식을 통해 산정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록 운영비 지원자체를 중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수질개선 노력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산출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

– 원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에 따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의 설치는

하수도요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는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은 '환경편익제공자 보상 원칙(Provider Get Principle 또는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이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상수원지역의 토지이용규제와 각종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지역 주민지원과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어지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음

○ 수계관리기금의 수입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운용도 환경편익제공자 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징수와 배분이 제약받으며, 동시에 수질개선활동의 실적과 징수규모와는 밀접한 상호연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물이용부담금 운용원칙을 고려하면 수계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도입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류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증가에 부응하여 상류지역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사업의 집행실적이나 수질개선 효과가 미진할 때에는 인위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조정하고 수입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수계관리기금은 1년 이상 장기운용을 위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단기자금으로써 여유자금의 발생 자체는 곧 각종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불용을 의미하는 측면이 큼

– 실제로 2009년 여유자금 설치의 계기는 2007년 한강수계에서 토지매수사업의 집행실적부진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과 더불어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증가로 결산잉여금 수입이 증가한데 있음

17.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저조 및 사업계획 미비

-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474억원)의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범위 축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 감액 조정 필요
- ❑ 기업전직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10억원)의 경우, 기존의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와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대상(중소기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선도기업육성사업(14억원)은 2008년에 신규로 추진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사업」의 실적저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사업설계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실적 저조가 재현될 우려 있으므로,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
-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57억원) 중 '해외취업프로그램'은 사업추진 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0년도 훈련인원(250명)을 축소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 유사사업인 고령자가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금격차를 감내하고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 수요와 고령자에게 걸 맞는 직위를 제공하는 구인처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1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취약성

- ❑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사업'의 2010년 예산안은 전년도 112억원 대비 76.1%가 증액된 19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010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000	12,856	8,856	221.6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2,993	6,841	3,848	128.6
청년여성 직업훈련	2,431	-	-2,431	순감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	260	-	-260	순감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설치·운영	1,500	-	-1,500	순감
합 계	11,184	19,697	8,513	76.1

자료: 여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09. 10

○ 전년대비 동 사업 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첫째, 기존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사업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운영사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흡수·통합된데 있음

○ 또한 2009년까지 경력단절여성만이 아니라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으나,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지원에 특화하기 위하여 기존 청년여성 직업훈련사업을 노동부로 이관한데 다른 특징이 있음

❑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과연 1-3개월의 단기간에 걸친 직업교육으로 경력단절여성이 교육받은 직종에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취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과정당 실제 취업실적을 반영하여 과정수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특히 취업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정은 과정 수를 줄이고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08년의 경우 여성지역특화 및 지역 산업체 수요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학력과정과 고급 IT 및 비전통적 여성진출 직종교육을 받은 전문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이 각각 59.8%와 63.3%로 일반과정 수료자의 취업률 7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설계사제도, 주부인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서비스 등은 2009년 신규사업인 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판단될 때까지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편성하기 보다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취업설계사운영’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이들의 자격기준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이들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실제적 평가가 결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취업설계사운영 예산안은 지원단가의 인상과 더불어 센터당 운영인원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주부인턴제 운영’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동 사업의 취지가 단순한 사업체의 주부인턴 채용인원 증가가 아니라 인턴과정을 통해 직장생활을 경험한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력을 높이는데 있음으로, 주부인턴을 경험한 취업여성의 직장적응 정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반영하여 주부인턴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인원을 결정해야 할 것

  – 주부인턴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알선을 통해 주부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체에 인턴 1인당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동 사업을 위하여 55억원을 지원할 계획

○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2009년 실제 사업내용이 일/가정 양립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거나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 일과 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결여된 상황

  – 2010년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스템구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이라는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바, 동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0년 일/가정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행 정】

1. 갱생보호사업 : 복지예산의 또다른 사각지대

- ❑ 2010 예산안 : 73억 6,100만원(전년 대비 3.8% 증)
- ❑ 갱생보호대상자는 복지제도의 또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차별과 무관심속에 사실상 방치된 서민들로서 재소자·병사 등과 급량비를 비교시 정부 전체 1일 식대 단가 중 가장 낮은 3,200원임
- ❑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사업은 성인지적 예산관점에서 여성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옴부즈만으로부터 최우수 인권신장 사례로 평가(2005. 법무부)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단위위탁사업별 우수사업 선정(2006. 여성부)된 사업이나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중단 위기
- ❑ 갱생보호사업중 주거지원사업 : 영세민 등 일반 저소득층의 총 주거지원 기간은 10년인데 비하여 갱생보호대상자는 4년에 불과
- ❑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 혜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 과중
- ❑ 타 복지사업의 민간법인은 보조율이 70%정도인 반면, 갱생보호 민간법인의 보조율은 30%에 불과

2.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국가책임 미흡

- ❑ 2010 예산안 : 82억 4,800만원(전년 대비 90.2% 증)
-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안은 범죄자 지원 예산안(2010년도 : 2,283억원)의 3.6%에 불과

- ❑ 주요국의 범죄피해자 예산제도를 보면, 미국(1,305백만달러, 2005)·네덜란드(1,200만유로, 2008)·독일(민간 2,700억원, 2006) 등은 원인자부담원칙하에 벌금 등을 주재원으로 기금을 설치·운용
- ❑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금(최근 3년간 평균 1조 5,000억원) 등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3.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 ❑ 2010 예산안 : 7,215억 3,200만원(전년 대비 2.1% 증)
- ❑ 「국가재정법」 제21조 및 제31조에 의해 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만 예산안을 독립편성 하지 않고 법무부에 통합편성하고 있음
- ❑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및 책임행정 구현이 어렵다는 점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점 등을 법무부에 통합편성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음
- ❑ 대통령령인 동직제가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는 없음
- ❑ 검찰청소관 예산상의 문제점을 중앙관서의 장인 당해 기관장에게 직접 물을 수 없는 등 책임성 확보 미흡

4.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부처 간 조정미흡으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

- ❑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사업' 예산안 : 22억원 (전년대비 22.2% 증액)
- ❑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여 기록·유지관리·보고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로서,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시스템
- ❑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간의 업무조정 및 주관부처 지정이 지연되면서, 2009년도 예산액 18억원은 10월 현재 전액 미집행 상태
- ❑ 국무총리실 및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물론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주관부처 조정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음

5. 금융위원회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간의 유사·중복

- ❑ 금융위원회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신청대상 및 주택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통합운용 필요
  - ○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
- ❑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서는 2009년까지 공급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통합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

○ 2010년부터 모기지론 이차보전(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수요를 국민주택기금에서 흡수하고, 2010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예상 취급분(2,000억원)에 해당하는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 930백만원은 감액 필요

6. 금융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사업

❑ 2010년도 정책연구개발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100백만원 증액된 60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면 증액편성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 2008년도에 예산현액 630백만원의 56.8%인 358백만원이 집행되어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2010년에는 '녹색금융' 사업에도 200백만원의 연구용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7.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 규모 축소 검토

❑ 예보채상환기금은 주요 수입을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므로 지출 수준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수입 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 운용을 최소화할 필요

❑ 예보채상환기금의 운용 특성 및 효율성을 볼 때, 2010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 4조 1,832억원은 다소 과다한 측면

❑ 과다한 여유자금을 줄이기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규모를 최대 1조 5,0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 다만, 2010년 우리금융지주 주식 약 1조 4,000억원의 매각이 차질을 빚어 매각수입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면 채권 발행규모 축소분은 최대 1조 5,000억원에서 줄어들 필요

8. 구조조정기금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정리 사업 감액 검토

❑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정리 사업은 2009년 9월말 현재 총 20조원의 계획 중 4.1%인 8,146억원만을 집행하여 실적이 부진

❑ 2010년 경제상황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20조원인 2010년도 계획액을 전반적으로 감액할 필요

  ○ 2009년 집행실적과 2010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2010년도 금융 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 17.5조원과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 2.5조원 역시 계획액 대비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9. 외교통상부 외화예산안의 환차익 310억원 발생 전망

❑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환율은 1,230원인데 국회예산처의 2010년도 환율 전망치는 1,186원으로서 약 44원의 차이가 있으며, 1,186억원 환율을 가정할 경우 약 310억원의 환차익 발생 가능

10.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출연금 400억원 과다 이월 우려

❑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 2010년도 예산안 : 400억원(전년 동일)

❑ 2009년 초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이후 사업전략 마련 등이 지연되면서, 2009년 10월 현재 개도국 지원 사업비 326억원이 미집행상태이고 전액 2010년도로 이월될 것이 예상됨

❑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이 지연되면 2010년도 사업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010년도 예산안도 과다 이월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안 조정방안 검토 필요

11. 외교통상부 신규사업(10개, 187억원 편성) 중 시급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재검토 필요

❑ 2010년도 예산안 중 10개 신규사업에 총 187억원 편성

❑ 어려운 세입사정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적자성 채무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의 예산안 재검토 필요

❑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사업'(6억원),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11.4억원), '우리외교를 빛낸 인물 선정사업'(2.1억원) 등은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고 시급성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재검토 필요

12. 북한 정세분석 관련 신규사업, 신중한 추진 필요

❑ 통일부는 2009년 5월 신설된 정세분석국 소관의 신규사업으로 5개사업 5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18.5억원)은 북한체제의 상황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사업

  ○ 지수의 산출주기 및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북한 자극 등의 부정적 영향 발생(공개 시), 국내·외 심리안정 효과의 제한(비공개 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 필요

❑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등 심층정보 수집’사업(10.5억원)은 면접·설문조사 기법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조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정보수준에 따라 탈북자 및 방북자 1인당 20~50만원)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소요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13. 2010 국방비 예산안 분석 : 불필요한 국방조직·업무 퇴출 필요

❑ 2010 국방비 예산안: 29조 6,039억원(일반회계)

❑ 국가재정 여건의 악화로 전년 대비 7.3% 국방비 증액요구가 3.8%로 조정됨

❑ 그 영향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중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연구개발,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의 예산안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는 국방개혁 2020 조정안의 방향과 배치됨

❑ 국방비 증액소요가 급증하여 국가 재정능력을 매년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국방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업무를 퇴출하여 예산부족의 문제를 완화해야 함

❑ 그 사례로,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은 방산보안 이외 방위력개선 사업분석·집행평가에 인력을 투입하고, 국방대학교는 교육관리 경험이 미흡한 5명의 장성급 현역(중장급 1명, 소장급 1명, 준장급 3명)이 주요보직을 점하며 대학원마다 각각의 교무처를 운영하고 있음. 각군은 군수정보화체계 이후에도 군수인력의 절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육군 사단들은 지난 10년간 해상침투간첩 적발건수가 0(zero)인데도 562개 해안경계초소에 연간 53만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음

14. 10대 대규모 해외획득 방위력개선사업 외화지출 축소 필요

- ❑ 2010 예산안: 2조 989억원(방위사업청 10개 해외획득 사업)
- ❑ 외화지출 중 5~10% 조정을 통해 소규모의 외화를 무이자로 지불연기함으로써, ① F-15K 2차(전투기) 299 - 597억원, ② 장보고-II(잠수함) 268 - 535억원, ③ 차기유도무기(SAM-X) 182 - 365억원, ⑤ 광개토-III급(전투함) 61 - 121억원, ⑥ 함대공유도탄(SM-II급) 53 - 105억원, ⑦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35 - 69억원, ⑧ 전자전훈련장비 27 - 54억원, ⑨ F-16전투기성능개량 19 - 38억원, 그리고 ⑩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15 - 30억원 감액 가능함 (단 ④순위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이미 50%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제외)
  - ○ 무이자 지불연기는 국내 방산업계에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의 경우 이미 20% 지불연기 동의를 받음

15. 국방비 외화예산안 환차익 1,268억원 발생 전망

- ❑ 국방 외화 예산안: 28억 7,997만달러(3조 5,423억원, 1,230원/$기준)
- ❑ 국회예산처 2010년도 전망환율 1,186원/$을 적용할 경우, 환차익은 국방부 약 418억원, 방위사업청은 84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16. 사이버사령부창설사업은 계획 및 법적 근거 미비

- ❑ 2010 예산안: 31억 3,900만원(신규: 방위사업청 30억 5,900만원, 기무사령부 8,000만원)

❑ 예산안은 동 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조직으로 두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합참에서 사이버사령부안을 새로이 기획하고 있으므로 정부 예산안은 사업계획 미비임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정부가 그 사업계획 및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수정예산안 제출의 경우만 허용됨

❑ 동 사령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17. 기무사령부 방위력개선사업 분석업무의 부적절성

❑ 2010 예산안: 6,390만 5,000원(계속사업,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 경상운영비)

❑ 기무사령부의 방산지원실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관해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방산 보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18. 음향무기(소리총) 개발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 필요

❑ 기초연구 예산안: 1억 3,200만원(2010년 종료, 이후 계획 없음)

❑ 음향무기는 시장잠재력과 군사전략전술적 효과가 큰 비살상 및 비대칭의 첨단전술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군은 관심이 거의 없음

❑ 따라서 방위사업청과 합참은 적극적인 하향식 소요기획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19.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2010 예산안 : 4,456억원(전년대비 66% 감소)
- ❑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대상 중 노령자 및 주부가 과다하고(60대 이상 48.4%, 주부 22.8%) 중도포기자가 많았으며(중도포기율 23.4%), 일부 지자체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순 취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음
- ❑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2009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음

20.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53억원 과다 편성

- ❑ 2010 예산안 : 609억 8,100만원(전년 대비 4.4%감)
-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은 도로교통공단의 세출예산소요액에서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수지차보전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계획했던 금액보다 초과 발생(2004년 37억 4,600만원, 2005년 33억 5,800만원, 2006년 68억 9,800만원, 2007년 111억 3,300만원, 2008년 156억 9,400만원)
- ❑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가 매년 초과징수되고 있고, 재회·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기타수입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계상
- ❑ 국회는 2008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예산을 최근 수납실적을 기초로 현실화시킬 것을 시정요구 한 바 있음
- ❑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자체수입 예산을 반영 53억원 조정 필요

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 규모 조정 필요

-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은 인구 30~70만 규모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9년 4월 발표한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에서 제시된 과제를 패키지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 2010 예산안 : 150억원(신규)
-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구성하는 세부과제들은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에 관련된 조치들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들임
- ❑ 경찰청은 인구규모와 도로·교통예산액이 비례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예산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나, 인구와 도로·교통예산액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방안의 세부과제들은 도시의 도로구조, 교통량,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 수 없음. 또한, 경찰청은 집행단계에서 지원 대상 도시의 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 5개 도시를 지원할 경우 선례가 되어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계속 지원요청이 제기될 우려 있음
- ❑ 비용의 산출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5개 도시를 추진하기보다는 2개 정도 도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

22. 중앙 119구조대 청사 신축사업의 예산안 조정 필요

- ❑ 소방방재청 소관 혁신도시특별회계 중앙 119구조대 청사 신축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걸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의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중앙 119구조대를 대구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임
- ❑ 2010 예산안 : 424억 5,100만원(전년 대비 372억 300만원 증액)
- ❑ 동 사업의 2009년도 예산 52억 4,800만원은 수도권의 재난 대응력 공백 우려와 신속한 국제구조 출동 장애 등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2009년도 예산의 연내 전액 집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2009년도 예산의 이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편성 원칙에 따라 건설비 159억원 감액 필요

유형별 분석

Ⅳ. 유형별 분석

1.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편성

법적근거 미비 사업(예시)

(단위: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2010(안)	법률명	비고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 편성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한국장학재단 출연	4,28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과위 계류중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2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계류중
농림수산식품부 (농특회계)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60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출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임위 계류중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31	국군조직법 등	제출예정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519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출예정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	1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8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소위 계류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가스냉방보급확대 지원	100	도시가스사업법	상임위 회부

(단위: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2010(안)	법률명	비고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미비				
국방부 (일반회계)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	1	기무사령부령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35,000	하천법	
노동부 (일반회계)	디딤돌 일자리창출	503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4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앙유보액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한국관광공사 운영비지원	33,323	한국관광공사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재외선거관리사업 (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	0.5	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3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앙유보액 예산안
환경부 (환특회계)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25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2.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편성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및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감액조정 검토 필요 사업

(단위: 억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A)	2010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운영	6	6	-	-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4	-	-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59	1,930	1,671	645.2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10	426	416	4,160.0
국방부	연합방위력증강	261	440	179	68.6
	연합토지관리계획사업	227	256	29	12.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이차보전	43	54	11	25.6
경찰청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297	297	-	-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1,210	1,250	40	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개발(보조)	19	75	56	294.7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보조)	50	50	-	-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보조)	43	51	8	18.6
	공립박물관 건립사업(보조)	155	243	88	56.8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보조)	15	24	9	60.0
	육상진흥센터 지원-대구시(보조)	90	90	-	-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경북	273	281	8	2.9
	생활체육 인프라조성	83	164	81	97.6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50	104	54	108.0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50	80	30	60.0
	경정훈련원 건립	54	115	61	113.0
농림수산식품부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40	164	124	310.0
	생산이력제도입	18	18	-	-
	광역클러스터활성화(보조)	256	322	66	25.8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보조)	676	5,651	4,975	735.9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보조)	27	28	1	3.7

(단위: 억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A)	2010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	625	625	-	-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신축	115	382	267	232.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35	36	1	2.9
	민간취업기관지원	121	304	183	151.2
	대구재활병원신축(보조)	67	293	226	337.3
	교대제전환 지원*	61	61	-	-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기금)	100	100	-	-
합 계		5,340	13,924	8,584	62.2

주: *사업은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9. 7)의 개별 사업별 분석시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3. 사업계획 미비

사업 계획 미비(예시)

(단위: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2010(안)	내 용
경찰청 (일반회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	150	예산규모 산출 근거가 부정확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30	사업계획의 중심목표가 해외진출 기업 인력양성인지, 전문대학 국제화 기반 조성인지 불명확함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순국선열위패봉안관 건립	26	유관기관인 순국선열유족회의 반대로 위패봉안관 건립부지 미확정 상태
국토해양부 (교특회계)	소사~원시 복선 전철사업	300	민자협상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연내 가능성 의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260	사업추진방식(민자 or 재정)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

(단위: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2010(안)	내 용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35,000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수자원공사지원	800	출자 기간 및 출자 규모에 대한 계획이 없음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56,977	세부사업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 등의 각각의 지원비율에 관한 사전계획이 없음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57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 수요자 및 구인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선도기업육성	14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사업의 실적저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사업설계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큰 변화 없음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이버방호 사령부창설	31	합참에서 계획 기획 중
지식경제부 (광특회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비R&D) 중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50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통일부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	8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예산 중 '북한이탈주민 연구센터 설립·운영'사업(6.5억원)의 추진계획 미비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4. 사업성과 미흡

사업성과 미흡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	2009 예산	2010 예산안	미흡 내용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21,000	26,000	일부 국립대학교 통폐합 성과가 미흡하며,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컨설팅 결과 이행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미흡함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	407	384	-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적집계에 어려움 존재하며, 실집행률의 신뢰성 매우 제한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체감만족도 100점 만점의 54.7점으로 매우 낮음 - 예산사업 원가정보 산출 불가능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문제 발생할 우려 - 정책결정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할 필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20,597	19,967	
노동부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474	474	시행령 개정(지원대상 범위 축소) 이후 집행실적 저조
	교대제전환지원금	61	61	수요급감으로 집행실적 저조
농림수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제	9,600	15,700	사업규모 확대에 비해 사업목표인 경관개선효과 감소
보건복지가족부	장사시설 설치	31,606	29,898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으로 추가적인 5%(15억 원정도) 삭감 필요
소방방재청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300	180	대부분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의 활동이 피해자 상담보다는 전문요원 자체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에 그침
외교통상부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	-	1,143	해외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2009년 10월 현재 체결된 기관은 1개에 불과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	2009 예산	2010 예산안	미흡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연구분임 운영	143	143	연구성과 관리가 미흡하고, 3~7개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분임을 구성하고, 연구분임당 운영비가 275만원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를 내기 어려움
지식경제부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 교체지원	-	30,000	정부의 투자비 대비 사회복지시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미미
	전력효율향상사업	53,980	61,620	LED 조명기기는 전력절감 대비 지원단가가 높아 전력효율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미부합
	전원개발융자사업	10,000	10,000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한전 자회사이고,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원개발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에 불과하여 사업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통일부	독일 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	846	기존의 연구결과물이 다수 있어서 연구주제의 중복 우려
	북한정세지수 개발	-	1,850	북한정세지수의 산출주기·공개여부 등과 관련하여, 북한 자극 등 부정적 영향 발생 및 사업효과 제한 우려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	6,331	8,585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연구 커뮤니티 구축 및 연구용역 추진사업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성과부진 우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	4,200	지방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고보조율 100%사업이므로 지방비 확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방비 미확보 시 센터운영 부실화 우려
환경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732	1,960	2008년 현재 운영 중인 공단 폐수처리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59.3%,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서 가동률은 40.5%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5.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예시)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010(안)	유사 중복 내용
국세청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	14	비거주형 건물에 대한 가격조사사업으로 유사
국토해양부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조사 시범사업	16	
국방부	국방대학교	242	교무업무 5개 부서(62명)가 유사중복적으로 운영
금융위원회	모기지론 이차보전	46	신청대상 및 주택의 범위가 중복(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
국토해양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국민주택기금)	56,977	
노동부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	10	전직지원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사업을 별도로 수행
	전직지원센터	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PLZ 관광활성화)	2	DMZ를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 사업으로 두 사업의 내용이 중복
	한국형 생태관광육성	51	
방위사업청	GOP과학화경계시스템	5.44	국방 과학화경계시스템 4개 사업(GOP, 탄약창, 공군기지, 주둔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국방부 2개 부서와 방위사업청으로 분산추진
보건복지가족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9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방과후 서비스 시설로 사업내용 유사중복
	방과후 보육	5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9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로바이러스검사체계확립사업	11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라는 동일한 사업을 자체사업과 용역사업으로 분리 추진
	노로바이러스안전관리(R&D)	13	
지식경제부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00	섬유분야 신뢰성 평가기반구축사업 유사중복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3,587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010(안)	유사 중복 내용
중소기업청	글로벌 브랜드 육성	7	두 사업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 중복
특허청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33	
통일부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0	통일부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여론수렴 등을 위한 '통일대화의 광장'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주평통도 232개 지역협의회에서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수렴 및 교육 기능을 수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활동지원	12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6. 의무적 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의 문제

의무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예시)

(단위: 억원)

소관	사업명	2010(안)	과다/과소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연금급여	14,239	공적연금간 연계로 인한 퇴직일시금 감소 미반영(과다편성)
국방부	퇴직급여	17,987	공적연금간 연계로 인한 퇴직일시금 감소 미반영(과다편성)
노동부	직업재활급여	87	2009. 9월말 현재 집행률 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집행률이 0.2%에 불과(과다편성)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656	출산율감소에 따른 추계인구감소, 시설미이용율 감소 등 미반영으로 지원대상아동수 과다추계(과다편성)
	생계급여	24,492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과다편성)
	주거급여	5,628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과다편성)
	기초노령연금 지급	27,236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 미반영(과다편성)
외교통상부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1)]	115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에 비하여 15%(21억원) 감액 편성(과소편성)

주: 1) 동사업은 의무적 지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7.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예시)

(단위: 억원)

소관	사업명 (근거)	2010(안)	지적사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출연	610	2008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과소편성으로 인한 출연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단의 자체수입 예산을 최근 수납실적을 기초로 현실화시킬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노동부	디딤돌 일자리창출	503	국회는 사회적일자리 중 '공익형'과 'NGO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노동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시정조치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동 사업이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는 대부분 '공익형'과 'NGO형'
방송통신 위원회	아리랑 국제방송지원	254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재원이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리랑 국제방송에만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국회 권고)
외교통상부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1,216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안의 적정계상이 2008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 2009년에도 일부 초과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경기회복으로 2010년 여권발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수준 편성 필요(국회 2008 결산 시정요구사항)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예산안 조정의견

V. 예산안 조정의견

【감 액】: 157건

1. 국무총리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1,800	2,200	◦관계부처간(환경부, 지식경제부) 업무조정 지연으로 2009년도 사업비 18억원 전액 미집행 상태(10월 현재) ◦관련사업 예산안이 환경부(38억원), 지식경제부(60억원)에 각각 편성되어 있음 ◦국무총리실 및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업무조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동 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이므로 업무조정이 지연될 경우 2010년도 예산안 집행에 차질 우려
2	녹색성장사업 추진 (일반회계)	6,384 (예산현액)	8,094	◦신규사업이지만 예비비 등으로 2009년에 6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홍보비(21억원)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부의 '국가주요정책 광고'(예산안 81억원)를 활용하여 일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국가보훈처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현충시설물 건립 (일반회계)	5,276	13,054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사업(예산안 26억원) 설계비 산정 시 적용요율을 높게 책정하여 일부(약 1.5억원) 예산 과다 반영 ◦위패봉안관은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하여 '보통의 공종'에 해당하는 설계비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지만, '복잡한 공종'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 ◦관련기관 간 협의미흡(순국선열유족회)으로 부지 확정 지연 및 착공지연 우려(공사비 10억원 편성)
2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일반회계)	-	23,500	◦일부사업(국외여비 3억원, 국외홍보비 21억원) 예산안 산정 시 환율 1,300원 적용 ◦국내홍보비(19억원)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주요정책 광고'(예산안 81억원)를 활용하여 홍보비 최소화 필요 ◦게임대회, 드라마 제작 등 일부사업 사업계획 보완 및 소요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3. 금융위원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모기지론 이차보전 (일반회계)	3,903	4,563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소관)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신청대상 및 주택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됨 ◦2010년부터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수요를 국민주택기금에서 흡수할 필요 ◦2010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예상 취급분(2,000억원)에 해당하는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 930백만원은 감액 필요(평잔 1,000억원×평균금리 0.93%)
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127	121	◦2006년 이후 집행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2006년 119백만원, 2007년 87백만원, 2008년 76백만원) ◦2008년 예산 138백만원에서 전용감액(48백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이 90백만원에 불과함 ◦2009년 예산 127백만원 중 9월말까지 40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1.4%에 불과 ◦최근 3개년 동안의 평균 집행액이 97백만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예산액을 다소 조정할 필요
3	정책연구개발 (일반회계)	500	600	◦2008년도에 예산현액 630백만원의 56.8%인 358백만원이 집행되어 부진한 실적을 보임 ◦2009년에는 9월말까지 예산액(500백만원)의 9.6%에 불과한 48백만원이 집행된 것을 보면, 연구용역발주가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0년에는 '녹색금융' 사업에도 200백만원의 연구용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2009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4	예보채상환기 금채권 발행 (예보채상환기금)	7,000,000	9,500,000	◦예보채상환기금의 운용 특성 및 효율성을 볼 때, 2010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 계획액 4조 1,832억원은 다소 과다 ◦과다한 여유자금을 줄이기 위해 2010년 9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규모를 최대 1조 5,0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다만, 2010년 우리금융지주 주식 약 1조 4,000억원의 매각이 차질을 빚어 매각수입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면 채권 발행규모 축소분은 최대 1조 5,000억원에서 줄어들 필요
5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 (구조조정기금)	20,000,000	20,000,000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정리 사업은 2009년 9월말 현재 총 20조원의 계획 중 4.1%인 8,146억원만을 집행하여 실적이 부진 ◦2009년 집행실적과 2010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2010년도 금융 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 17.5조원과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 2.5조원 역시 계획액 대비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2010년 경제상황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20조원인 2010년도 계획액을 전반적으로 감액할 필요

4. 기획재정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한국수출입은행출자 (일반회계)	300,000 (추경- 550,000)	150,000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2010년말에 증가될 여신잔액을 기준으로 한 BIS 비율을 금감원 권고수준 10%에 맞추기 위해 출자를 계획함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 역시 후순위채권 발행에 제약이 없으므로, 발행가능한 후순위채권 규모만큼 출자규모를 감액조정할 필요
2	공자기금예수금 (외평기금)	26,600,000	33,415,700	◦외평기금에서는 2010년도에 공자기금예수금원금 상환분 19.4조원을 포함 총 33.4조원(신규 14조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것으로 계획함 ◦2008년말 외평기금의 여유자금은 34.8조원으로 전년(0.6조원) 대비 약 33조원 증가하였고, 2009년말 여유자금도 예년의 1~2조원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일정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예수할 계획인데, 신규 공자기금 예수금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율간의 금리차로 인해 938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유재원을 외환매입에 우선 사용하여 2010년에 계획된 공자기금예수금 규모를 감액할 필요(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 규모를 감소시킬 필요)
3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운영,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반회계)	407 (기획단 운영) 20,597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84 (기획단 운영) 19,967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이월 및 불용 연례적 발생, 운용성과 미흡 ◦여비의 집행률은 2008년 31.9%, 2009년 8월말 20.5%로 저조하며,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여비는 2007, 2008년 2년간 1억 3,300만원 ◦운영비의 집행률은 2008년 59.9%, 2009년 8월말 47.1%로 저조하며,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운영비는 2007, 2008년 2년간 1억 9,700만원 ◦업무추진비비의 집행률은 2008년 58.0%, 2009년 8월말 61.1%로 저조하며,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운영비는 2007, 2008년 2년간 6,100만원 ◦과거 평균 불용액을 감액할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4	연구개발비 (일반회계, 복권기금)	16,846	13,792	◦집행률이 부진(3년 평균 및 2009.8월말 80% 미만)하지만, 2010예산액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거나 동액인 연구개발 사업 존재 ◦'정책품질관리 및 경제교육지원',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추진', '다문화가족지원'이 그 사례임 ◦상기 사업들의 과거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조정
5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공자기금)	1,000	34,020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3년 평균 집행률이 33.3%이며, 2009년 10월15일까지 집행률은 0.0%)이지만, 2010예산액이 전년 대비 3,302% 증액 ◦과거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조정
6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 (공자기금)	1,000	42,552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3년 평균 집행률이 0.0%이며, 2009년 10월15일까지 집행률은 0.0%)이지만, 2010예산액이 전년 대비 4,155.2% 증액 ◦과거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조정

5. 국세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일반회계)	2,598	2,388	◦매년 예산현액의 일정비율(8.3%~11.1%)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2009년도 10월29일까지의 집행률은 54.3%로 부진하며, 특히 새로 도입된 '온라인여론 모니터링 및 온라인 홍보'의 집행률이 19.1%로 부진 ◦2010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정책여론수렴 설명회'의 사업내용은 기존의 홍보수단과 차별성이 없어 보이며, 차별성이 없는 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2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일반회계)	1,530	1,380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07년 53.2%, 2008년 75.6%로 부진하며, 매년 예산현액의 일정비율(2.2%~17.5%)을 불용 처리 ◦국토해양부의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조사 시범사업'과 유사중복,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는 조치결과와 부합하지 않음 ◦국토해양부의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조사 시범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6. 통계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인구주택총조사 (일반회계)	8,203	180,868	◦인구주택총조사 홍보예산안 중 TV광고 예산액 일부 감액 ◦2010년도 TV홍보(중앙 3개사) 예산안은 50억원으로 2005년도(8억원)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 ◦TV광고 횟수에 있어서도 2005년도는 총 73회 이나, 2010년도 예산안에는 총 480회를 상정하고 있어, 광고횟수의 합리적 조정필요

7. 국방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경상운영비 외화예산 (일반회계)	1,023,393 (930백만$)	1,169,742 (951백만$)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환율을 1,23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회 예산처 2010년도 환율전망치 1,186원/$을 적용할 경우, 418.44억원의 환차익이 여유예산으로 발생할 전망

8. 방위사업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F-15K (일반회계)	546,812	680,039	◦경제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바, 무이자로 소규모(외자 예산안의 5~10%) 외화지불을 연기한다면, 9개 대규모 외자사업에서 총 1,000억원~2,000억원의 해외지출을 줄일 수 있음(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의 외자예산안은 이미 50% 하향조정되었음) ◦해외 소규모 지불연기는 수정계약을 통해 가능하며, E-X사업의 경우 20% 지불연기 동의를 이미 받았음. 무이자 지불연기 요청은 국내 방산업계에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
2	장보고-Ⅱ급 (일반회계)	395,809	584,461	
3	차기유도무기 (SAM-X) (일반회계)	490,621	439,283	
4	광개토-Ⅲ급 (일반회계)	336,840	273,348	
5	함대공유도탄(SM-Ⅱ급) (일반회계)	197,505	107,200	
6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일반회계)	6,899	78,805	
7	전자전 훈련장비 (일반회계)	27,169	57,141	
8	F-16전투기 성능개량 (일반회계)	7,854	37,552	
9	레이저 유도폭탄 (GBU-24급) (일반회계)	13,056	29,452	
10	방위력개선비 외화예산 (일반회계)	2,284,848 (1,757 백만$)	2,372,626 (1,928 백만$)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환율을 1,23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회 예산처 2010년도 환율전망치인 1,186원/$을 적용할 경우, 848.74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할 전망
11	대대급C4I (일반회계)	-	434	◦군단급C4I의 경우 네크워크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사업경험부족으로 개발완료 직후 곧바로 1차, 2차 성능개량을 하고 있는바, 군단급C4I와 연동되어있는 대대급C4I도 개발완료와 동시에 1차 성능개량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군단급C4I 2차 성능개량이 안정화되는 시기인 1~2년 후에 동사업을 출발시키는 것이 효율적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2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 (일반회계)	-	3,059 (기무사 80)	◦현 예산안은 기무사령부의 예산안임. 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조직으로 설치하려다가 방침을 변경하여 현재 합참에서 사이버사령부 안을 새로이 기획하고 있으므로, 정부 예산안은 사업계획 미비와 법적근거 미비에 해당됨

9. 외교통상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우리외교를 빛낸 인물 선정 (일반회계)	-	212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신규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낮음 ◦각 분야에서 나라에 기여한 인물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으로 인물을 선정·홍보하는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사업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움
2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	600	◦부처 내 기존사업 중 유사사업이 존재(각 지역국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국제법적 기반구축'사업)하므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 미흡 ◦소관부서인 '문화외교국'의 직제 상 기능에 부합하지 않음 ◦신규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 낮음
3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 (일반회계)	-	1,143	◦부처 내 기존사업 중 유사사업이 존재('외교활동 연구강화',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하므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 미흡 ◦해외연구기관과의 교류강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2009년 10월 현재 MOU 체결기관 1개에 불과하여 계획이 미비한 점이 있음 ◦연구인력 1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지만(박사급 5인, 석사급 5인), 2009년 10월 현재 현원은 88명으로 정원(80명)을 초과한 인원이 근무 중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4	외교통상부 외화예산 (일반회계)	561,301 (천$)	713,098 (천$)	◦예산편성기준환율 1,230원과 국회예산처의 2010년도 예상환율 1,186원의 차이 적용 시 약 310억원 환차익 발생예상
5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출연 (일반회계)	40,000	40,000	◦2009년 10월 말 현재 양자(국가 간)사업비 326억원 전액 미집행상태로 전액 이월 예상 ◦2009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행정경비, 홍보비 등 18억원에 불과 ◦대부분 사업은 수년에 걸친 사업이어서 2009년도 사업이 지연되면 2010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0년 사업비 전액 반영시 연례적인 이월 발생 우려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 중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될 계획인 사업들 예산안이 223억원이므로, 2010년도 계속사업비의 집행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약 110억원 조정 가능(223억원×50%)

10. 통일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독일 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	846	◦독일 통일 관련 기존 연구결과물 다수 존재로 연구중복 우려 ◦연구용역 주제 과다(독일 15개, 한국 15개)로 일부 예산 이월 우려 ◦한국 측 주제 중 일부는 독일 측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므로 지연 우려
2	북한정세지수 개발 (일반회계)	-	1,850	◦지수개발의 효과 재검토 필요 ◦지수의 산출주기 및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북한 자극 등의 부정적 영향 발생(공개 시), 국내·외 심리안정 효과의 제한(비공개 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3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지원 (일반회계)	4,201	6,455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5억원)은 통일부가 직접 관리해야할 주요 정책연구를 민간기관에 맡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임 ◦동 후원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자 간 커뮤니티 구축사업(1.5억원)은 사업계획이 미비함
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일반회계)	-	4,200	◦통일부는 당초 지역적응센터 1개 당 소요비용을 2억원으로 예상하고 1.4억원은 국고지원, 0.6억원은 지방비 투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지방비부담 과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에따라 지방비 확보가 의무적 사항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지방비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며, 통일부에 의하면 지자체 당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은 평균 3천~4천만원 가량으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센터 운영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음 ◦신규사업이지만 2009년 시범운영 중인 6개 센터에서 2010년 3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필요
5	탈북자·방북자· 국제기구 등 심층정보 수집 (일반회계)	-	1,047	◦심층면접 사례비로 탈북자 및 방북자 1인에게 정보수준에 따라 20~50만원씩 지급함은 과다한 측면 ◦선행 완료가 필요한 심층·면접기법 개발(별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억원 편성)이 지연되면 면접·설문활동 기간이 계획(6개월)보다 짧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예산은 불용될 우려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6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 (일반회계)	1,079	3,045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통일 대화의 광장'(토론회 형식)을 개최하여 통일 관련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임 ◦민주평통은 232개 지역협의회 활동을 통해 통일 관련 의견수렴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토론회, 포럼, 교육 등의 기능을 각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국회는 2008년도 결산 심의 시 기관 간 사업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가시적인 조정이 없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 예산안을 전년대비 182.2%(19억원) 증액하였고, 민주평통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사업 예산안을 전년대비 47% 증액(120억원)하였음 ◦현재 협의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등 협의·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기관 간 기능조정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유사기능의 효율적 추진 및 예산 절감방안 강구 필요

11. 행정안전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특수상황지역개발 (광특회계,포괄보조)	167,402	191,264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종전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사업이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편성된 사업임 ◦동 사업은 기존 균특사업 중 접경지역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의 사업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포괄보조금화 되었음 ◦포괄보조사업 내에 중앙유보액(3,757백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 ◦행정안전부는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설명 ◦동일 사업내 포괄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구분된 중앙유보액을 편성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의 취지에 어긋남
2	국가시험시행 (일반회계)	6,743	6,986	◦매년 국가시험 출원인원이 예상인원보다 적고, 이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증액분 2억 4,300만원을 감액할 필요
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환경 개선유지	1,919	2,429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2년까지 충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테니스장 개보수 등 시설의 안전과 무관한 시설사업 추진을 최소화할 필요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권역별 연구분임 운영 (일반회계)	150	143	◦연구분임 활동에 대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각 지역별 연구분임 활동의 성과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연구성과가 정책에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연구분임당 지원금액(280만원), 연구분임을 구성하는 시·군·구의 수(3~7개)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 (일반회계)	-	49	◦공명선거추진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선정의 공정성 문제, 관권선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010년에는 전체 재외공관 중 12.6%에 해당하는 공관에 설치하고, 연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효과가 의문시됨 ◦따라서, 사업의 신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13. 경찰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일반회계)	63,784	60,981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은 도로교통공단의 세출예산소요액에서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수지차보전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계획했던 금액보다 초과 발생 (2004년 37억 4,600만원, 2005년 33억 5,800만원, 2006년 68억 9,800만원, 2007년 111억 3,300만원, 2008년 156억 9,400만원)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가 매년 초과징수되고 있고,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기타수입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체수입에 미계상 ◦국회는 2008년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예산을 최근 수납실적을 기초로 현실화시킬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2010년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은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자체수입 예산을 반영하여 53억원 조정 필요
2	부검안경비 (일반회계)	3,535	6,722	◦부검비 단가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를 해양경찰청과 동일하게 40만원으로 하여 증액분을 조정할 필요 (10만원*2009년도 부검수 2,300건=2억 3,000만원 조정가능)
3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이전 (혁특회계)	427	2,144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울산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이나, 현재 업무이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원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사업 예산은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여부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지구대 상주전의경 매식비 (일반회계)	1,408	1,034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78.8%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 ◦전의경 인력이 매년 줄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경찰관서 운영 인력을 2배로 산정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전의경 감축규모(전년도 대비 85% 수준)를 감안하여 1억 5,500만원 감액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5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시범도시운영 (일반회계)	-	15,000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은 인구 30~70만 규모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9년 4월 발표한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에서 제시된 과제를 패키지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구성하는 세부과제들은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에 관련된 조치들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들임 ◦경찰청은 인구규모와 도로·교통예산액이 비례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예산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나, 인구와 도로·교통예산액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방안의 세부과제들은 도시의 도로구조, 교통량,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 수 없음. 또한, 경찰청은 집행단계에서 지원 대상 도시의 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5개 도시를 지원할 경우 선례가 되어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계속 지원요청이 제기될 우려 ◦비용의 산출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5개 도시를 추진하기보다는 2개 정도 도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

14. 소방방재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일반회계)	300	180	◦연례적 집행부진(2008년도 지자체 실집행률: 46.5%) ◦대부분 지자체의 활동실적이 전문요원 자체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에 그쳐 미흡하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2	중앙 119 구조대 청사 신축 (혁특회계)	5,248	42,451	◦소방방재청 소관 혁신도시특별회계 중앙 119구조대 청사 신축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걸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의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중앙 119구조대를 대구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09년도 예산 52억 4,800만원은 수도권의 재난 대응력 공백 우려와 신속한 국제구조 출동 장애 등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2009년도 예산의 연내 전액 집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09년도 예산의 이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편성 원칙에 따라 건설비 159억원 감액 필요

15.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일반회계)	23,600	35,000	◦입학사정관제는 2008학년도 최초 도입 이후 2010년도에 세 번째 적용되었으며, 2009년에야 전문훈련 기관이 선정되는 등 입학사정관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2010년도 예산안 증액은 선도대학 증가(15개교→20개교)와 학교별 지원액 증가(9억원→12억원)에 기인하는 만큼, 교육과정 개선 등 국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2	대학구조개혁 지원 (일반회계)	21,000	26,000	◦신규내역인 '사립대학 경영 컨설팅 지원'의 경우, 교과부 시행계획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컨설팅 규모는 15~24개교 수준인데, 30개교로 산출함 ◦국내에서는 대학 전문 경영 컨설팅 경험이 부족하여, 시행규모 및 시행학교 수를 축소할 필요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 경영컨설팅 결과를 사립대학이 수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할 성과관리 수단이 구조적으로 부재한 사업임
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일반회계, 광특회계)	160,000	160,100	◦내년도에도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이상 불일치하여 이를 조정하되, 2013년도에 진행될 8개월 분의 연구비용은 보장할 필요 있음 ◦3유형 과제(해외석학 비전일제 공동연구나 특강 활용)의 경우 타 국제연구 교류사업과 겹치고, 사업성과 미흡 가능성이 높아 조정이 필요함
4	국제교육교류 협력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30,413	52,640	◦목표인원 확대가 과다(전년대비 총 관리인원 64.7% 증가) ◦사업계획이 아직 미비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규내역 3개가 신설됨 ◦목표인원 확대 억제, 신규내역 검토 등을 통해, 내년도 사업 확장 규모를 억제하여, 관리 미흡 우려를 예방할 필요
5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 (일반회계)	-	40,000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종일 돌봄교실 목표로 현재 미설치 학교 수를 기준으로 2,000개 교실로 설정함(1교실당 리모델링비 2,000만원 예상, 운영비 최소 2,000만원은 지방비 부담) ◦신중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다한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008년도에 방과후 학교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되었으므로, 한시지원이지만 현재의 설치 목표는 기존 지방비 부담 원칙을 왜곡할 것으로 우려됨

16.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일반회계)	-	9,700	◦공사비 300억원 기준으로 설계비 및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였는데, 공사비를 33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동 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2010년 3억 8,100만원의 감액 조정 필요
2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일반회계)	15,800	13,50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부개정을 전제로한 편성이므로 법률안 통과와 연계하여 예산 조정 필요
3	저작권교육 및 홍보(일반회계)	4,700	5,699	◦현재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연구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등 저작권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7억원임 ◦저작권 투어버스는 차량 임대후 개조를 통하여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소임차료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버스를 통한 직접교육이 아니며, 타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될 내용인 바, 타 사업 규모와 비교할 때, 10억원의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저조할 것으로 판단
4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일반회계)	-	1,992	◦문화부와 방통위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며, 동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문화부는 공사비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전에 실시될 부지매입, 설계, 입찰공고, 행정절차 등의 사전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문화부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집행이 불가능 ◦방통위에서는 부지매입비의 산출 시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지매입기간 지연 우려
5	공연예술활성화(일반회계)	13,680	5,919	◦창작오페라육성지원사업은 창작팩토리육성지원 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나 지원대상작 및 예산지원규모를 많게 하여 시행하는 바, 신규사업임을 감안 창작팩토리 육성지원 사업과 같은 수준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6	국립중앙 박물관운영 (일반회계)	22,754	22,371	◦매년 전용·조정감을 통하여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액이 200억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22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동사업의 집행실적 및 연례적인 전용·조정 감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
7	국립나주 박물관 (일반회계)	4,500	5,000	◦2009년 현재 문화재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중인데, 2007년 시행된 사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동 사업은 2007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며, 2008년에는 수시배정으로 지정되어 설계착수가 순연되고, 지표조사만 완료되었으며, 2009년에도 발굴조사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
8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건립 (아특회계)	30,000	20,000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07년 이후 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남도청의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1년 넘게 집행되지 못하여 2007년의 이월액 150억원을 포함한 2008년 예산액 300억원 등 2009년 842억원의 예산 중 48억원만이 9월말 현재 집행된 상황 ◦사업의 집행경과와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
9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금)	3,000	5,000	◦동 사업은 2006년 예산액 50억원 전액이 미교부, 전년도 이월액인 84억 7,800만원 중 14억 6,800만원만이 실지출되어 70억 1,000만원이 다시 이월되었고, 2007년에도 전년도 이월액 70억 1,000만원 중 18억 1,100만원만이 실지출되고 51억 9,900만원이 이월 ◦2008년에도 예산액 3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 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중 39억 7,600만원만이 지출되고 42억 2,300만원이 이월, 2009년에도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 9월 말 현재 전년도이월액 42억 2,300만원을 포함한 72억 2,300만원 중 5억 3,400만원만 지출 ◦사업의 실집행실적과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10	관광특구활성화 (관광기금)	5,000	4,500	◦2008년 50억원의 계획액이 전액 실지출되지 못한 채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9년에도 계획액 5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중 20%인 20억원만이 실지출되어 50% 이상이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 ◦사업의 실집행실적과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1	섬관광활성화 (관광기금)	4,550	3,650	◦2007년 계획액 64억원 중 4억 9,100만원만이 실지출되었고, 2008년에도 계획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8억 5,900만원 중 10억 6,800만원만이 지출, 2009년에도 9월말 현재 예산현액 167억 4,100만원 중 33억 9,100만원만이 실지출됨 ◦사업의 실집행실적과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2007~2011년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국토끝섬 사업을 별도로 실시하여 가고싶은 섬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검증을 마친 후 국토끝섬에 대한 예산지원검토 필요
12	습지국제관광자원화 (관광기금)	2,500	4,000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09년에 신규로 시작되었으나, 동 사업은 2009년 9월 현재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사업의 실집행실적과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
13	PLZ관광활성화 (관광기금)	-	200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사업에서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행예정인 생태관광 10대 모델개발 사업과 홍보, 팸투어실시 등 사업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두 사업의 통합 필요
14	자전거유스호스텔 (체육기금)	-	2,412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별도의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이 적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용객 등 사업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사업 추진의 재검토 필요
15	신문발전인프라 구축지원 (언론기금)	4,000	3,000	◦2007년의 경우 계획액 70억원 중 46억 8,500만원만이 융자되었으며, 2008년에는 계획액 70억원 대비 27억원, 2009년에는 계획액 40억원 대비 17억원이 융자 ◦지속적으로 융자금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9년의 총융자규모도 25억원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한 조정 필요

17. 문화재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문화재보수정비 (일반회계)	211,026	190,000	◦2008년 까지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수준이하, 2009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51.7% ◦사업의 실집행실적과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
2	문화재긴급보수 (문화재기금)	4,971	10,000	◦2004년 50억원, 2005년 70억원이 집행되는 등 국비가 100% 지급되던 과거에는 70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나, 국비지원이 70%로 결정된 2008년에는 42억원만 교부되었으며, 2009년 9월 현재 20억원만 교부되었으나 미집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은 다소 과다하므로 사업의 집행실적과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

18. 방송통신위원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방송기금)	24,722	25,419	◦방송발전기금으로 아리랑국제방송에 프로그램 제작비외에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음. ◦따라서 2010년에 편성된 위성방송 사업 및 방송시설 운영비(89억 5,000만원)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일반회계)	10,810	38,492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인력, 시설, 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임. 그런데 시설의 보강은 6월까지, 보안 강화 관련 장비들의 도입이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인력은 1월부터 확대(46명→91명)되어 운영될 계획임. 인원을 먼저 확충하고 보안장비를 나중에 도입할 경우 확대된 인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인력 보강도 장비 보강시기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안을 이에 맞추어 감액 조정할 필요

19. 농림수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농특회계)	38,000	406,600	◦사업대상지 96개소 중 지난 30년간 홍수·가뭄 피해가 있었던 곳은 23개소 ◦본 사업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착수가 일부 늦어진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2009년 10월 현재 집행률이 58.2%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기본계획·세부계획 등이 수립된 지구가 없음 ◦집행 및 추진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신규로 사업지구를 늘려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뉴타운 조성 (농특회계)	2,085	20,316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시범사업 5개 지구 중 1개소인 점 등 사업공정이 3~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전국적으로 한해 1,170명이 귀농하고 있는 것에 비해, 5개 시범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수는 700세대로서 과다한 측면이 있음 ◦주택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주택규모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농특회계)	-	60,000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으로는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농식품부는 출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 중인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예산안 심의 전에 동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만일 예산안 심의 전에 동 법률안의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동 사업 예산안의 감액 검토가 필요함
4	경관보전직불사업 (농특회계)	9,640	15,679	◦본 사업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청보리나 밀과 같은 사료작물이나 일반작물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관개선효과가 감소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과조사결과 마을경관개선에 기여했다는 성과점수가 2007년 4.3에서 2009년 3.8로 하락되는 등, 사업규모 확대가 경관개선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량을 동결하고,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5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농특회계)	21,960	25,920	◦현재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추가로 신규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됨 ◦성과지표[시군유통회사의 처리비중=(시군유통회사 매출액/지역생산액) × 100%] 대비 달성도가 30~80%로서 성과가 미흡함 ◦사업성과가 부진한 상태에서 신규 6개 유통회사 설립·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농어촌공사출자 (일반회계)	5,000	10,000	◦공기업의 여유자금을 판단하는 기준인「이자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비중이 58.9%로 일반 공기업 기준 20%보다 높음 ◦이자수익이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구성하여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사내유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쌀소득보전변동직불(쌀기금)	67,647	565,113	◦산지쌀값 추정 미흡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정부의 산지쌀값안정대책 등에 의해 예산편성 시 산지쌀값 추정액(145,000원)보다 일부 상승할 것이 예상됨 ◦산지쌀값 1,000원 변동 시 예산액은 488억원 규모로 변동되므로 예산심의 시 고려가 필요함
8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전출 (농특회계)	25,000	35,0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거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재해재보험금지급 계획액이 불용되어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2007년 643억원, 2008년 911억원, 2009년 9월 기준 1,271억원)임 ◦2010년 특별회계출연금 350억원은 기금의 재원과 거대재해 발생시 집행해야 할 보험금과의 차이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기금 재원 산출시에 여유자금 규모를 904억원으로 과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됨 ◦2009년 9월 기준 여유자금 규모 1,271억원으로 반영할 경우 기금의 재원이 증가되므로, 특별회계출연금 규모를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9	일반농산어촌개발 (광특회계,포괄보조)	1,022,412	973,64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종전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사업이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편성된 사업임 ◦동 사업은 기존 균특사업 중 소도읍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의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포괄보조금화 되었음 ◦포괄보조사업 내에 중앙유보액(43,963백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규사업 선정과 인센티브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설명 ◦동일 사업내 포괄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구분된 중앙유보액을 편성하였음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의 취지에 어긋남

20. 지식경제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일반회계)	-	10,000	◦슈퍼소재와 융합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성 ◦신뢰성 평가장비 등 인프라 구축은 138억원이 기 투입된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섬유분야 신뢰성 평가센터 지원과 중복됨 ◦인프라 구축 관련 50억원 감액 필요
2	산업원천기술개발 (7개 단위사업) (일반회계)	530,789 (660,789)	642,087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는 시점에 해당 연도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시 정산하고 있으나,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차차년도에 실집행될 연구비의 예산안 감액(구체적 감액 규모는 과제별로 산출 필요)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 (광특회계)	60,501	115,500	◦신규로 편성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세사업은 광역선도산업육성 세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 ◦사업계획 구체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예산안에 편성할 필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세사업 예산안 250억원 전액 감액 필요
4	연구개발특구육성(R&D) (광특회계)	26,110 (34,110)	37,416	◦2010년도에 8개 전문클러스터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나 사전기획과제는 6개에 불과 ◦지원 대상 신규과제 수를 감안할 때 예산안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할 필요
5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 교체지원 (에특회계)	-	30,000	◦사회복지시설에 300억원을 투자하여 물품을 교체하였을 때 1년에 절약 가능한 에너지량은 약 2,876㎿h, 전기요금은 3억 1,500만원(사회복지시설 할인 적용 시 2억 5,200만원)에 불과함. 또한, 보급대상인 디지털 LED TV는 2009년에 출시되어 다른 디지털 TV에 비하여 매우 고가로 정부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음. 따라서 사업의 일부 조정이 필요함
6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에특회계)	-	8,0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산업부문 정부협약 목표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 에너지 절약실적 평가·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국회 심사 추이에 따라 관련 예산안 조정 필요
7	가스냉방보급 확대지원 (에특회계)	-	10,000	◦지식경제부는 2008년 결산 심의 시 가스 수요관리는 국가적 수요관리보다 한국가스공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재고관리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한바 있음. 또한, 정부는 가스산업 도입·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전력분야와 같이 정부가 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가스수요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8	전력부하관리 (전력기금)	72,500	68,565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 규모는 피크 수요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전력부하관리를 통하여 첨두부하를 낮추면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기존 설비의 수익성이 높아짐. 또한, 6개 발전자회사는 100% 한전이 소유한 자회사이므로 전력부하관리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이 한전에 귀속됨. 따라서 한전이 공사가 누리는 편익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9	전원개발융자 (전력기금)	10,000	10,000	◦사업 지원대상이 대부분 한전 자회사로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에 불과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
10	전력효율향상 (전력기금)	53,980	61,620	◦LED 유도등의 경우 절감전력당 지원단가가 인버터의 약 27배, 변압기의 8배에 이르는 등 LED조명기기는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원하는 다른 기기에 비하여 절감 전력량당 지원금이 매우 높음. 또한, LED 조명기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LED 기기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음. 따라서 고효율 전기기의 보급을 통한 전력절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LED조명기기의 지원단가를 인하하고 관련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1. 중소기업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시니어 창업육성 (일반회계)	-	5,000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미·일·독 등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경쟁도 치열한 상황임 ◦기존 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고령자들이 주로 진출해온 업종은 음식점업 등 단순 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임. 따라서 정부가 각종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고령자가 창업을 실패했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은 매우 큼 ◦따라서 정부가 신규 예산안을 편성하여 50대 전후 퇴직자가 자영업자가 되도록 창업지원정책을 펼 필요성은 많지 않으므로 관련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경영혁신지원 (광특회계)	28,710	36,499	◦주차도우미 지원사업과 퇴직인력활용 조직육성사업은 정부가 전통시장에 주차도우미 및 퇴직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정부가 인건비 등을 민간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후에도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 어려워 재정 운용에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에 인력과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22. 국토해양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대중교통지원 (광특회계)	31,094	28,500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08년도에 17.6%에 불과하고, '09년 9월말 현재 43.9%로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과다한 이월이 반복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 ◦동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285억원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백로우회도로, 일곡-용정간도로 등 일부 사업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 (광특회계)	43,847	47,426	◦동 사업 중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 2.6~42.1%에 불과하고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었음. '09년 8월말 현재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 89억 9,7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206억 3,600만원 중 40.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철도자동화시설 지원사업 (교특회계)	100,000	100,000	◦철도공사의 당기순이익이 '07년에 1,333억원 흑자로 전환되었고, '08년에 5,1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09년도에도 1조 620억원의 흑자가 추정되고 향후에도 흑자경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철도공사의 흑자 확대를 감안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수송차량구입 사업 (교특회계)	55,485	63,349	◦최근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개선(당기순이익이 '07년에 1,333억원 흑자로 전환되었고, '08년에 5,140억원으로 증가)을 감안하면, 철도공사의 흑자경영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자산인 수송차량의 구입비를 국가재정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5	항만시설유지 보수(총액계상) (교특회계)	168,221	134,062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예산집행률이 75.9%~85.1%에 그치고 있고 매년 전용·불용 및 대규모 이월(이월률 13.5~15.8%)이 반복되고 있음. '09년 9월말 현재 예산현액 1,858억 7,400만원 중 940억 1,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0.6%에 그치고 있는 바, 금년에도 전년도 규모 이상의 대규모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2006~2008년) 평균 집행액이 1,086억원인 점과 2009년도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면 감액조정 필요
6	일반철도 건설지원 (교특회계)	2,248,544	1,628,270	◦소사-원시복선전철은 민자협상지연으로 집행률이 '08년 9.0%, '09년 9월말 7.3%에 불과하고, 2009년 10월 현재 민자협상이 진행중으로 향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일정을 감안하면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매입비 300억원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사업추진방식(민자 또는 재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260억원이 계상되었음. 향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동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260억원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감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7	일반철도 조사설계 (교특회계)	28,700	46,100	◦일반철도 조사설계사업은 2009년 9월말 현재 예산현액 287억원 중 122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2.6%에 그치고 있음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투자속도 조절 등으로 '06~'08년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을 타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된 바, 연례적으로 타 사업의 전용·조정재원으로 사용되었음. 실시설계에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므로 2010년 예산안 80억원(실시설계 완료소요) 중 일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구선, 서해선 복선전철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관계부처 업무 협의 등 향후 제반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8	수자원공사 지원 (일반회계)	-	80,000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예정임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공사의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줄 계획임 ◦2010년 동 사업의 이자비용은 동 공사의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3조 2,000억원에 대한 연평균 공사채 이자비용(5.2%)으로 산출됨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에 대한 단순한 이자 지원은 적극적인 수익모델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액조정 필요
9	지방하천정비 (일반회계)	689,000	492,600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전국의 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은 2007년 78.8%, 2009년 85.9%, 2009년 9월말 현재 60.6%에 불과하며, 이는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해야할 예산액이 집행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임 ◦연례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평균 이월률 17.7% 가량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10	대청댐 치수능력증대(일반회계)	38,300	38,000	◦댐건설 관련 사업은 주로 홍수피해방지와 용수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크게 치수능력증대 사업, 다목적댐건설 사업, 홍수조절댐건설 사업, 신규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댐건설 관련 사업은 사업간 전용과 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예산편성이 필요함 ◦부처요구액에 비해 예산안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 필요액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한 감액 조정 필요
11	임하댐 치수능력증대(일반회계)	45,000	39,000	
12	화북댐 건설(보조) (일반회계)	500	5,000	
13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일반회계)	69,500	159,650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4	율촌1(2)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17,376	17,376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기반시설인 진입도로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0년에는 총 64건, 209.5㎞의 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사업간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예산편성이 필요함 ◦부처요구액에 비해 예산안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 필요액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한 감액 조정 필요
15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9,439	13,039	
16	대구테크노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13,200	20,496	
17	괴산건축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	2,400	
18	논산2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	2,350	
19	탕정TC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26,797	14,802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실시설계기간 소요로 인해 2009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고 2010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통한 감액 조정 필요
20	군장(군산3)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11,199	4,210	
21	해남화원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9,110	8,282	
22	김포양촌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3,060	10,491	
23	구미5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2,000	3,000	
24	미포2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2,000	8,894	
25	주택분양지원 사업 (국민주택기금)	1,440,000	2,273,945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2009~2018년까지 150만호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임 ◦그 중 주택분양 사업은 2018년까지 총 70만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2조 2,739억원이 반영됨 ◦주택분양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해 주거관련 예산배분 구조의 변경, 사업수혜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사업시행에서 수혜까지 4~5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사회적 적정수준의 분양주택공급이 필요하므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보건복지가족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생계급여 (일반회계)	2,446,001	2,449,192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2009년 1분기 대비 2009년 2분기 평균소득 증가율인 2.9%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하여 0.5%p를 삭감한 2.4%를 적용 ◦그러나 2009년 2분기 소득인정액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가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가구별 소득인정액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생계급여예산을 추정할 경우 생계급여예산안은 과다계상 가능성
2	주거급여 (일반회계)	654,880	562,824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2009년 1분기 대비 2009년 2분기 평균소득 증가율인 2.9%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하여 0.5%p를 삭감한 2.4%를 적용 ◦그러나 2009년 2분기 소득인정액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가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가구별 소득인정액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주거급여예산을 추정할 경우 주거급여예산안은 과다계상 가능성
3	정부양곡할인 (일반회계)	16,343	111,203	◦동 사업의 2010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2009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진하던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931억원)이 이관 ◦그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각 부처 고유사업과 형평성으로 인해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로부터 이관 불가
4	기초노령연금 (일반회계)	2,469,726	2,723,631	◦정부는 부부공동수급율(35%)의 경우 2008년 12월 기준 실적치를 반영하였으나, 2009년 들어서 평균 38% 정도의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나타남 ◦2010년 동 급여사업의 예산안에서 2009년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인 38%를 적용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5	장사시설 설치 (일반회계)	31,606	29,898	◦장사시설은 전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한 후 미흡한 사업으로 판정되어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10%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5.4% 삭감에 그침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추가적인 5%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중증장애인연금 (일반회계)	-	151,919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은 2009년 국회에 제출될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나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될 동 법률안은 합의해야 할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증장애인연금은 법률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이고, 동 법률안에서 지급대상이나 지급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7	방과후돌봄 서비스 (일반회계)	74,062	92,614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기존 3개 사업(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만 포함되었고, 방과후보육사업과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통합하지 않았음 ◦따라서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방과후보육사업과 광역지원발전특별회계의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까지에 통합시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8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일반회계)	22,545	30,109	◦동 사업은 2008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207개소로 연차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동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전액 국고지원(서울 66.67%, 지방 100%)은 아동청소년 분야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과 비교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분야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서울 30%, 지방 50%)과 같이 지자체에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9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특회계)	62,503	62,503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지자체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매년 50% 이하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의 경우에도 8월까지 예산현액 625억원 중에서 144억원만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이 23%에 그침 ◦동 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이 2010년에 갑자기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미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이거나,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보건소 신·증축에만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0	기금운용공사 설립 (국민연금기금)	-	12,941	◦동 사업은 이미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 예산안 260억원이 전액삭감됨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되기가 어렵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1	신규시설건립 (공무원연금기금)	23,181	35,088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지선정 등 공기가 계획보다 많이 연기됨으로써 매년 50% 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사업이나 민원문제 등이 해결되어 공사가 이미 시작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2009년 12월 목표로 하여 2010년도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결정고시 일정변경 등을 감안하여 일부예산의 조정 필요
12	연금급여 (사학연금기금)	1,234,097	1,423,937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2010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및 군인연금의 퇴직급여 예산안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 예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연계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일시금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따라서 2010년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및 군인연금의 퇴직급여예산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계신청율 실적치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13	퇴직급여 (군인연금기금)	1,678,065	1,798,675	
14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일반회계)	32,390	65,664	◦동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및 시설미이용율 등에 대한 변수들의 정확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대상자수(11만 4천명)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음 ◦그러나 통계청의 2010년도 추계인구 및 정부의 보육시설미이용율 추계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동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일부 감액 필요

24.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사업 및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사업 (일반회계)	1,501	1,085 & 1,260(신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라는 동일한 사업을 자체사업과 용역사업으로 분리 추진함으로써, 건당 검사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의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

25. 환경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공단폐수처리시설 (환특회계)	173,222	195,945	◦2008년 현재 운영 중인 60개 공단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오·폐수 유입률은 평균 59.3%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공단폐수처리시설의 36.7%에 해당하는 22개 시설의 가동률은 시설용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공단지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전체 76개 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실제 오·폐수 유입률은 40.5%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1개 시설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동 사업의 증액편성은 기존 시설의 가동률 부진문제를 고려할 때, 2010년 예산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실제 공단 및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체 수와 발생 오·폐수량을 정확히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면밀한 재검토와 더불어 예산안 규모의 재조정이 요구됨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2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테마사업,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환특회계)	-	13,200	◦비록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을(도시)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점에 집중되어 사업간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음 ◦저탄소 녹색마을이나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구상 연구가 현재 연구용역과정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비하고 있지 못하고, 녹색마을이나 녹색도시가 도입하려는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관련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열악하며, 이들 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도 부족한 현실 ◦최근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9년부터 자원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각 지역에서 자립형 에너지타운의 생성을 계획하고 있어 자원화시설의 활용도를 저해할 여지가 있음 ◦저탄소녹색마을이나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계획하는 대체에너지원은 대부분 생활주변에 있는 유기성폐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의 연료화인데, 이러한 연료화시설의 마을 및 도시 입지에 따르는 저항이나 연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여액과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범사업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시범사업의 규모를 좀 더 제한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3	토양지하수오염 정화 관련 사업(환특회계)	31,688	43,622	◦토양지하수오염지역정화사업,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사업, 군사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사업은 오염실태 조사 후 미군 및 산업체의 오염정화 담보대책이 미흡하고,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경우 토양석면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정도 및 정화결과를 확인할 법적 기준이 결여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조정이 요구됨
4	물산업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환특회계)	-	2,517	◦동 사업은 물산업 관련 법적 근거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고,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같이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세부사업을 포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사업과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만을 연관사업으로 인정하고 예산안의 조정 필요
5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4대강수계관리기금)	845,066	789,452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규제지역의 종류(규제의 정도), 면적,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3-2009년간 규제지역 면적은 23.9%가 증가하고 대상인구수는 71.1% 감소하였음에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단지 2.3%의 변동이 있었을 정도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는 그간의 인구 및 규제면적 변화를 고려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음 ◦현행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방식은 환경기초시설별 기준 운영비에 지역의 규제정도를 감안한 방식을 통해 산정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배분은 환경편익제공자 보상 원칙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질개선활동의 실적과 징수규모와는 밀접한 상호연계성을 가지는데, 수질개선사업의 집행실적이나 수질개선 효과가 미진할 때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조정하고 수입을 조정하는 것이 이 원칙에 충실한 것인 바, 인위적으로 여유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26. 노동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디딤돌 일자리 (일반회계)	44,550	50,261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4,456억원, 10만명)은 전년대비 66.4% 감액, 「공공기관 청년인턴제」(179억원, 4,680명)도 52.1%를 각각 감액하여 계상한 반면, 동 사업만 증액계상한 것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사업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사회적일자리 이외의 단기 일자리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근거 미흡(「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통하여 '공익형'과 'NGO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노동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시정조치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09년도 지원형태가 대부분 '공익형'과 'NGO형' 지원으로서, 노동부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합하지 않음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증액된 동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2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반회계)	12,054	19,206	◦불안정한 고용서비스인턴 일자리 양산 우려(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9개월간 지원하나, 일자리 불안정성으로 2009. 1~9월간 이·퇴직률이 23.3%에 달함) ◦고용서비스인턴은 고용지원센터 업무부담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도 이용되나, 근본 해소대책으로서 부적정
3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영세자영업자 (일반회계)	2,122	2,216	◦대부분 자영업자의 기대수익 수준이 높고, 기업 조직문화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취업률(8%)이 낮고 중도탈락율(17%)이 높은 등 직업훈련사업 실적 저조 ◦중소기업청은 자영업 활성화, 동 사업은 임금근로자 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혼선 ◦과거 3년간 집행액이 16~20억원 수준이므로, 과거 집행액을 고려한 예산액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4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기금)	47,377	47,377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중손실,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범위 축소(2009. 1.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범위가 축소되면서, 2009. 9월말 지출액은 176억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 37.2%,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33.9%에 불과 ◦집행률 저조는 법령 개정 시 수요예측이 면밀하게 수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2008년도 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따라서 제도변화에 따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비 감액 조정 필요
5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보험기금)	6,112	6,112	◦2004년 이후 동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대부분이 이미 수혜를 받아, 동 제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 ◦2007년 이후 집행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 발생 이후 실적이 더욱 저조(당초계획 대비 집행률 52.5%)하였으며, 2009. 9월말 현재 당초계획(61억 1,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18.4%(11억 2,600만원)에 불과 ◦따라서 수요급감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사업비 감액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6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 (고용보험기금)	-	1,000	◦기존의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와 기업전직지원센터는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거나, 동일한 대상(중소기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기업전직지원센터 설치를 신규로 지원하기보다, 사업비가 확대 계상(전년대비 1.3배인 118억원)된 기존의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를 중심으로 실직(예정)자에게 내실있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볼 수 있음
7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선도기업육성 (고용보험기금)	-	1,421	◦2008년에 신규로 추진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사업」의 실적저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사업설계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실적 저조가 재현될 우려 있음 ◦수주규모와 기후적 요인에 의해 작업중단이 빈번한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수주가 없을 경우에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비용 증가하므로, 인건비 등의 일부 지원이 사업주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비의 일부 감액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8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해외취업프로그램(고용보험기금)	1,061	5,651	◦유사사업인 노동부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에서도 원활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해외취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령자가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 동남아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격차를 감내하고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 수요가 충분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 ◦하위 직급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걸맞는 직위를 제공하는 구인처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0년도 훈련인원(250명)을 축소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9	산재보험급여-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급여(산재보험기금)	32,499	4,307	◦‘직업재활급여’ 중 직업재활훈련 사업비의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2010년도 직업재활훈련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 있음 ◦2009. 9월말 현재 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집행률이 0.2%에 불과하여 집행실적 저조 문제 심각 ◦기존에는 훈련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70%를 훈련수당으로 지원하였으나, ‘직업재활급여’ 신설 이후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기준 강화하면서 집행실적 부진 ◦‘직업훈련급여’의 저조한 집행실적은 제도변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사업 활성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주요요인으로 파악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0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보험기금)	13,500	13,500	◦동 사업 중 '요양비 대부'의 과거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비 조정 필요 ◦요양비 대부'는 2008년도 결산결과 당초계획 40억원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2009. 9월말 현재 당초계획 25억원 중 지출액이 1,544만원(10명)으로 집행률이 0.6%에 불과하고, 2009년말 지출액은 2,4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11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도입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1,000	◦동 사업 중 '중소기업 선진복지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사업은 타 컨설팅 사업의 사업성과 저조를 고려한 사업비 편성 필요 ◦「임금피크제 컨설팅」을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컨설팅」 등 노동부의 기존 컨설팅 사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 ◦기업체에서 제도도입 등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성과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제도의 도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한 다음,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2010년도 컨설팅 사업 관련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

27. 여성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성매매피해자구조개선사업,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일반회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여성발전기금)	10,868	10,621	◦유사한 성관련 피해여성간 특히, 성매매피해여성(국고보조 50~80%)과 집결지성매매여성(국고보조 100%)을 위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에 있어 국고보조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피해여성간 국고지원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이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일반회계)	11,184	19,697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1-3개월의 단기간에 걸친 직업교육으로, 교육받은 직종에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취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과정당 실제 취업실적을 반영하여 과정수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특히 취업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정은 과정 수를 줄이고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취업설계사제도, 주부인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서비스 등은 2009년 신규사업인 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판단될 때까지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편성하기 보다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임

【증 액】: 14건

1. 국토해양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천안4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74,550	20,760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기반시설인 진입도로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0년에는 총 64건, 209.5㎞의 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본격적인 건설단계에 있으며 연계되는 산업단지에 비해 산단진입도로 개통 시기가 늦은 사업들의 경우, 산업단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일부증액 검토가 필요함
2	대불국가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10,722	19,331	
3	오송생명(2)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15,310	10,523	
4	경주외동2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9,926	4,360	
5	함안칠서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7,637	10,396	
6	부산장안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20,310	15,809	
7	대덕테크노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42,445	4,493	
8	아산테크노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12,210	8,544	
9	포항영일만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24,310	14,310	
10	진도군내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9,560	9,687	
11	포항영일만2 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3,060	13,645	
12	이화산단진입도로 (광특회계)	5,000	10,248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3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국민주택기금)	7,177,978	5,697,700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자금지원과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 및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09년까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이 감소함 ◦동 사업의 사업효과가 주택건설공급관련 재정사업에 비해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액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9	2010안	조정 의견
1	긴급복지지원 (일반회계)	51,532	52,912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2009. 5. 28)에 의해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이 신설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대상 확대 ◦2009년 상반기 동 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경제위기로 인해 신빈곤층이 올해 상반기에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대비 지원건수와 지원인원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따라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홍보강화로 인해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이 급증하고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2010년도 예산안을 증액하는 방안 검토 필요

부대의견 제안

Ⅵ. 부대의견 제안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각부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769,539	3,692,433	◦정부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의 부처별 내역사업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의 소규모 분산투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균특회계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과 도시활력증진 지역에 대해서 관련 광특회계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재정력에 기초한 지수를 적용하여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각 부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3,459,300	31,114,500	◦각 부처는 지자체에게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정해진 법적 기일(10월 15일) 내에 통지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한다. ◦각 부처는 국회에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상에 사업대상, 사업명, 예산안이 미확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사업 (국무총리실, 일반)	1,800	2,200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주관부처 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유기적인 체계 하에서 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부처 간 조정미흡으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
4	여유자금운용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263,216	341,479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여유자금 중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부분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분석
	공자기금예탁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30,000	100,000	
5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	-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지방교부세법령을 준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 예산안 분석
6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21,004	20,351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 등 예·결산의 필요한 재정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가 동시스템 상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Ⅲ.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용 성과미흡과 시스템기능 보완 필요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7	수입대체경비 지정사업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7,1237	80,474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유형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에 근거하여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초과지출을 사용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과소편성 문제 및 지출관행 개선필요
8	외화예산안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561,301 (천$)** 외교통상부 전체 외화예산 금액임	713,098 (천$)	◦외교통상부는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국고로 반납조치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외교통상부 외화예산의 환차익 발생 가능성
9	사회통일교육내실화 (통일부, 일반회계)	1,079	3,045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통일 관련 교육과 여론수렴 및 대국민 소통 분야에서 협조를 통한 효율화방안을 강구하고 공식적인 의견교환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사회통일교육 내실화사업 민주평통과의 유사기능 효율화 필요
10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통일부, 일반회계)	350,000	350,000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예산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진행 추이를 보고 실제로 집행할 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분석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11	여유자금운용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57,481	138,990	◦통일부는 2009년 9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중 당장 사업에 사용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공자기금예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	※ 참조: 예산안 분석Ⅱ.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분석
12	국방비 (국방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28,553,260	29,603,900	◦국방부는 불필요한 국방조직·업무 진단전문조직체계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조직진단 결과보고를 예산안·결산 제출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확정 전에 보고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국방비 총괄분석 : 불필요한 조직·업무 퇴출 필요
13	국방대학교 (국방부, 일반회계)	24,203	23,722	◦국방부는 국방대학교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현역군인은 가능한 전투요원으로 전환배치한다. ◦국방대학교의 선진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방대학교는 일반대학교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역량평가를 받는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국방대학교의 선진화 필요성
14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 (경찰청, 일반회계)	-	15,000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 규모 조정 필요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15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19,000	10,400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제시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 Ⅲ.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지방비 부담 조정 미흡
1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일반회계 및 광특회계)	160,000	160,100	◦2010년도 예산안을 2010년도 실소요액(3개월분)만큼으로 삭감할 경우, 연구계획 및 해외 계약사항 보장을 위해, 국회는 5차 회계연도(2012년) 종료 후인 2013년도 사업기간 8개월분의 예산액을 보장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 Ⅳ.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내역 조정 필요
17	여유자금운용 (문체부,국민체육진흥기금)	236,733	50,706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여유자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공자기금예탁 (문체부,국민체육진흥기금)	200,000	200,000	※ 참조: 예산안 분석Ⅱ.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분석
18	신재생에너지발전 차액지원 (지식경제부, 전력기금)	239,200	263,600	◦지식경제부는 2011년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고시할 때는 나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단가와 건축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단가의 차이를 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 Ⅳ.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단가 재검토 필요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19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청, 책특회계)	6,738	10,050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혜기업이 비용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브랜드 분석·진단 및 권리화 지원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청은 브랜드의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Ⅳ.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업의 예산 분담 필요성
20	국가하천 정비사업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1,141,000	3,735,000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의 경우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국회의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생태하천조성 사업과 자전거도로의 경우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Ⅲ. 국가하천정비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 예산안 편성 상 문제점
21	하수도 사업 (환특회계)	1,638,565	1,889,309	◦환경부는 2010년 하수도사업 예산의 지자체별 국고지원계획이 중점권역 집중투자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투자방향을 반영함으로써, 하수도보급률 향상으로 하수도서비스의 자자체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하수도 사업 본래의 추진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정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 Ⅳ. 하수도사업예산지원의 지역간 격차

	사업명 (부처,회계·기금명)	2009 (백만원)	2010안 (백만원)	부대 의견(안)
22	부담금 운용 (기획재정부 등 5개 특별회계, 34개 기금, 지방 및 공단)	15,278,000 추정 (중앙: 11,900,700)	16,074,900 추정 (중앙: 12,644,100)	◦기획재정부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별도의 「부담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2010년도 부담금 부과계획과 실질적 국민부담
23	국민부담률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국민부담률(2010년 26.4% + 1.4% = 27.5%로 추정)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국민부담률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부담금 부담을 합산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 참조: 예산안 분석Ⅱ. 2010년도 부담금 부과계획과 실질적 국민부담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 합】

발 간 일	2009년 11월 2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편 집 인	예산분석실장 김 호 성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TEL 02·788·376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252-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